

# 하 동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501호 2018. 8. 7.(화요일)

## 조 례

○ 하동군 조례 제2289호	하동군 범죄 피해자 보호 조례 . . . . .	3
○ 하동군 조례 제2290호	하동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 . . . .	5
○ 하동군 조례 제2291호	하동군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9
○ 하동군 조례 제2292호	하동군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등에 관한조례	14
○ 하동군 조례 제2293호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 . . . .	17
○ 하동군 조례 제2294호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 . . . .	29
○ 하동군 조례 제2295호	하동군 범죄예방 도시 디자인 조례 . . . . .	31

## 예 규

○ 하동군 예규 제20호	하동군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 폐지 지침 . . . . .	34
---------------	----------------------------------	----

## 고 시

○ 하동군 고시 제2018-106호	하천점용 . . . . .	35
○ 하동군 고시 제2018-107호	하천점용 . . . . .	36
○ 하동군 고시 제2018-108호	하천점용 연장 . . . . .	38
○ 하동군 고시 제2018-109호	공유수면 변경 . . . . .	39
○ 하동군 고시 제2018-110호	하천점용 . . . . .	40
○ 하동군 고시 제2018-111호	하천점용 . . . . .	41
○ 하동군 고시 제2018-112호	공유수면 점용 . . . . .	43
○ 하동군 고시 제2018-114호	도로명주소 개별고시 . . . . .	44
○ 하동군 고시 제2018-116호	하천점용(변경) 허가증 . . . . .	46
○ 하동군 고시 제2018-117호	하천점용 . . . . .	48
○ 하동군 고시 제2018-118호	공유수면 연장신청 . . . . .	50
○ 하동군 고시 제2018-119호	하천점용 . . . . .	51
○ 하동군 고시 제2018-121호	도로명주소 개별고시 . . . . .	53
○ 하동군 고시 제2018-123호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 . . . .	55
○ 하동군 고시 제2018-124호	공유수면 점사용 신청 . . . . .	56
○ 하동군 고시 제2018-125호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 . . . .	57
○ 하동군 고시 제2018-126호	공유수면 허가 고시 . . . . .	58
○ 하동군 고시 제2018-130호	공유수면 허가고시 . . . . .	59
○ 하동군 고시 제2018-131호	공유수면 허가고시 . . . . .	60
○ 하동군 고시 제2018-132호	공유수면 허가고시 . . . . .	61
○ 하동군 고시 제2018-135호	도로명주소 개별고시 . . . . .	62

회 람									
--------	--	--	--	--	--	--	--	--	--

## 입법예고

○ 하동군 공고 제 2018-747호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외 1건 입법예고 64
○ 하동군 공고 제 2018-757호	하동군 공공기관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입법예고 . . . . . 79
○ 하동군 공고 제 2018-772호	하동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82
○ 하동군 공고 제 2018-775호	하동군 농어업 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84
○ 하동군 공고 제 2018-779호	하동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 . . 94
○ 하동군 공고 제 2018-804호	하동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99
○ 하동군 공고 제 2018-805호	하동군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 . . . . 103
○ 하동군 공고 제 2018-813호	하동군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 . . 106
○ 하동군 공고 제 2018-814호	하동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11
○ 하동군 공고 제 2018-831호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외1 입법예고 116
○ 하동군 공고 제 2018-833호	하동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71
○ 하동군 공고 제 2018-840호	하동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 . . 176
○ 하동군 공고 제 2018-846호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 . . 180
○ 하동군 공고 제 2018-847호	하동군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폐지조례안 입법예고 182
○ 하동군 공고 제 2018-851호	하동군 구재봉 자연휴양림 관리, 운용조례 일부개정 . . . . . 185
○ 하동군 공고 제 2018-852호	하동군 삼화에코하우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 . . . . 188
○ 하동군 공고 제 2018-853호	하동군 산촌생태마을 시설 민간위탁 운영조례제정 . . . . . 190

## 공 고

○ 하동군 공고 제2018-738호	어업면허 처분사항 공고 . . . . . 192
○ 하동군 공고 제2018-758호	하동군 전통야시장 내 이동 판매대 식품위생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규칙안 입법예고 194
○ 하동군 공고 제2018-771호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 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공시송달) . . 202
○ 하동군 공고 제2018-773호	하동군 노인, 장애인 종합복지관 수탁운영법인 모집공고 . . . . . 204
○ 하동군 공고 제2018-803호	하동군 금고지정 공고 . . . . . 237
○ 하동군 공고 제2018-815호	하동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38
○ 하동군 공고 제2018-817호	2018년 청년 창업농 활성화 지원사업 대상자 선발공고 . . . . . 239
○ 하동군 공고 제2018-827호	서담지구 지적재조사사업 변경 실시계획 공람공고 . . . . . 248
○ 하동군 공고 제2018-832호	하동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249
○ 하동군 공고 제2018-837호	하동군 군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외 1건 입법예고 . . . . . 257
○ 하동군 공고 제2018-834호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 공시 지가 조정공고 . . . . . 269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범죄 피해자 보호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8년 8월 3일

하 동 군 수 윤 상 기 인

하동군 조례 제2289호

하동군 범죄 피해자 보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하동군의 책무 등을 규정하여 범죄피해자를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 「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군을 관할 지역으로 등록한 법인을 말한다.
-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3조(군수의 책무)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군민의 책무) 하동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인권문제라는 점을 인식하여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군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관계기관의 협조) ① 군수는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법인의 대표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 법인의 대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홍보 및 교육) 군수는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시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재정지원 등) ① 군수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또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중복지원 금지)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내용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지원 내용과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이 이루어진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8년 8월 3일

하 동 군 수 윤 상 기 인

하동군 조례 제 2290 호

하동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하동군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 활성화 및 지역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하는 사람으로서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을 말한다. 다만, 개별 사업에서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2. “청년일자리 창출”이란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연결하거나 개발·보급,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청년의 고용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일자리 발굴 및 정보 제공, 청년 고용 기업에 대한 장려책 마련 등 지역 실정에 맞는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청년일자리 창출 계획 수립) ① 군수는 청년일자리 창출계획을 수립하여 청년 고용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년 일자리 창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목표 및 방향
- 2.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책

- 3.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기관, 단체 및 기업 등과 협력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
- ③ 군수는 해마다 일자리 창출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사항을 처리함에 있어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수집한 고용·직업정보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한국고용정보원이 수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제6조(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사업) 군수는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1. 직업상담, 직업적성검사, 취업능력 향상 교육 등 다양한 직업지도 프로그램 개발
- 2. 구인·구직 등 고용서비스 제공 사업
- 3.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시켜주는 채용박람회 개최
- 4.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기여한 기업체에 대한 장려책 마련
- 5. 새로운 일자리 모델 발굴 및 육성
- 6. 그 밖에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청년일자리위원회 구성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하동군 청년일자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1. 청년일자리 창출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2. 제6조에 따른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 3. 청년일자리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4. 그 밖에 청년일자리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1. 당연직 위원 : 경제수산과장, 주민행복과장, 행정과장
- 2. 위촉직 위원
  - 가. 하동군의회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 나. 청년일자리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 다. 청년 당사자

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 직 위원인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인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년일자리창출 업무 담당이 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 ② 이해관계인은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회에 기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 ④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 등 개인적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이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9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해마다 한번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하동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 관련 전문기관,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업무 위탁의 절차 및 사후관리 방법에 관하여는 「하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① 군수는 청년고용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 행정기관(그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이나 경상남도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창출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일자리창출 관련 기관·단체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12조(행·재정적 지원) ① 군수는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청년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기여하는 단체, 동아리, 청년 및 제6조 각 호의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경비의 지원 방법·절차 등은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8년 8월 3일

## 하 동 군 수 윤 상 기 인

하동군 조례 제 2291 호

### 하동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

하동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을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보훈대상자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급 신청서

보훈대상자 구분		보훈처등록번호	
보훈대상자		생 년 월 일	(남/여)
수 진 자		생 년 월 일	(남/여)
의료급여기관		진 료 기 간	

진료비 지급 신청

총진료비	의료보험	본인부담액	신청금액

진료비 지급 계좌

거래 금융기관명	예금계좌번호	예금주	비 고

「하동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 에 따라 위와 같이 본인부담금을 신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청구인 주소 :  
성명 : [수진자의 , (남/여)]

하동군수 귀하

제출서류 : 의료급여기관에서 발행한 본인부담내역이 기재된 영수증 사본 1  
\* 신청금액이 소액일 경우 분기 또는 반기별로 일괄 신청할 수 있음

**【별지 제2호서식】**

공상군경 등 보훈예우수당 지급(변경) 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보훈번호	(남/여)
	주 소	(전화번호 )		
예 금 계 좌	금 용 기 관 명		예금주 성명	
	계 좌 번 호			
변경사유		「하동군 국가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보훈예우수당 지급(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 비 서 류	신청인 제출서류		읍면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읍면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지급신청] 1.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증 사본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 (주민등록초본)		
	[변경신청]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p>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 (이하“개인정보라 함)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input type="checkbox"/> 동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습니다.</p> <p>※ 신청인은 정보주체로서 개인정보의 삭제·정지요구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거부를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수당지원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p> <p>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 하동군  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 공상군경 보훈예우수당 지원사업  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항목 : 신청서기재사항(성명, 보훈번호, 주소, 생년월일, 사망일자, 전화번호, 예금계좌 등)  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보훈예우수당 지원기간까지  마.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고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읍면 담당공무원이 요구하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등)를 제출하여야 함</p> <p style="text-align: center;"><b>위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b></p>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하동군수 귀하**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	-------

제11조(지급의 중지 및 환수) ① · ②  
(생략)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에 수당을 반환할 사람이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 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지급의 중지 및 환수) ① · ②  
(현행과 같음)  
<삭제>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보훈대상자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급 신청서			
보훈대상자구분		보훈처등록번호	
보훈대상자		생년월일	
수진자		생년월일	
의료급여기관		진료기간	
진료비 지급 신청			
총진료비	의료보험	본인부담액	신청금액
진료비 지급 구좌			
거래 금융기관명	예금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하동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본인부담금을 신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 .		청구인 주소 :	
		성명 : (수진자의 )	
하동군수 귀하			
제출서류 : 의료급여기관에서 발행한 본인부담내역이 기재된 영수증 사본 1			
* 신청금액이 소액일 경우 분기 또는 반기별로 일괄 신청할 수 있음			

보훈대상자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급 신청서			
보훈대상자구분		보훈처등록번호	
보훈대상자		생년월일	(남/여)
수진자		생년월일	(남/여)
의료급여기관		진료기간	
진료비 지급 신청			
총진료비	의료보험	본인부담액	신청금액
진료비 지급 구좌			
거래 금융기관명	예금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하동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본인부담금을 신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 .		청구인 주소 :	
		성명 : [수진자의 (남/여)]	
하동군수 귀하			
제출서류 : 의료급여기관에서 발행한 본인부담내역이 기재된 영수증 사본 1			
* 신청금액이 소액일 경우 분기 또는 반기별로 일괄 신청할 수 있음			

**【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공상군경 등 보훈예우수당 지급(변경) 신청서				처리 기간 2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보훈번호		
	주소	(전화번호 )		
예금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주 성명		
	계좌			

공상군경 등 보훈예우수당 지급(변경) 신청서				처리 기간 2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남/여)
		보훈번호		
	주소	(전화번호 )		
예금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주 성명		
	계좌			

번 호	
변경사유	
「하동군 국가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보훈예우수당 지급(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읍면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읍면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지급신청] 1.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증 사본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변경신청]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 (주민등록초본)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 (이하“개인정보라 함)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input type="checkbox"/> 동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습니다. ※ 신청인은 정보주체로서 개인정보의 삭제·정지요구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거부를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수당지원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 하동군 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 공상군경 보훈예우수당 지원사업 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항목 : 신청서기재사항(성명, 보훈번호, 주소, 생년월일, 사망일자, 전화번호, 예금계좌 등) 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보훈예우수당 지원기간까지 마.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고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읍면 담당공무원이 요구하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등)를 제출하여야 함 <b>위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b>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하동군수 귀하	

번 호	
변경사유	
「하동군 국가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보훈예우수당 지급(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읍면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읍면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지급신청] 1.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증 사본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변경신청]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 (주민등록초본)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 (이하“개인정보라 함)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input type="checkbox"/> 동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습니다. ※ 신청인은 정보주체로서 개인정보의 삭제·정지요구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거부를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수당지원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 하동군 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 공상군경 보훈예우수당 지원사업 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항목 : 신청서기재사항(성명, 보훈번호, 주소, 생년월일, 사망일자, 전화번호, 예금계좌 등) 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보훈예우수당 지원기간까지 마.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고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읍면 담당공무원이 요구하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등)를 제출하여야 함 <b>위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b>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하동군수 귀하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8년 8월 3일

하 동 군 수 윤 상 기 인

하동군 조례 제 2292 호

하동군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하동군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 「노인복지법」 제26조”를 “ 「노인복지법」 제25조”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 「노인복지법」 제26조”를 “ 「노인복지법」 제25조”로 한다.

제3조 단서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생 략)

제3조(적용범위) 군 등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이하 “계약”이라 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매점의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그 규모가 15제곱미터 이하인 시설에 한한다.

-----  
-----  
-----.

2. (현행과 같음)

제3조(적용범위) -----  
-----  
-----  
-----  
-----  
-----  
--. <단서 삭제>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8년 8월 3일

하 동 군 수 윤 상 기 인

하동군 조례 제 2293 호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2조부터 제120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하동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장, 담당관, 과장의 직급 등) ①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의 국장·담당관·과장 등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농업기술센터소장과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면장의 직급 및 사무분장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 군본청

제3조(보좌기관) ① 부군수 밑에 기획예산담당관을 둔다.

② 기획예산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군정전반의 종합기획·조정, 새로운 시책, 각종 평가 및 통계에 관한 사항
2. 예산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3. 홍보 및 공보행정에 관한 사항
4. 군정·비위 감사에 관한 사항
5. 법무, 소송,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6. 자매결연, 대외교류협력, 및 봉사단체 관리에 관한 사항

제4조(국의 설치)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지원국과 관광산업국을 둔다.

제5조(행정지원국) ① 행정지원국에 행정과, 경제전략과, 주민행복과, 재정관리과, 문화체육과, 민원과, 환경보호과를 둔다.

② 행정지원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조직, 인사, 여론, 행정관리에 관한 사항
2. 공무원단체, 후생복지, 선거 및 사무능률에 관한 사항
3. 아동 및 청소년에 관한 사항
4. 인구증대시책 및 출산장려에 관한 사항
5. 평생학습 및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6. 행정전산화 및 정보통신 관리에 관한 사항
7. 미래 전략사업 발굴 및 대형 민자 유치에 관한 사항
8. 일자리창출 및 지식재산·지역경제발전, 전통시장육성에 관한 사항
9. 중소기업육성, 산업단지 조성 및 기업유치, 경제자유구역 외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10. 마을공동체 육성 및 마을기업·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사항
11. 에너지정책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기초생활보장 지원 및 주민복지 종합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13. 장애인복지 및 자활 업무에 관한 사항
14. 노인복지 대책수립 및 장묘문화에 관한 사항
15. 여성복지 행정에 관한 사항
16. 복지급여대상자 통합조사관리 및 의료급여 자격관리에 관한 사항
17. 주민생활지원서비스 및 희망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
18. 지방세 부과에 관한 사항
19. 공사 및 물품계약, 경리관계에 관한 사항
20. 세입 및 체납관리에 관한 사항
21.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 관리, 재산세 부과에 관한 사항
22. 국·공유재산 및 재물관리에 관한 사항
23.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4. 문화재 보호 및 가야사 복원에 관한 사항
25.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
26. 문화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7. 민원행정 및 주민등록에 관한 사항

- 28. 지적관리 기획·조정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29. 지적재조사 기획·조정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30. 공간정보,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
- 31. 민원기동대 운영에 관한 사항
- 32. 환경보전업무 종합계획 수립, 기후변화에 관한 사항
- 33. 대기, 폐수, 소음·진동,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 및 환경오염 단속에 관한 사항
- 34. 폐기물처리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35. 탄소 없는 마을 육성, 자연생태 보전에 관한 사항
- 36.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관광산업국) ① 관광산업국에 관광진흥과, 도시건축과, 해양수산과, 안전총괄과, 산림녹지과, 건설교통과, 산단조성과, 수도사업과를 둔다.

② 관광산업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 1. 관광종합개발계획, 신규관광자원 개발에 관한 사항
- 2. 관광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 3. 관광시설 운영 및 관리, 관광시설 마케팅에 관한 사항
- 4. 슬로시티 및 관광마케팅에 관한 사항
- 5. 축제지원에 관한 사항
- 6. 도시 종합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7.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
- 8. 도시재생, 지역·경관 디자인에 관한 사항
- 9. 건축인허가(민원)에 관한 사항
- 10. 건축행정에 관한 사항
- 11. 복합민원에 관한 사항
- 12. 해양개발, 수산진흥, 해양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13. 수산사업 및 수산물 관리에 관한 사항
- 14. 내수면 어업, 내수면 관리에 관한 사항
- 15. 섬진강 관련 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16. 안전 및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
- 17. 민방위비상대책에 관한 사항
- 18. 복구지원 및 방재에 관한 사항
- 19.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20. 산림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
- 21. 산림보호, 공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22. 산림경영에 관한 사항

- 23.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사항
- 24. 가로수 식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25. 건설종합계획, 주민숙원사업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26. 농업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 27. 토목공사 및 각종 도로 관리에 관한 사항
- 28. 농산어촌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 공모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29. 교통행정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30.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유치 및 연구단지 조성·관리에 관한 사항
- 31.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관한 사항
- 32. 경제자유구역 내 신도시 조성 및 산업단지 보상에 관한 사항
- 33. 경제자유구역 소송지원에 관한 사항
- 34. 상수도 운영 총괄, 시설관리 및 인력운영에 관한 사항
- 35. 상수도 사업추진 및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 36. 하수도 사업추진 및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 제3장 직속기관

#### 제1절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제7조(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3조와 「지역보건법」 제7조·제8조·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8조에 따라 군에 보건소를, 면에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8조(소장 등) 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을 둔다.

② 보건소장은 군수의,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9조(소관사무) 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의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② 보건진료소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의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제2절 농업기술센터

제10조(설치) ① 법 제113조와 「농촌진흥법」 제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사업·농촌지도사업·교육훈련사업 및 국제협력사업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군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의 위치는 하동군 적량면 한옥정길 91에 둔다.

제11조(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2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농업정책 및 농지관리에 관한 사항
2. 농업지원에 관한 사항
3. 축산행정 및 시설물, 기술지도에 관한 사항
4. 가축방역 및 축산환경에 관한 사항
5. 농업기계화 촉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농·특산물의 수출지원에 관한 사항
7. 농·특산물의 유통·마케팅에 관한 사항
8. 농식품가공산업 육성 및 가공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9. 농촌융복합산업에 관한 사항
10. 농특산물 포장 디자인에 관한 사항
11. 농업 인력육성에 관한 사항
12. 농촌관광 및 북천 꽃 축제에 관한 사항
13. 농촌자원 개발 및 식품개발에 관한 사항
14. 귀농귀촌 및 신규농업인 육성에 관한 사항
15. 드론 관리 및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16. 농업의 신소득작물 개발과 스마트농업 총괄에 관한 사항
17. 식량작물 육성에 관한 사항
18. 원예·과수산업 육성 및 기술보급에 관한 사항
19. 녹차산업 육성 및 유통지원, 특용작물 산업육성 및 기술보급에 관한 사항
20. 농업유산 관리 및 소득화·관광자원화에 관한 사항

### 제4장 읍·면

제13조(설치) ① 법 제3조제3항·제4항 및 제4조의2에 따라 읍·면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읍·면의 사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이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4조(직무) 읍·면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리·반 조직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제15조(읍·면장) 읍·면에는 읍·면장을 두며, 읍·면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6조(하부행정기구) 읍·면에 읍·면장을 보좌하고 소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하부행정기구인 부읍장·부면장을 둔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하동군 군민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② 「하동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주무실과장”을 “주무국·과장”으로 한다.

제2조제3항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

③ 「하동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실과장급”을 “국장·담당관 및 과장급”으로 한다.

④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1호 중 “기획조정실장 등 관련 실과소장”을 “기획예산담당관 등 관련 국·과·소장”으로 한다.

⑤ 「하동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

⑥ 「하동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

⑦ 「하동군 군지편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문화관광실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⑧ 「하동군 판소리 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실장”을 “과장”으로 한다.

⑨ 「하동군 지역 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⑩ 「하동군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

⑪ 「하동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경제수산과장”을 “경제전략과장”으로 한다.

제5조제2호 중 “신도시조성담당주사”를 “산단지원담당주사”로 한다.

⑫ 「하동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⑬ 「하동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경제수산과장”을 “경제전략과장”으로 한다.

⑭ 「하동군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호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

⑮ 「하동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경제수산과장”을 “경제전략과장”으로 한다.

제12조제4항 중 “실과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장”으로 한다.

⑯ 「하동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제1호 중 “경제수산과장”을 “경제전략과장”으로 한다.

⑰ 「하동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경제수산과장”을 “경제전략과장”으로 한다.

⑱ 「하동군 어항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1호 중 “경제수산과장”을 “해양수산과장”으로 한다.

⑲ 「하동군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담당실.과장”을 “담당과장”으로 한다.

㉔ 「하동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제1호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㉕ 「하동군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실과소장”을 “국·과·소장”으로 한다.

㉖ 「하동군 군민장·군청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㉗ 「하동군 사무위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녹색환경과”를 “환경보호과”로 한다.

㉘ 「하동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5호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

㉙ 「하동군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실과”를 “국·담당관·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실과소”를 “국·담당관·과·소”로 한다.

㉚ 「하동군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실과소”를 “국·담당관·과·소”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실과소장”을 각각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실과”를 “국·담당관·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실과”를 “국·담당관·과”로 한다.

㉛ 「하동군 평생학습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

㉜ 「하동군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관련실과장”을 “관련 국장·담당관 및 과장”으로 한다.

㉝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별표 3 중 “문화관광실”을 각각 “문화체육과”로 한다.

㉞ 「하동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제1호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제2호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

별표 3 중 “기획조정실”을 각각 “기획예산담당관”으로, “경제수산과”를 각각 “경제전략과”로 한다.

별표 5 중 “기획조정실”을 각각 “기획예산담당관”으로, “경제수산과”를 각각 “경제전략과”로 한다.

별표 6 중 “경제수산과”를 “경제전략과”로, “기획조정실”을 각각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㉓ 「하동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2호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

㉔ 「하동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

㉕ 「하동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

㉖ 「하동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실과”를 “국·담당관·과”로 한다.

㉗ 「하동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실·과·사업소”를 “국·담당관·과·소”로 한다.

㉘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재무과장”을 “재정관리과장”으로 한다.

별표 중 “실·과장실”을 “국장·담당관·과장실”로 한다.

㉙ 「하동군 물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실과소단”을 “국·담당관·과·소”로 한다.

㉚ 「하동군 군립공원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문화관광실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㉛ 「하동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실과장·직속기관장·사업소장”을 “국장·담당관·과장·소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공사주관실과장·직속기관장·사업소장”을 “공사를 주관한 국장·담당관·과장·소장”으로 한다.

㉜ 「하동군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경제수산과장”을 “경제전략과장”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4호 중 “문화관광실장”을 “관광진흥과장”으로 한다.

④① 「하동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④② 「하동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실·과장”을 “국·과장”으로 한다.

④③ 「하동군 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3항 중 “실과장”을 “국·과장”으로 한다.

④④ 「하동군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실·과·단·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

④⑤ 「하동군 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

④⑥ 「하동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 중 “농축산과장, 농촌진흥과장, 농업소득과장”을 “농축산과장, 농산물 유통과장, 농촌진흥과장, 농업소득과장”으로 한다.

④⑦ 「하동군 농특산물 명인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국제통상과장, 경제수산과장”을 “농산물유통과장, 경제전략과장”으로 한다.

④⑧ 「하동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농축산과장, 농촌진흥과장, 농업소득과장”을 “농축산과장, 농산물 유통과장, 농촌진흥과장, 농업소득과장”으로 한다.

④⑨ 「하동군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4항 중 “체육시설사업소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⑤⑩ 「하동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체육시설사업소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소장”을 “과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체육시설사업소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체육시설사업소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⑤⑪ 「하동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상하수도사업소장”을 “수도사업과장”으로 한다.

[별표 1]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7조제3항 관련)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하동군보건소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31	하동군 일원
화개보건지소	하동군 화개면 쌍계로 28	화개면 일원
악양보건지소	하동군 악양면 악양서로 399	악양면 일원
적량보건지소	하동군 적량면 적량로 88	적량면 일원
횡천보건지소	하동군 횡천면 횡천강변길 35-3	횡천면 일원
고전보건지소	하동군 고전면 하동읍성로 367	고전면 일원
금남보건지소	하동군 금남면 미법마을길 14	금남면 일원
금성보건지소	하동군 금성면 금성중앙길 14	금성면 일원
진교보건지소	하동군 진교면 강변길 13-1	진교면 일원
양보보건지소	하동군 양보면 진양로 743	양보면 일원
북천보건지소	하동군 북천면 경서대로 2455	북천면 일원
청암보건지소	하동군 청암면 청학로 667	청암면 일원
옥종보건지소	하동군 옥종면 덕천로 9	옥종면 일원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범왕보건 진 료 소	하동군 화개면 범왕길 8	범왕리 : 신흥, 범왕 대성리 : 단천, 의신 용강리 : 모암
부덕보건 진 료 소	하동군 화개면 섬진강대로 3748-11	부춘리 : 신기, 부춘, 검두 덕은리 : 영당, 상덕, 중기
동매보건 진 료 소	하동군 악양면 악양서로 656	중대리 : 상중대, 하중대 동매리 : 동매, 평촌 매계리 : 매계, 노전 등촌리 : 덕기, 중기
삼화보건 진 료 소	하동군 적량면 칠성로 415	동 리 : 명천, 이정, 동촌 서 리 : 하서, 중서, 도장골, 동점
우계보건 진 료 소	하동군 적량면 원우길 59-19	우계리 : 공월, 원우, 상우, 서당, 괴목, 신촌
남산보건 진 료 소	하동군 횡천면 원곡길 102-5	남산리 : 원곡, 상남, 하남 학 리 : 개인, 마치, 구학
전대보건 진 료 소	하동군 횡천면 전대1길 129-1	전대리 : 전대, 죽전 애치리 : 애치, 온동
성천보건 진 료 소	하동군 고전면 지소1길 22	성천리 : 상성, 지소, 남성 범아리 : 울촌, 아정
고하보건 진 료 소	하동군 고전면 하동읍성로 579	고하리 : 흥평, 주성, 고하, 죽전 명교리 : 명교, 일기 성평리 : 신덕, 성평
중평보건 진 료 소	하동군 금남면 상촌마을길 23	중평리 : 중평, 상촌 대치리 : 대치
덕천보건 진 료 소	하동군 금남면 대왕골길 6	덕천리 : 상삼천, 하삼천, 덕포 대송리 : 대송, 사동, 환치 계천리 : 사궁, 영천, 계항 진정리 : 진정, 조금, 금오
갑정보건 진 료 소	하동군 진교면 갑정길 7	월운리 : 월운, 갑정 관곡리 : 성평, 반석
우북보건 진 료 소	하동군 양보면 서촌섬백이길 16	우북리 : 괴파, 하성, 서촌, 동촌 통정리 : 서제 감당리 : 상쌍, 신진, 영계
방화보건 진 료 소	하동군 북천면 경서대로 2015-1	방화리 : 방화, 금촌, 가평 사평리 : 사평, 모성
화정보건 진 료 소	하동군 북천면 화정길 45	화정리 : 화정, 상촌 서황리 : 중촌, 기봉
목계보건 진 료 소	하동군 청암면 청학로 2196	목계리 : 목계, 학동, 원목, 장고, 청학
위태보건 진 료 소	하동군 옥종면 돌고지로 1096	궁항리 : 궁항, 오율 위태리 : 갈성, 위태 회신리 : 회신, 양지 월횡리 : 월횡, 고암
북방보건 진 료 소	하동군 옥종면 신촌마을길 22-1	북방리 : 북방, 신촌, 불무 대곡리 : 추동, 한계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8년 8월 3일

## 하 동 군 수 윤 상 기 인

하동군 조례 제 2294 호

###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을 “정원”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군”을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정원의 총수는 657명”을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683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644명”을 “670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하동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u>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u>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원의 총수) <u>군</u>에 두는 <u>정원</u>의 총수는 <u>657명</u>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p> <p>1. 집행기관의 정원 : <u>644명</u></p> <p>2. (생 략)</p> <p>[별표 3]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p>	<p>제1조(목적) ----- ----- ----- ----- 정원----- ----- -----.</p> <p>제2조(정원의 총수) <u>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u>----- <u>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u>의 총수는 <u>683명</u>-----.</p> <p>1. ----- <u>670명</u></p> <p>2. (현행과 같음)</p> <p>[별표 3]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rowspan="2">직급별</th> <th rowspan="2">기관별</th> <th rowspan="2">총계</th> <th rowspan="2">본청</th> <th colspan="2">의회사무과</th> <th colspan="2">직속기관</th> <th rowspan="2">사업소</th> <th rowspan="2">읍</th> <th rowspan="2">면</th> </tr> <tr> <th>보건소</th> <th>농업기술센터</th> <th>보건소</th> <th>농업기술센터</th> </tr> </thead> <tbody> <tr><td>총 계</td><td></td><td>657</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정무직 계</td><td></td><td>1</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군수</td><td></td><td>1</td><td>1</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일반직 계</td><td></td><td>626</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4급</td><td></td><td>1</td><td>1</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4급~5급</td><td></td><td>3</td><td>2</td><td></td><td>1</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5급</td><td></td><td>34</td><td>12</td><td>2</td><td>1</td><td>4</td><td>2</td><td>1</td><td>12</td><td></td></tr> <tr><td>  6급 이하 계</td><td></td><td>588</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별정직 계</td><td></td><td>3</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5급 상당</td><td></td><td>1</td><td></td><td>1</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6급 상당</td><td></td><td>2</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연구직 계</td><td></td><td>2</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연구관</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연구사</td><td></td><td>2</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지도직 계</td><td></td><td>25</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지도관</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지도사</td><td></td><td>25</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body> </table>	직급별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총 계		657	-								정무직 계		1	-								군수		1	1								일반직 계		626	-								4급		1	1								4급~5급		3	2		1						5급		34	12	2	1	4	2	1	12		6급 이하 계		588	-								별정직 계		3	-								5급 상당		1		1							6급 상당		2	-								연구직 계		2	-								연구관		-									연구사		2	-								지도직 계		25	-								지도관		-									지도사		25	-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rowspan="2">직급별</th> <th rowspan="2">기관별</th> <th rowspan="2">총계</th> <th rowspan="2">본청</th> <th colspan="2">의회사무과</th> <th colspan="2">직속기관</th> <th rowspan="2">사업소</th> <th rowspan="2">읍</th> <th rowspan="2">면</th> </tr> <tr> <th>보건소</th> <th>농업기술센터</th> <th>보건소</th> <th>농업기술센터</th> </tr> </thead> <tbody> <tr><td>총 계</td><td></td><td>683</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정무직 계</td><td></td><td>1</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군수</td><td></td><td>1</td><td>1</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일반직 계</td><td></td><td>652</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4급</td><td></td><td>3</td><td>3</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4급~5급</td><td></td><td>1</td><td></td><td></td><td>1</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5급</td><td></td><td>37</td><td>16</td><td>2</td><td>1</td><td>5</td><td>0</td><td>1</td><td>12</td><td></td></tr> <tr><td>  6급 이하 계</td><td></td><td>611</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별정직 계</td><td></td><td>3</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5급 상당</td><td></td><td>1</td><td></td><td>1</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6급 상당</td><td></td><td>2</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연구직 계</td><td></td><td>2</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연구관</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연구사</td><td></td><td>2</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지도직 계</td><td></td><td>25</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지도관</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지도사</td><td></td><td>25</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body> </table>	직급별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총 계		683	-								정무직 계		1	-								군수		1	1								일반직 계		652	-								4급		3	3								4급~5급		1			1						5급		37	16	2	1	5	0	1	12		6급 이하 계		611	-								별정직 계		3	-								5급 상당		1		1							6급 상당		2	-								연구직 계		2	-								연구관		-									연구사		2	-								지도직 계		25	-								지도관		-									지도사		25	-							
직급별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총 계		657	-																																																																																																																																																																																																																																																																																																																																																																																																																		
정무직 계		1	-																																																																																																																																																																																																																																																																																																																																																																																																																		
군수		1	1																																																																																																																																																																																																																																																																																																																																																																																																																		
일반직 계		626	-																																																																																																																																																																																																																																																																																																																																																																																																																		
4급		1	1																																																																																																																																																																																																																																																																																																																																																																																																																		
4급~5급		3	2		1																																																																																																																																																																																																																																																																																																																																																																																																																
5급		34	12	2	1	4	2	1	12																																																																																																																																																																																																																																																																																																																																																																																																												
6급 이하 계		588	-																																																																																																																																																																																																																																																																																																																																																																																																																		
별정직 계		3	-																																																																																																																																																																																																																																																																																																																																																																																																																		
5급 상당		1		1																																																																																																																																																																																																																																																																																																																																																																																																																	
6급 상당		2	-																																																																																																																																																																																																																																																																																																																																																																																																																		
연구직 계		2	-																																																																																																																																																																																																																																																																																																																																																																																																																		
연구관		-																																																																																																																																																																																																																																																																																																																																																																																																																			
연구사		2	-																																																																																																																																																																																																																																																																																																																																																																																																																		
지도직 계		25	-																																																																																																																																																																																																																																																																																																																																																																																																																		
지도관		-																																																																																																																																																																																																																																																																																																																																																																																																																			
지도사		25	-																																																																																																																																																																																																																																																																																																																																																																																																																		
직급별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총 계		683	-																																																																																																																																																																																																																																																																																																																																																																																																																		
정무직 계		1	-																																																																																																																																																																																																																																																																																																																																																																																																																		
군수		1	1																																																																																																																																																																																																																																																																																																																																																																																																																		
일반직 계		652	-																																																																																																																																																																																																																																																																																																																																																																																																																		
4급		3	3																																																																																																																																																																																																																																																																																																																																																																																																																		
4급~5급		1			1																																																																																																																																																																																																																																																																																																																																																																																																																
5급		37	16	2	1	5	0	1	12																																																																																																																																																																																																																																																																																																																																																																																																												
6급 이하 계		611	-																																																																																																																																																																																																																																																																																																																																																																																																																		
별정직 계		3	-																																																																																																																																																																																																																																																																																																																																																																																																																		
5급 상당		1		1																																																																																																																																																																																																																																																																																																																																																																																																																	
6급 상당		2	-																																																																																																																																																																																																																																																																																																																																																																																																																		
연구직 계		2	-																																																																																																																																																																																																																																																																																																																																																																																																																		
연구관		-																																																																																																																																																																																																																																																																																																																																																																																																																			
연구사		2	-																																																																																																																																																																																																																																																																																																																																																																																																																		
지도직 계		25	-																																																																																																																																																																																																																																																																																																																																																																																																																		
지도관		-																																																																																																																																																																																																																																																																																																																																																																																																																			
지도사		25	-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8년 8월 3일

## 하 동 군 수 윤 상 기 인

하동군 조례 제 2295 호

### 하동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이란 군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도록 도시공간, 건축물 등에 대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디자인을 말한다.
2.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이란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이 설립한 공사·공단 등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 하도록 한다.
3. 도시공간에 대해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한다.
4. 지역주민의 교류 증대와 활동성 강화를 위해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

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군수는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 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7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현황 및 실태에 대한 조사
4.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경관법」에 따른 경관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 ①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은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적용범위)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을 우선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 조성 사업
2. 군이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3. 군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
4.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도심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각종 공공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등

② 군수는 하동군 건축위원회와 하동군 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사업에 제5조의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 도시재생,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 사업
3.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
4.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연구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설치) ①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하동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 2. 제5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사업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 ② 위원회의 기능은 「하동군 경관 조례」에 따른 하동군 경관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운영)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하동군 교육지원청 및 관내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홍보)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을 위하여 우수사례 등에 대해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하동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 폐지지침」을 이에 발령한다.

2018년 8월 3일

## 하 동 군 수 윤 상 기 ㉠

하동군 예규 제 20 호

### 하동군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 폐지지침

하동군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을 폐지한다.

부 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하 천 점 용 ( 변 경 ) 허 가 증

제2016-25호

주 소	경남 하동군 옥종면		
성명(법인명)	장호*		
생년월일	1971.		
하천명칭	덕천강	하천등급	지방하천
점용장소	경남 하동군 옥종면 대곡리 1008-18		
점용면적	변경전: (6919㎡) ~ 변경후: (6591㎡)		
최초허가일	2017년 04월 13일		
점용기간	2017. 04. 13. ~ 2021. 04. 12.(5년간)		
허가조건	1. “불임참조”(허가조건) 준수할 것		

「하천법」 제3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합니다.

2018년 06월 20일

하 동 군 수 [인]



비고: 하천점용허가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상속일·양수일 또는 합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권리·의무승계신고서에 승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하천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하 천 점 용 허 가 증

제2018-27호

주 소	경남 하동군 옥종면 북방위회길 40-14		
성명(법인명)	임정녀		
생 년 월 일	0963. 04. 10.		
하 천 명 칭	덕천강	하 천 등 급	지방하천
점 용 장 소	옥종면 대곡리 1008-18		
점 용 면 적	328㎡		
최 초 허 가 일	2018년 6월 22일		
점 용 기 간	2018. 6. 22. ~ 2023. 6. 21.		
허 가 조 건	붙임 참조약양		

「하천법」 제3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합니다.

2018년 6월 22일

하 동 군 수 [인]




비고: 하천점용허가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상속일·양수일 또는 합병일부터 30일 이내에 권리의무승계신고서에 승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하천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허 가 조 건

1. 제출된 목적대로 사용해야 하며, 변경사항이 있을 시에는 별도 변경 협의를 받아야 하고, 허가시설물의 다른 시설물이 추가설치 되거나 유수 소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허가만료 1개월 전까지 하천점용 연장 허가신청 하여야 합니다.)
2. 본 점용으로 발생하는 제반피해에 대하여는 피 허가자가 본인이 해결하여야 하며, 민형사상 책임도 감수하여야 합니다. 특히 농기계 및 차량의 통행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에도 피 허가자 본인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점용 및 공작물 설치로 편입되는 하천구역내의 사유 토지 등 제3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있을 경우 보상 또는 협의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4. 공익상 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점용장소를 출입하여 조사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으며 피 허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5. 하천법에 다른 법령에 의한 신고, 협의, 승인,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은 그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6. 소음, 공해, 기타행위로 인하여 인근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않되** 며, 민원발생시 점용허가 취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연접지역이 하천임을 감안하여 오폐수 유입방지를 위해 점 용지 유 지관리에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위 각항 및 관계법규를 위반하거나 관리청이 하천공사시행 등 국가 및 공익상의 공공목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본 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 또는 추가 할 수 있으며, 당해 필지의 공작물(건물, 기타 축조물)에 대한 보상은 불가하며 이에 따른 보완이나 이설 또는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은 피 허가자 부담으로 하여야 합니다.

# 하 천 점 용 허 가 증

제2013-1호

주 소	경남 하동군 하동읍 부두길7 강변타운 607호		
성명(법인명)	권영인		
생년월일			
하천명칭	섬진강	하천등급	국가하천
점용위치	하동군 하동읍 광평리 1497-2(천)외 453(천),887(천),833(천),490(천)등		
목적및면적	카약의 운행(수상레저사업 물놀이 행위) A =0.7km <sup>2</sup> (L=7km)		
최초허가일	2013년 1월 28일		
점용기간	2018년 1월 28일 ~ 2021년 1월 27일(3년)		
허가조건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물놀이 행위를 위해 하천구역내 선착장등의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하는경우 별도의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li> <li>2. <u>선박등 운항시 부표등을 설치하고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요원을 배치, 운영</u>하여야 합니다.</li> <li>3. 본 허가와 관련하여 유수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장애물을 하상 또는 고수 부지에 적치하지 않아야 하며 하천구역 밖에서 처리해야 합니다.</li> <li>4. <u>본 허가와 관련된 민원 및 분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피허가자가 책임지고 처리해야 하며 민형사상 책임도 감수하여야 합니다.</u></li> <li>5. 하천법 외 다른 법령에 의한 신고, 협의, 승인,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은 그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li> <li>6. <u>추후 본 허가구간 및 상·하류 국가하천 구간내 국가 및 공익상 필요시에는 언제든지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u></li> <li>7. 본 허가와 관련하여 <u>시행중·예정인 공공사업 및 하천점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피해에 대하여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u></li> <li>8. <u>허가구간의 선박운항을 금지</u>합니다.</li> <li>9. 어촌계 동의서상 무동력선만 운행계획이나 동력선을 추가 운행할 경우 어촌계와 별도의 협의를 거친 후 운행하시기 바랍니다.</li> <li>10. <u>각 항의 조건을 위반할 경우 허가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u></li> </ol>		
<p>「하천법」 제3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18년 6월 25일</p> <p style="text-align: center;">하 동 군 수 [인]</p> 			
<p>비고: 하천점용허가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상속일·양수일 또는 합병일부터 30일 이내에 권리·의무승계신고서에 승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하천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p>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7. 9. 22.>

허가번호 제 2017-162호

##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증

허가 대상자	성명 하동군수 (도시건축과)	생년월일(성별)
	전화번호 055-880-2114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경남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변경 전	변경 후
면적	2016㎡	1897 ㎡
목적	정서~강선암간 도로 확포장공사	정서~강선암간 도로 확포장공사
기간	2016·07·26· ~ 2046·07·25·	2016·07·26· ~ 2046·07·25·
변경사항  조건	1. 점용 허가지역 외 구거시설에 피해가 발생되거나 제3자에 대하여 피해 등으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b>피해 발생시에는 피허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변상 조치</b> 하여야 합니다. 2. 타 법령과 관련되는 제반사항은 개별법에 의거 허가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3. 허가면적·목적외 사용을 금하며, 면적의 추가나 계획변경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4. 공공사업 등 허가자의 요구가 있을 시는 언제든지 점사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며, 허가자가 복구요청시에는 이의없이 피허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5. 점용으로 인한 유수의 지장 발생시 즉시 자진하여 철거 및 보완하여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1. 점용 허가지역 외 구거시설에 피해가 발생되거나 제3자에 대하여 피해 등으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b>피해 발생시에는 피허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변상 조치</b> 하여야 합니다. 2. 타 법령과 관련되는 제반사항은 개별법에 의거 허가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3. 허가면적·목적외 사용을 금하며, 면적의 추가나 계획변경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4. 공공사업 등 허가자의 요구가 있을 시는 언제든지 점사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며, 허가자가 복구요청시에는 이의없이 피허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5. 점용으로 인한 유수의 지장 발생시 즉시 자진하여 철거 및 보완하여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를 합니다.

2018년                      6월                      27일

하 동 군 수



※ 이 별지에서 "공유수면관리청"이란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합니다.

# 하 천 점 용 허 가 증

제2018-28호

주 소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성명(법인명)	(사단법인)알프스하동 섬진강 재첩축제 위원장		
생년월일	476-82-00047		
하천명칭	섬진강	하천등급	국가하천
점용장소	하동군 하동읍 광평리 453(천) ※ 인근지번 광평리 440-12		
점용면적	322㎡		
최초허가일	2017년 07월 04일		
점용기간	2017. 7. 12. ~ 2018. 7. 25.(14일간)		
허가조건	1. “불임참조”(허가조건) 준수할 것		

「하천법」 제3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합니다.

2017년 07월 04일

하 동 군 수 [인]



비고: 하천점용허가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상속일·양수일 또는 합병일부터 30일 이내에 권리·의무승계신고서에 승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하천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하 천 점 용 허 가 증

제2018-29호

주 소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성명(법인명)	하동군수		
생년월일	614-83-00025		
하천명칭	중이천	하천등급	지방하천
점용장소	하동군 청암면 중이리 1482(천) ※ 인근지번: 청암면 중이리 1275		
점용면적	177㎡		
최초허가일	2017년 07월 05일		
점용기간	2017. 7. 5. ~ 영구		
허가조건	1. “불임참조”(허가조건) 준수할 것		

「하천법」 제3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합니다.

2017년 07월 05일

하 동 군 수 [인]



비고: 하천점용허가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상속일·양수일 또는 합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권리·의무승계신고서에 승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하천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허 가 조 건

1. 본 공작물의 설치는 귀 기관에서 직접 감독(또는 책임)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반드시 제출한 도면 및 설계내역대로 시공하여야 합니다.
2. 공사 착수 시에는 공사착수신고서(예정공정표 첨부)를 제출해야 하며, 공사완료시 준공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3. 공사 시행에 따른 하천의 오염이나 공해, 기타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져오는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방지대책 등을 수립하여야 하며, 하천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4. 공사 시행 시 유수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장애물을 하상 또는 고수부지 등에 적치하지 않아야 하며, 하천시설물에 피해가 없도록 우기 시 유수소통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공사는 중지하고, 안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등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기상특보시 즉시 철거 가능)
5. 공사시행 시 안내간판 및 안전시설을 설치(부착)하여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본 점용허가 공사로 인하여 훼손되는 하천시설물(제방 및 호안 등)에 대하여는 원상복구를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6. 점용허가 구간 공사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에는 피해자 보상 요구 등 모든 민·형사상에 대한 책임은 피 허가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7. 하천점용 기간동안 하천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지적할 경우 즉시 시정조치를 해야 하며, **특히 하천점용으로 인한 민원발생등 공익을 위해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8.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은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쓰레기 및 오수 등으로 인한 하천의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9. 타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관계법령에 의한 별도의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10. 부득이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득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점용 공사기간 및 허가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기간만료 1개월 전까지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위 각항 및 관계법규를 위반하거나 하천관리청이 하천공사시행 및 공공목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본 허가를 취소하거나 조건을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보완이나 이설 또는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은 피 허가자 부담으로 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5호서식]

허가번호 제2018- 18호

## 공유수면 점용 · 사용허가증

허가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성별)
	양영수 외1인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법인번호)
	주 소	
	광양시 금영로	

장소 : 경남 하동군 하동읍 두곡리 1609-5번지

면적(또는 채취량·투기량) 17㎡ (또는 m³)

목적 : 진출입로

기간 : 2018. 07. 05. ~ 2023. 07. 04)

점용 · 사용의 유형 : 진출입로

실시계획 승인 또는 신고대상 여부 : 해당없음

### 허가조건

1. 점용 허가지역 외 구거시설에 피해가 발생되거나 제 3자에 대하여 피해 등으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피해 발생시에는 피허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변상 조치하여야 합니다.
2. 타 법령과 관련되는 제반사항은 개별법에 의거 허가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3. 허가면적 · 목적의 사용을 금하며, 면적의 추가나 계획변경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4. 공공사업 등 허가자의 요구가 있을 시는 언제든지 점사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며, 허가자가 복구요청시에는 이의없이 피허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5. 점용으로 인한 유수의 지장 발생시 즉시 자진하여 철거 및 보완하여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 · 사용을 허가합니다.

2018년 7월 5일

하 동 군 수 (인)



하동군 고시 제2018 - 114호

## 도로명주소 부여고시

우리군 신축 건물 및 도로명주소 미부여 건물에 대한 도로명주소 신규 부여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새로이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 7. 12.

## 하 동 군 수

○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경충로 590-32 외 14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별 지 참 조(15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청 민원과(☎880-2124)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8. 7. 12.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는 공공기관에서 민원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 새롭게 바뀐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업무 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 명주소고시일	이 동사유	도로 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 고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술상리 산 64-1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경충로 590-32	2018 0712		2009 0702	정기룡장군 추모사당을 지나가는 도로로 지역의 역사성 반영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술상리 산 62-2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경충로 590-38	2018 0712		2009 0702	정기룡장군 추모사당을 지나가는 도로로 지역의 역사성 반영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범아리 743-3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하동읍성로 287	2018 0712		2007 0618	사적 217호인 하동읍성앞을 지나가는 도로로서 문화재 이름에서 도로명부여	
건물 번호 분할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화개로 26-1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화개로 26-3	2018 0712		2007 0618	화개면을 통과하는 주요도로로 면이름에서 도로명 부여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용강리 959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화개로 823	2018 0712		2007 0618	화개면을 통과하는 주요도로로 면이름에서 도로명 부여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대송리 491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해안로 242-10	2018 0712		2011 1019	해안을 따라 형성된 도로이므로 해안로로 명명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동리 105-1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삼화실로 158-72	2018 0712		2014 0701	옛 지명으로 도로명 부여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법대리 285-2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법대길 11-45	2018 0712		2008 0402	법대라는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북방리 679-1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불무길 4	2018 0712		2009 0302	불무라는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상이리 1446, 1447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사동길 2	2018 0712		2007 0618	사동이라는 마을이름 반영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신성리 229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상신대길 136-33	2018 0712		2007 0618	신대리 윗쪽 마을이라 하여 붙여진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우계리 1027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상우길 121	2018 0712		2007 0618	원우의 윗마을이라 하여 붙여진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묵계리 635-11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새터길 14	2018 0712		2007 0618	새의터 학의터 라는 이름을 사용하여 새장터길로 명명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갈사리 172-1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연막중앙길 9-2	2018 0712		2008 0402	마을고유명칭에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연막중앙길로 명명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정서리 708-2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주암길 18	2018 0712		2007 0618	정서 북서쪽에 있는 주암이라는 자연마을이름 반영	

# 하 천 점 용 ( 변 경 ) 허 가 증

제2018-28-1호

주 소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성명(법인명)	사단법인 알프스하동 섬진강재첩축제위원장		
생년월일	476-82-00047		
하천명칭	섬진강	하천등급	국가하천
점용장소	하동군 하동읍 광평리 435-1외 18필지(435-2,435-3,440-4,440-5, 440-9, 440-10,440-11, 440-12, 443-2,443-5,443-10,443-16, 443-17,443-18,443-20, 443-21, 453, 455) ※ 인근지번 광평리 440-12		
점용면적	당초 322㎡, 변경 2,341㎡ (대지면적378,952㎡)㎡		
최초허가일	당초 2018년 07월 04일, 변경허가일 2018년 07월 13일		
점용기간	당초 2018. 7. 12 ~ 7. 25, 변경 2018. 7.12 ~ 7. 25		
허가조건	1. “붙임참조”(허가조건) 준수할 것		

「하천법」 제3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합니다.

2018년 07월 13일

하 동 군 수 [인]



비고: 하천점용허가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상속일·양수일 또는 합병일부터 30일 이내에 권리의무승계신고서에 승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하천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허 가 조 건

1. 본 공작물의 설치는 귀 기관에서 직접 감독(또는 책임)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반드시 제출한 도면 및 설계내역대로 시공하여야 합니다.
2. 공사 착수 시에는 공사착수신고서(예정공정표 첨부)를 제출해야 하며, 공사완료시 준공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3. 공사 시행에 따른 하천의 오염이나 공해, 기타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져오는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방지대책 등을 수립하여야 하며, 하천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4. 공사 시행 시 우수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장애물을 하상 또는 고수부지 등에 적치하지 않아야 하며, 하천시설물에 피해가 없도록 우기 시 우수소통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공사는 중지하고, 안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등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기상특보시 즉시 철거 가능)
5. 공사시행 시 안내간판 및 안전시설을 설치(부착)하여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본 점용허가 공사로 인하여 훼손되는 하천시설물(제방 및 호안 등)에 대하여는 원상복구를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6. 점용허가 구간 공사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에는 피해자 보상 요구 등 모든 민·형사상에 대한 책임은 피 허가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7. 하천점용 기간동안 하천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지적할 경우 즉시 시정조치를 해야 하며, **특히 하천점용으로 인한 민원발생등 공익을 위해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8.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은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쓰레기 및 오수 등으로 인한 하천의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9. 타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관계법령에 의한 별도의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10. 부득이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득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점용 공사기간 및 허가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기간만료 1개월 전까지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위 각항 및 관계법규를 위반하거나 하천관리청이 하천공사시행 및 공공목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본 허가를 취소하거나 조건을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보완이나 이설 또는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은 피 허가자 부담으로 하여야 합니다.

# 하 천 점 용 허 가 증

제2018-30호

주 소	하동군 하동읍 중앙로 42		
성명(법인명)	하동군산림조합		
생년월일	614-82-00289		
하천명칭	횡천강	하천등급	지방하천
점용장소	횡천면 횡천리 1019-1 인근지번 1083-1		
점용면적	400㎡		
최초허가일	2018년 7월 13일		
점용기간	2018. 7. 13. ~ 2018. 7. 25.		
허가조건	붙임 참조.		

「하천법」 제3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합니다.

2018년 7월 11일

하 동 군 수 [인]



비고: 하천점용허가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상속일·양수일 또는 합병일부터 30일 이내에 권리의무승계신고서에 승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하천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허 가 조 건

1. 제출된 목적대로 사용해야 하며, 변경사항이 있을 시에는 별도 변경 협의를 받아야 하고, 허가시설물의 다른 시설물이 추가설치 되거나 유수 소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허가만료 1개월 전까지 하천점용 연장 허가신청 하여야 합니다.)
2. 본 점용으로 발생하는 제반피해에 대하여는 피 허가자가 본인이 해결하여야 하며, 민형사상 책임도 감수하여야 합니다. 특히 농기계 및 차량의 통행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에도 피 허가자 본인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점용 및 공작물 설치로 편입되는 하천구역내의 사유 토지 등 제3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있을 경우 보상 또는 협의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4. 공익상 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점용장소를 출입하여 조사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으며 피 허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5. 하천법에 다른 법령에 의한 신고, 협의, 승인,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은 그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6. 소음, 공해, 기타행위로 인하여 인근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않되** 며, 민원발생시 점용허가 취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연접지역이 하천임을 감안하여 오폐수 유입방지를 위해 점 용지 유 지관리에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위 각항 및 관계법규를 위반하거나 관리청이 하천공사시행 등 국가 및 공익상의 공공목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본 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 또는 추가 할 수 있으며, 당해 필지의 공작물(건물, 기타 축조물)에 대한 보상은 불가하며 이에 따른 보완이나 이설 또는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은 피 허가자 부담으로 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5호서식]

허가번호 제2010- 05호

## 공유수면 점용 · 사용허가증

허가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성별)
	안연*	19650207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법인번호) 650207-2*****
	주 소	경남 하동군 악양면

장소 :경남 하동군 악양면 정서리747

면적(또는 채취량·투기량)	49m <sup>2</sup>	(또는	m <sup>3</sup> )
-------------------	------------------	-----	------------------

목적 : 진출입로

기간 : 2015. 06. 25. ~ 2020. 06. 24)

점용 · 사용의 유형 : 진출입로

실시계획 승인 또는 신고대상 여부 : 해당없음

### 허가조건

1. 점용 허가지역 외 구거시설에 피해가 발생되거나 제 3자에 대하여 피해 등으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피해 발생시에는 피허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변상 조치하여야 합니다.
2. 타 법령과 관련되는 제반사항은 개별법에 의거 허가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3. 허가면적 · 목적의 사용을 금하며, 면적의 추가나 계획변경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4. 공공사업 등 허가자의 요구가 있을 시는 언제든지 점사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며, 허가자가 복구요청시에는 이의없이 피허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5. 점용으로 인한 유수의 지장 발생시 즉시 자진하여 철거 및 보완하여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 · 사용을 허가합니다.

2018년 7월 11일

하 동 군 수 (인)



# 하 천 점 용 허 가 증

제2018-31호

주 소	경남 하동군 횡천면 경서대로 1175-3 (횡천 면사무소)		
성명(법인명)	가로내축제 추진위원회		
생년월일			
하천명칭	횡천강	하천등급	지방하천
점용장소	횡천면 횡천리 1019-1 인근지번 1019-145		
점용면적	8,000㎡		
최초허가일	2018년 7월 16일		
점용기간	2018. 7. 16. ~ 2018. 8. 15.		
허가조건	붙임 참조.		

「하천법」 제3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합니다.

2018년 7월 17일

하 동 군 수 [인]



비고: 하천점용허가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상속일·양수일 또는 합병일부터 30일 이내에 권리의무승계신고서에 승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하천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허 가 조 건

1. 제출된 목적대로 사용해야 하며, 변경사항이 있을 시에는 별도 변경 협의를 받아야 하고, 허가시설물의 다른 시설물이 추가설치 되거나 우수 소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허가만료 1개월 전까지 하천점용 연장 허가신청 하여야 합니다.)

2. 본 점용으로 발생하는 제반피해에 대하여는 피 허가자가 본인이 해결하여야 하며, 민형사상 책임도 감수하여야 합니다. 특히 농기계 및 차량의 통행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에도 피 허가자 본인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점용 및 공작물 설치로 편입되는 하천구역내의 사유 토지 등 제3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있을 경우 보상 또는 협의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4. 공익상 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점용장소를 출입하여 조사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으며 피 허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5. 하천법에 다른 법령에 의한 신고, 협의, 승인,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은 그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6. 소음, 공해, 기타행위로 인하여 인근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않되** 며, 민원발생시 점용허가 취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연접지역이 하천임을 감안하여 오폐수 유입방지를 위해 점 용지 유 지관리에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위 각항 및 관계법규를 위반하거나 관리청이 하천공사시행 등 국가 및 공익상의 공공목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본 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 또는 추가 할 수 있으며, 당해 필지의 공작물(건물, 기타 축조물)에 대한 보상은 불가하며 이에 따른 보완이나 이설 또는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은 피 허가자 부담으로 하여야 합니다.

하동군 고시 제2018 - 121호

# 도로명주소 부여고시

우리군 신축 건물 및 도로명주소 미부여 건물에 대한 도로명주소 신규 부여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새로이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 7. 23.

## 하 동 군 수

○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4 외 15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별 지 참 조(16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청 민원과(☎880-2124)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8. 7. 23.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는 공공기관에서 민원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 새롭게 바뀐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업무 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주소고 시일	이동 사유	도로 명고 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184-1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4	20180 723		2007 0618	하동군을 상징하고 대표적인 공공기관인 군청앞을 지나가는 도로로 공공시설명 적용 도로명부여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횡천면 전대리 919-2	경상남도 하동군 횡천면 돌고지로 573-55	20180 723		2007 0618	횡천과 옥종의 경계지점에 있는 재로서 재를 넘을때 산모퉁이를 돌고 돌아 넘는다고해서 돌고지재라고한 옛지명 사용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송원리 375-13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고원로 40-6	20180 723		2009 0702	행정구역명(고이리+원동마을) 활용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정수리 420-1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옥단로 642-31	20180 723		2009 0702	행정구역명(옥종+단성면) 활용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상이리 787-3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고래실길 244	20180 723		2007 0618	마을 뒷산이 고래등같이 생겼다하여 붙여진 마을이름 반영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흥룡리 산 53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매화골먹점길 161-1	20180 723		2007 0618	매실이 많이 나는 마을특성에 먹점이라는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흥룡리 172-3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매화골먹점길 214-2	20180 723		2007 0618	매실이 많이 나는 마을특성에 먹점이라는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명호리 1382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명사길 384-46	20180 723		2007 0618	명호입구부터 절골까지 도로가 명사길이라 불리워졌기때문에 명사길로 명명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 사평리 985-1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 모성길 106	20180 723		2011 1214	소가 우는 형상을 하고 있는 뒷산의 모양을 따서 붙여진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신월리 989, 988-1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사막1길 26	20180 723		2011 1025	사평 사드래와 양막골의 마을을 합하여 붙여진 자연 마을이름에 일련번호방식의 첫번째 도로명 반영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 사평리 355-12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 사평길 73	20180 723		2007 0618	모랫독으로 이루어져 있다하여 붙여진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덕은리 910-1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영당2길 25	20180 723		2007 0618	금천사를 세워 쌍계사에 모셨던 고운선생의 영정을 옮겨오면서 붙여진 자연마을명에 일련번호 방식의 두 번째 도로명 반영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탐리 93-2, 산93-17, 798-1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원탐1길 24-4	20180 723		2009 0302	자연마을 이름에 일련번호방식의 첫번째 도로명 반영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화심리 1064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화심길 259	20180 723		2007 0618	화심이라는 자연마을명을 도로명에 반영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회신리 349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회신길 23	20180 723		2008 0402	회신이라는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운수리 328-33, 328-31, 328-34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쌍계사길 27-17	20180 723		2011 1013	쌍계사로 진입하는 주도로로 지역의 대표성을 도로명에 반영	

[별지 제5호서식]

허가번호 제2018- 19호

### 공유수면 점용 · 사용허가증

허가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성별)
	문동배 외1인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법인번호)
	010-5502-3491	신기발전소 문영배(194711-0*****) 술상발전소 이명희(194711-0*****)
	주 소	
	하동군 진교면 들포길37, 103동607호	

장소 : 경남 하동군 진교면 술상리 712번지

면적(또는 채취량 · 투기량)	47㎡	(또는	㎡)
---------------------	-----	-----	----

목적 : 진출입로

기간 : 2018. 07. 23. ~ 2023. 07. 22.)

점용 · 사용의 유형 : 진출입로

실시계획 승인 또는 신고대상 여부 : 해당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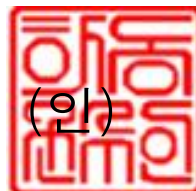
#### 허가조건

1. 점용 허가지역 외 구거시설에 피해가 발생되거나 제 3자에 대하여 피해 등으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피해 발생시에는 피허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변상 조치하여야 합니다.
2. 타 법령과 관련되는 제반사항은 개별법에 의거 허가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3. 허가면적 · 목적외 사용을 금하며, 면적의 추가나 계획변경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4. 공공사업 등 허가자의 요구가 있을 시는 언제든지 점사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며, 허가자가 복구요청시에는 이의없이 피허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5. 점용으로 인한 유수의 지장 발생시 즉시 자진하여 철거 및 보완하여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 · 사용을 허가합니다.

2018년 7월 22일

하 동 군 수 (인)



[별지 제5호서식]

허가번호 제2018- 20호

## 공유수면 점용 · 사용허가증

허가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성별)
	정연*	1950. 09. 26.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법인번호)
	주 소	500926-*****
하동군 옥종면		

장소 : 경남 하동군 옥종면 양구리 781-2 번지

면적(또는 채취량·투기량) 110㎡ (또는 m³)

목적 : 진출입로

기간 : 2018. 07. 23. ~ 2023. 07. 22.)

점용 · 사용의 유형 : 진출입로

실시계획 승인 또는 신고대상 여부 : 해당없음

### 허가조건

1. 점용 허가지역 외 구거시설에 피해가 발생되거나 제 3자에 대하여 피해 등으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피해 발생시에는 피허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변상 조치하여야 합니다.
2. 타 법령과 관련되는 제반사항은 개별법에 의거 허가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3. 허가면적 · 목적의 사용을 금하며, 면적의 추가나 계획변경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4. 공공사업 등 허가자의 요구가 있을 시는 언제든지 점사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며, 허가자가 복구요청시에는 이의없이 피허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5. 점용으로 인한 유수의 지장 발생시 즉시 자진하여 철거 및 보완하여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 · 사용을 허가합니다.

2018년 7월 23일

하 동 군 수 (인)





[별지 제5호서식]

허가번호 제2018- 21호

## 공유수면 점용 · 사용허가증

허가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성별)
	정*임	1962. 01. 27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법인번호)
	주 소	620127-*****
경남 하동군 악양면 신흥리 963		

장소 : 경남 하동군 악양면 정서리 1052

면적(또는 채취량·투기량) 35㎡ (또는 m³)

목적 : 진출입로

기간 : 2018. 07. 23. ~ 2023. 07. 22.)

점용 · 사용의 유형 : 진출입로

실시계획 승인 또는 신고대상 여부 : 해당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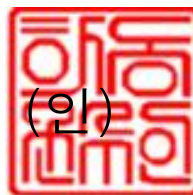
### 허가조건

1. 점용 허가지역 외 구거시설에 피해가 발생되거나 제 3자에 대하여 피해 등으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피해 발생시에는 피허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변상 조치하여야 합니다.
2. 타 법령과 관련되는 제반사항은 개별법에 의거 허가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3. 허가면적 · 목적의 사용을 금하며, 면적의 추가나 계획변경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4. 공공사업 등 허가자의 요구가 있을 시는 언제든지 점사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며, 허가자가 복구요청시에는 이의없이 피허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5. 점용으로 인한 유수의 지장 발생시 즉시 자진하여 철거 및 보완하여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 · 사용을 허가합니다.

2018년 7월 23일

하 동 군 수 (인)



[별지 제5호서식]

허가번호 제2018- 22호

## 공유수면 점용 · 사용허가증

허가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성별)
	변 명 성	1978. 07. 19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법인번호)
	주 소	780719-*****

장소 : 경남 하동군 화개면 부춘리 1188(구)

면적(또는 채취량·투기량) 16㎡ (또는 ㎡)

목적 : 진출입로

기간 : 2018. 07. 24. ~ 2023. 07. 23.)

점용 · 사용의 유형 : 기타목적(주차장 및 진출입로)를 하는 행위 목적

실시계획 승인 또는 신고대상 여부 : 해당없음

### 허가조건

1. 점용 허가지역 외 구거시설에 피해가 발생되거나 제3자에 대하여 피해 등으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피해 발생시에는 피허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변상 조치하여야 합니다.
2. 타 법령과 관련되는 제반사항은 개별법에 의거 허가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3. 허가면적·목적외 사용을 금하며, 면적의 추가나 계획변경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4. 공공사업 등 허가자의 요구가 있을 시는 언제든지 점사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며, 허가자가 복구요청시에는 이의없이 피허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5. 점용으로 인한 유수의 지장 발생시 즉시 자진하여 철거 및 보완하여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 · 사용을 허가합니다.

2018년 7월 25일

하 동 군 수 (인)



[별지 제5호서식]

허가번호 제2018- 23호

### 공유수면 점용 · 사용허가증

허가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성별)
	하동군수 (건설교통과)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법인번호)
	주 소	
	경남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장소 : 경남 하동군 금남면 대치리1160(구)

면적(또는 채취량·투기량) 414㎡ (또는 m³)

목적 : 기타목적(걸문계 (농어촌도로 208호)진입로 확포장 공사에 진입로)를 하는 행위목적

기간 : 2018. 07. 30. ~ 영구

점용 · 사용의 유형 :진입로(아스팔트) 및 벤치플룸관(0.5×0.5), BOX(5.0×2.0×1련))등 설치

실시계획 승인 또는 신고대상 여부 : 해당없음

#### 허가조건

1. 점용 허가지역 외 구거시설에 피해가 발생되거나 제 3자에 대하여 피해 등으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피해 발생시에는 피허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변상 조치하여야 합니다.
2. 타 법령과 관련되는 제반사항은 개별법에 의거 허가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3. 허가면적 · 목적의 사용을 금하며, 면적의 추가나 계획변경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4. 공공사업 등 허가자의 요구가 있을 시는 언제든지 점사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며, 허가자가 복구요청시에는 이의없이 피허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5. 점용으로 인한 유수의 지장 발생시 즉시 자진하여 철거 및 보완하여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 · 사용을 허가합니다.

2018년 7월 30일

하 동 군 수 (인)



[별지 제5호서식]

허가번호 제2018- 24호

## 공유수면 점용 · 사용허가증

허가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성별)
	김 대 호	1985.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법인번호)
	주 소	
	경남 진주시 강남로	

장소 : 경남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1560(구)

면적(또는 채취량·투기량) 11㎡ (또는 ㎡)

목적 : 진출입로

기간 : 2018. 07. 30. ~ 2019. 07. 29.)

점용 · 사용의 유형 : 기타목적(강관비게설치)를 하는 행위 목적

실시계획 승인 또는 신고대상 여부 : 해당없음

### 허가조건

1. 점용 허가지역 외 구거시설에 피해가 발생되거나 제 3자에 대하여 피해 등으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피해 발생시에는 피허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변상 조치하여야 합니다.
2. 타 법령과 관련되는 제반사항은 개별법에 의거 허가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3. 허가면적 · 목적의 사용을 금하며, 면적의 추가나 계획변경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4. 공공사업 등 허가자의 요구가 있을 시는 언제든지 점사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며, 허가자가 복구요청시에는 이의없이 피허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5. 점용으로 인한 유수의 지장 발생시 즉시 자진하여 철거 및 보완하여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 · 사용을 허가합니다.

2018년 7월 30일

하 동 군 수 (인)



[별지 제5호서식]

허가번호 제2018- 24호

### 공유수면 점용 · 사용허가증

허가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성별)
	홍 순 혁	1969. 01. 17.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법인번호)
	주 소	경남 진주시

장소 : 경남 하동군 옥종면 법대리 689-35(구)

면적(또는 채취량·투기량) 130㎡ (또는 m³)

목적 : 기타목적(진출입로)를 하는 행위 목적

기간 : 2018. 07. 30. ~ 2019. 07. 29.)

점용 · 사용의 유형 :

실시계획 승인 또는 신고대상 여부 : 해당없음

#### 허가조건

1. 점용 허가지역 외 구거시설에 피해가 발생되거나 제 3자에 대하여 피해 등으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피해 발생시에는 피허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변상 조치하여야 합니다.
2. 타 법령과 관련되는 제반사항은 개별법에 의거 허가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3. 허가면적 · 목적외 사용을 금하며, 면적의 추가나 계획변경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4. 공공사업 등 허가자의 요구가 있을 시는 언제든지 점사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며, 허가자가 복구요청시에는 이의없이 피허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5. 점용으로 인한 유수의 지장 발생시 즉시 자진하여 철거 및 보완하여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 · 사용을 허가합니다.

2018년 7월 30일

하 동 군 수 (인)



하동군 고시 제2018 - 135호

# 도로명주소 부여고시

우리군 신축 건물 및 도로명주소 미부여 건물에 대한 도로명주소 신규 부여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새로이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 8. 2.

## 하 동 군 수

○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섬진강대로 2166-19 외 9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별 지 참 조(10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청 민원과(☎880-2124)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8. 8. 2.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는 공공기관에서 민원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 새롭게 바뀐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업무 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 명주 소고 시일	이동 사유	도로 명고 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 고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1502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섬진강대로 2166-19	2018 0802		2009 0710	섬진강 지역명 사용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화심리 160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섬진강대로 2414-12	2018 0802		2009 0710	섬진강 지역명 사용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덕천리 1070-8, 1070-1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섬진강대로 706	2018 0802		2009 0710	섬진강 지역명 사용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양구리 368-13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옥단로 856-2	2018 0802		2009 0702	행정구역명(옥종+단성면) 활용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용강리 94-1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모암길 29-18	2018 0802		2007 0618	모암이라는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용강리 746-7, 416-9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모암길 6	2018 0802		2007 0618	모암이라는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 사평리 460-7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 사평길 66-7	2018 0802		2007 0618	모랫둑으로 이루어져 있다하여 붙여진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정금리 596-4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신촌도심길 72	2018 0802		2009 0302	골짜기의 옛지명에서 유래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정금리 596-3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신촌도심길 72-1	2018 0802		2009 0302	골짜기의 옛지명에서 유래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서리 1460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중서길 129	2018 0802		2007 0618	중서라는 자연마을이름 반영	

하동군 공고 제2018 - 호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처리규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4일

하 동 군 수

**1. 자치법규명 :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2. 개정이유**

- 가.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행정 지원과 실행 중심의 국 설치
- 나. 미래 성장동력 발굴 및 농업기술센터 역량강화를 위한 조직 강화
- 다. 1차산업 분야에 대한 지원조직 확대

**3. 주요내용**

- 가. 국 설치에 따른 권한 집중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좌기관으로 담당관 별도 설치(안 제3조)
  - 기획조정실 → 기획예산담당관
- 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으로 국(局) 설치기준이 마련되어, 2국을 설치함(안 제4조에서 제6조)
  - 행정지원국 : 행정과, 경제전략과, 주민행복과, 재정관리과, 문화체육과, 민원과, 환경보호과
  - 관광산업국 : 관광진흥과, 도시건축과, 해양수산과, 안전총괄과, 산림녹지과, 건설교통과, 산단조성과, 수도사업과
- 다. 과 및 담당 신설(안 제5조, 제6조 및 제12조)
  - 신설 과 : 경제전략과, 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 해양수산과, 농산물유통과
  - 신설 담당 : 지역공동체, 공간정보, 탄소제로, 관광기획, 관광마케팅, 도시재생, 내수면개발, 법률지원, 관리운영, 치매안심, 농산물가공, 디자인, 드론활용, 농업유산

**4. 의견 제출 : 이 자치 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년 7월 14일까지 하동군(참조 : 행정과, 전화 055-880-2153, FAX055-880-2159, e-mail:hae444@korea.kr)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성 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하동군 조례 제 호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2조부터 제120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하동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장, 담당관, 과장의 직급 등) ①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의 국장·담당관·과장 등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농업기술센터소장과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면장의 직급 및 사무분장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 군본청

제3조(보좌기관) ① 부군수 밑에 기획예산담당관을 둔다.

② 기획예산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 1. 군정전반의 종합기획·조정, 새로운 시책, 각종 평가 및 통계에 관한 사항
- 2. 예산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 3. 홍보 및 공보행정에 관한 사항
- 4. 군정·비위 감사에 관한 사항
- 5. 법무, 소송,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 6. 자매결연, 대외교류협력, 및 봉사단체 관리에 관한 사항

제4조(국의 설치)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지원국과 관광산업국을 둔다.

제5조(행정지원국) ① 행정지원국에 행정과, 경제전략과, 주민행복과, 재정관리과, 문화체육과, 민원과, 환경보호과를 둔다.

② 행정지원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 1. 조직, 인사, 여론, 행정관리에 관한 사항
- 2. 공무원단체, 후생복지, 선거 및 사무능률에 관한 사항
- 3. 아동 및 청소년에 관한 사항
- 4. 인구증대시책 및 출산장려에 관한 사항
- 5. 평생학습 및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 6. 행정전산화 및 정보통신 관리에 관한 사항
- 7. 미래 전략사업 발굴 및 대형 민자 유치에 관한 사항

- 8. 일자리창출 및 지식재산·지역경제발전, 전통시장육성에 관한 사항
- 9. 중소기업육성, 산업단지 조성 및 기업유치, 경제자유구역 외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 10. 마을공동체 육성 및 마을기업·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사항
- 11. 에너지정책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12. 기초생활보장 지원 및 주민복지 종합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 13. 장애인복지 및 자활 업무에 관한 사항
- 14. 노인복지 대책수립 및 장묘문화에 관한 사항
- 15. 여성복지 행정에 관한 사항
- 16. 복지급여대상자 통합조사관리 및 의료급여 자격관리에 관한 사항
- 17. 주민생활지원서비스 및 희망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
- 18. 지방세 부과에 관한 사항
- 19. 공사 및 물품계약, 경리관계에 관한 사항
- 20. 세입 및 체납관리에 관한 사항
- 21.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 관리, 재산세 부과에 관한 사항
- 22. 국·공유재산 및 재물관리에 관한 사항
- 23.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24. 문화재 보호 및 가야사 복원에 관한 사항
- 25.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
- 26. 문화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27. 민원행정 및 주민등록에 관한 사항
- 28. 지적관리 기획·조정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29. 지적재조사 기획·조정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30. 공간정보,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
- 31. 민원기동대 운영에 관한 사항
- 32. 환경보전업무 종합계획 수립, 기후변화에 관한 사항
- 33. 대기, 폐수, 소음·진동,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 및 환경오염 단속에 관한 사항
- 34. 폐기물처리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35. 탄소 없는 마을 육성, 자연생태 보전에 관한 사항
- 36.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관광산업국) ① 관광산업국에 관광진흥과, 도시건축과, 해양수산과, 안전총괄과, 산림녹지과, 건설교통과, 산단조성과, 수도사업과를 둔다.

② 관광산업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 1. 관광종합개발계획, 신규관광자원 개발에 관한 사항
- 2. 관광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 3. 관광시설 운영 및 관리, 관광시설 마케팅에 관한 사항
- 4. 슬로시티 및 관광마케팅에 관한 사항
- 5. 축제지원에 관한 사항
- 6. 도시 종합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7.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
- 8. 도시재생, 지역·경관 디자인에 관한 사항
- 9. 건축인허가(민원)에 관한 사항
- 10. 건축행정에 관한 사항

- 11. 복합민원에 관한 사항
- 12. 해양개발, 수산진흥, 해양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13. 수산사업 및 수산물 관리에 관한 사항
- 14. 내수면 어업, 내수면 관리에 관한 사항
- 15. 섬진강 관련 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16. 안전 및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
- 17. 민방위비상대책에 관한 사항
- 18. 복구지원 및 방재에 관한 사항
- 19.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20. 산림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
- 21. 산림보호, 공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22. 산림토목에 관한 사항
- 23.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사항
- 24. 가로수 식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25. 건설종합계획, 주민숙원사업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 26. 농업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 27. 토목공사 및 각종 도로 관리에 관한 사항
- 28. 농산어촌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 공모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29. 교통행정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30. 경제자유구역개발 내 투자유치 및 연구단지 조성·관리에 관한 사항
- 31.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관한 사항
- 32. 경제자유구역 내 신도시 조성 및 산업단지 보상에 관한 사항
- 33. 경제자유구역 소송지원에 관한 사항
- 34. 상하수도 운영 총괄, 시설관리 및 인력운영에 관한 사항
- 35. 상수도 사업추진 및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 36. 하수도 사업추진 및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 제3장 직속기관

#### 제1절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제7조(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3조와 「지역보건법」 제7조·제8조·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8조에 따라 군에 보건소를, 면에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8조(소장 등) 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을 둔다.

② 보건소장은 군수의,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9조(소관사무) 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의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② 보건진료소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의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 제2절 농업기술센터

- 제10조(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농촌지도사업·농민교육훈련사업 등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군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의 위치는 하동군 적량면 한옥정길 91에 둔다.

제11조(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2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농업정책 및 농지관리에 관한 사항
2. 농업지원에 관한 사항
3. 축산행정 및 시설물, 기술지도에 관한 사항
4. 가축방역 및 축산환경에 관한 사항
5. 농업기계화 촉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농·특산물의 수출지원에 관한 사항
7. 농·특산물의 유통·마케팅에 관한 사항
8. 농식품산업 육성 및 가공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9. 농업의 6차산업에 관한 사항
10. 농특산물 포장 디자인에 관한 사항
11. 농업 인력육성에 관한 사항
12. 농촌관광 및 북천 꽃 축제에 관한 사항
13. 농촌자원 개발 및 식품개발에 관한 사항
14. 귀농귀촌 및 신규농업인 육성에 관한 사항
15. 드론 관리 및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16. 농업의 신소득작물 개발과 스마트농업 총괄에 관한 사항
17. 식량작물 육성에 관한 사항
18. 원예·과수산업 육성 및 기술보급에 관한 사항
19. 녹차산업 육성 및 유통지원, 특용작물 산업육성 및 기술보급에 관한 사항
20. 농업유산 관리 및 소득화·관광자원화에 관한 사항

### 제4장 읍·면

- 제13조(설치) ① 법 제3조제3항·제4항 및 제4조의2에 따라 읍·면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읍·면의 사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이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4조(직무) 읍·면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리·반 조직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제15조(읍·면장) 읍·면에는 읍·면장을 두며, 읍·면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6조(하부행정기구) 읍·면에 읍·면장을 보좌하고 소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하부행정기구인 부읍장·부면장을 둔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 ① 「하동군 군민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 ② 「하동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주무실과장”을 “주무국·과장”으로 한다.  
제2조제3항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
- ③ 「하동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실과장급”을 “국장·담당관 및 과장급”으로 한다.
- ④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1호 중 “기획조정실장 등 관련 실과소장”을 “기획예산담당관 등 관련 국·과·소장”으로 한다.
- ⑤ 「하동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
- ⑥ 「하동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
- ⑦ 「하동군 군지편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문화관광실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 ⑧ 「하동군 관소리 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실장”을 “과장”으로 한다.
- ⑨ 「하동군 지역 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 ⑩ 「하동군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
- ⑪ 「하동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경제수산과장”을 “경제전략과장”으로 한다.
- ⑫ 「하동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⑬ 「하동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경제수산과장”을 “경제전략과장”으로 한다.

⑭ 「하동군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

⑮ 「하동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경제수산과장”을 “경제전략과장”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실과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장”으로 한다.

⑯ 「하동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제1호 중 “경제수산과장”을 “경제전략과장”으로 한다.

⑰ 「하동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⑱ 「하동군 어항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1호 중 “경제수산과장”을 “해양수산과장”으로 한다.

⑲ 「하동군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담당실·과장”을 “담당과장”으로 한다.

⑳ 「하동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제1호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㉑ 「하동군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실과소장”을 “국·과·소장”으로 한다.

㉒ 「하동군 군민장·군청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㉓ 「하동군 사무위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녹색환경과”를 “환경보호과”로 한다.

㉔ 「하동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5호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

㉕ 「하동군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실과”를 “국·담당관·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실과소”를 “국·담당관·과·소”로 한다.

㉖ 「하동군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실과소”를 “국·담당관·과·소”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실과소장”을 각각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실과”를 “국·담당관·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실과”를 “국·담당관·과”로 한다.

- ②⑦ 「하동군 평생학습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
- ②⑧ 「하동군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관련실과장”을 “관련 국장·담당관 및 과장”으로 한다.
- ②⑨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별표 3 중 “문화관광실”을 각각 “문화체육과”로 한다.
- ③⑩ 「하동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제1호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제2호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  
별표 3 중 “기획조정실”을 각각 “기획예산담당관”으로, “경제수산과”를 각각 “경제전략과”로 한다.  
별표 5 중 “기획조정실”을 각각 “기획예산담당관”으로, “경제수산과”를 각각 “경제전략과”로 한다.  
별표 6 중 “경제수산과”를 “경제전략과”로, “기획조정실”을 각각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 ③⑪ 「하동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2호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
- ③⑫ 「하동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
- ③⑬ 「하동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
- ③⑭ 「하동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실과”를 “국·담당관·과”로 한다.
- ③⑮ 「하동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실·과·사업소”를 “국·담당관·과·소”로 한다.
- ③⑯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재무과장”을 “재정관리과장”으로 한다.  
별표 중 “실·과장실”을 “국장·담당관·과장실”로 한다.
- ③⑰ 「하동군 물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실과소단”을 “국·담당관·과·소”로 한다.
- ③⑱ 「하동군 군립공원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문화관광실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 ③⑲ 「하동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실과장·직속기관장·사업소장”을 “국장·담당관·과장·소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공사주관실과장·직속기관장·사업소장”을 “공사를 주관한 국장·담

당관·과장·소장”으로 한다.

④⑩ 「하동군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문화관광실장”을 “관광진흥과장”으로 한다.

④⑪ 「하동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④⑫ 「하동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실·과장”을 “국·과장”으로 한다.

④⑬ 「하동군 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3항 중 “실과장”을 “국·과장”으로 한다.

④⑭ 「하동군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실·과·단·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

④⑮ 「하동군 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

④⑯ 「하동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 중 “농축산과장, 농촌진흥과장, 농업소득과장”을 “농축산과장, 농산물 유통과장, 농촌진흥과장, 농업소득과장”으로 한다.

④⑰ 「하동군 농특산물 명인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국제통상과장, 경제수산과장”을 “농산물유통과장, 경제전략과장”으로 한다.

④⑱ 「하동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농축산과장, 농촌진흥과장, 농업소득과장”을 “농축산과장, 농산물 유통과장, 농촌진흥과장, 농업소득과장”으로 한다.

④⑲ 「하동군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4항 중 “체육시설사업소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⑤⑰ 「하동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체육시설사업소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소장”을 “과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체육시설사업소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체육시설사업소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⑤⑱ 「하동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상하수도사업소장”을 “수도사업과장”으로 한다.



[별표 1]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7조제3항 관련)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하동군보건소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31	하동군 일원
화개보건지소	하동군 화개면 쌍계로 28	화개면 일원
악양보건지소	하동군 악양면 악양서로 399	악양면 일원
적량보건지소	하동군 적량면 적량로 88	적량면 일원
황천보건지소	하동군 황천면 황천강변길 35-3	황천면 일원
고전보건지소	하동군 고전면 하동읍성로 367	고전면 일원
금남보건지소	하동군 금남면 미법마을길 14	금남면 일원
금성보건지소	하동군 금성면 금성중앙길 14	금성면 일원
진교보건지소	하동군 진교면 강변길 13-1	진교면 일원
양보보건지소	하동군 양보면 진양로 743	양보면 일원
북천보건지소	하동군 북천면 경서대로 2455	북천면 일원
청암보건지소	하동군 청암면 청학로 667	청암면 일원
옥종보건지소	하동군 옥종면 덕천로 9	옥종면 일원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범왕보건 진 료 소	하동군 화개면 범왕길 8	범왕리 : 신흥, 범왕 대성리 : 단천, 의신 용강리 : 모암
부덕보건 진 료 소	하동군 화개면 섬진강대로 3748-11	부춘리 : 신기, 부춘, 검두 덕은리 : 영당, 상덕, 중기
동매보건 진 료 소	하동군 악양면 악양서로 656	중대리 : 상중대, 하중대 동매리 : 동매, 평촌 매계리 : 매계, 노전 등촌리 : 덕기, 중기
삼화보건 진 료 소	하동군 적량면 칠성로 415	동 리 : 명천, 이정, 동촌 서 리 : 하서, 중서, 도장골, 동점
우계보건 진 료 소	하동군 적량면 원우길 59-19	우계리 : 공월, 원우, 상우, 서당, 괴목, 신촌
남산보건 진 료 소	하동군 횡천면 원곡길 102-5	남산리 : 원곡, 상남, 하남 학 리 : 개인, 마치, 구학
전대보건 진 료 소	하동군 횡천면 전대1길 129-1	전대리 : 전대, 죽전 애치리 : 애치, 온동
성천보건 진 료 소	하동군 고전면 지소1길 22	성천리 : 상성, 지소, 남성 범아리 : 울촌, 아정
고하보건 진 료 소	하동군 고전면 하동읍성로 579	고하리 : 흥평, 주성, 고하, 죽전 명교리 : 명교, 일기 성평리 : 신덕, 성평
중평보건 진 료 소	하동군 금남면 상촌마을길 23	중평리 : 중평, 상촌 대치리 : 대치
덕천보건 진 료 소	하동군 금남면 대왕골길 6	덕천리 : 상삼천, 하삼천, 덕포 대송리 : 대송, 사동, 환치 계천리 : 사궁, 영천, 계항 진정리 : 진정, 조금, 금오
갑정보건 진 료 소	하동군 진교면 갑정길 7	월운리 : 월운, 갑정 관곡리 : 성평, 반석
우북보건 진 료 소	하동군 양보면 서촌섬백이길 16	우북리 : 괴파, 하성, 서촌, 동촌 통정리 : 서제 감당리 : 상쌍, 신진, 영계
방화보건 진 료 소	하동군 북천면 경서대로 2015-1	방화리 : 방화, 금촌, 가평 사평리 : 사평, 모성
화정보건 진 료 소	하동군 북천면 화정길 45	화정리 : 화정, 상촌 서황리 : 중촌, 기봉
목계보건 진 료 소	하동군 청암면 청학로 2196	목계리 : 목계, 학동, 원목, 장고, 청학
위태보건 진 료 소	하동군 옥종면 돌고지로 1096	궁항리 : 궁항, 오울 위태리 : 갈성, 위태 회신리 : 회신, 양지 월횡리 : 월횡, 고암
북방보건 진 료 소	하동군 옥종면 신촌마을길 22-1	북방리 : 북방, 신촌, 불무 대곡리 : 추동, 한계

하동군 공고 제2018 - 호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처리규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4일

하 동 군 수

**1. 자치법규명 :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2.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국 설치 및 과 증설 등에 따라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 담당신설에 따른 인력 증원 : 지역공동체, 공간정보, 탄소제로, 관광기획, 관광마케팅, 도시재생, 내수면개발, 법률지원, 관리운영, 치매안심, 농산물가공, 디자인지원, 드론활용, 농업유산담당

**3. 주요내용**

가. 군의 정원 총수를 683명(증 26명)으로 조정(안 제2조)

- 집행기관의 정원 : 644명→670명(증 26명)

나. 정원관리 기관별의 직급별 정원 조정(안 제4조의 별표 3)

- 총계 657명→683명(증 26명)

- 일반직 계 626명→652명(증 26명)

- 6급 이하 588명→611명(증 23명)

**4. 의견 제출 : 이 자치 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년 7월 14일까지 하동군(참조 : 행정과, 전화 055-880-2153, FAX055-880-2159, e-mail:hae444@korea.kr)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하동군 조례 제 호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을 “정원”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군”을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정원의 총수는 657명”을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683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644명”을 “670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하동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u>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u>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u>정원</u> ----- ----- -----.
제2조(정원의 총수) <u>군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657명</u> 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u>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u> ----- <u>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683명</u> -----.
1. 집행기관의 정원 : <u>644명</u>	1. ----- <u>670명</u>

2. ( 생 략 )

[별표 3]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직급별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총계		657	-							
정무직계		1	-							
군수		1	1							
일반직계		626	-							
4급		1	1							
4급~5급		3	2		1					
5급		34	12	2	1	4	2	1	12	
6급 이하계		588	-							
별정직계		3	-							
5급 상당		1		1						
6급 상당		2	-							
연구직계		2	-							
연구관		-								
연구사		2	-							
지도직계		25	-							
지도관		-								
지도사		25	-							

2. ( 현행과 같음 )

[별표 3]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직급별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총계		683	-							
정무직계		1	-							
군수		1	1							
일반직계		652	-							
4급		3	3							
4급~5급		1			1					
5급		37	16	2	1	5	0	1	12	
6급 이하계		611	-							
별정직계		3	-							
5급 상당		1		1						
6급 상당		2	-							
연구직계		2	-							
연구관		-								
연구사		2	-							
지도직계		25	-							
지도관		-								
지도사		25	-							

【별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견	비고

하동군 공고 제2018 - 757호

하동군 공공기관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제정 안  
입법예고

하동군 공공기관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처리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6일

하 동 군 수

1. 자치법규명 : 하동군 공공기관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2. 제정이유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의 개정(2017.10.17.)에 따라 하동군 공공기관의 정책연구용역 결과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연구결과의 책임성과 신뢰성 및 활용도를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 나. 정책연구용역의 적용범위에 대해 규정함.(안 제3조)
- 다. 정책연구용역 종료 후 결과물을 공개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의견제출

- 가. 제출기일 : 2018년 7월 26일까지
-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 등
-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연락전화번호·의견
- 라. 제출기관 : 하동군수 (기획조정실)
  - 주 소 : 경남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 전 화 : 기획조정실 정책기획담당(055-880-2013)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하동군 공공기관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하동군 조례 제 호

하동군 공공기관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 공공기관이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한 경우 그 결과물을 공개하도록 하여 연구결과의 책임성과 신뢰성 및 활용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연구용역”이란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과제를 선정하고, 전문기관과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정책 연구를 추진하는 용역을 말한다.
2.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란 정책연구용역의 추진과정을 관리하고 정책연구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행정안전부의 정책연구관리시스템(www.prism.go.kr)을 말한다.
3. “정책연구결과물”이란 정책연구용역에 의해 생산된 연구보고서 등의 결과물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모든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되는 정책연구
2.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조사·연구
3. 기술·전산·임상연구,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등의 용역
4. 천재지변 복구, 법정 감염병 방제 등 긴급한 정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제4조(공개)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공공기관의 부서장은 해당 용역이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최종 결과물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5조(연구결과의 활용) 군수는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그 정책연구결과를 평가하고, 정책 개발과 사업 추진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하동군 조례 제 호

## 하동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담금”을 “그 비용”으로 한다.

제23조 제목 “(부담금의 강제징수)”를 “(비용의 징수)”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비용의 징수) 관리청은 제22조에 따라 비용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비용부담) ① ~ ③ (생 략)	제22조(비용부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가로수는 가급적 인근의 같은 나무 종류의 노선으로 이식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하며 제21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④ ----- ----- ----- ----- -----

우에는 가로수를 제거하고 부담금을 징수한다.

1. ~ 5. (생 략)

⑤ (생 략)

제23조(부담금의 강제징수) ① 관리청은 제22조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그 비용-----.

1. ~ 5.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제23조(비용의 징수) 관리청은 제22조에 따라 비용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하동군 공고 제2018-775호

## 하동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하동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제 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1일

### 하 동 군 수

#### 1. 자치 법규명: 하동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 2. 개정이유

현행 법령과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의 보완과 사업의 지원 분야를 세분화하여 원활한 업무 추진

#### 3. 주요내용

- 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사항으로 수정(제2조)
- 나. 지원범위 수정(제7조)
- 다. 농어업 소득 보전 등을 위한 용어의 수정(제8조)
- 라.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용어의 수정과 분야의 세분화로 내용 추가(제9조 ②항)
- 마. 농어촌 지역개발 및 복지증진을 위한 분야의 세분화로 내용 추가(제11조③항)
- 바. 농어업 인력 육성 및 창업 촉진을 위한 분야의 세분화로 내용 추가(제12조④항, ⑤항)
- 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사업 결정 관련 내용으로 수정(제14조)
- 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책심의회 설치 관련 내용으로 수정(제17조①항, ③항)

#### 4. 의견 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2018년 7월 30일까지 하동군(농축산과, 전화 055-880-2412, FAX 880-2419, 이메일 junggweon@korea.kr)으로 【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붙임: 하동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별지】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하동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견	비고

하동군 조례 제 호

하동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군”을 “하동군”으로 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하고, “수산업”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를 말하고, “어업인”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 3. “농촌”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하고, “어촌”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군수”를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한다.

제4조 중 “군내”를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내”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어업인으로서”를 “농어업인, 영농(어)조합(회사)법인, 생산자 단체, 농(어)업인 단체로서”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그 밖에 군수가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농어업인(농업경영체, 어업경영체) 및 생산자 단체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어자재비 등 지원

제8조제3호의 “축산기반”을 “농어업기반”으로, “친환경축산사업”을 “친환경 농어업사업”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2호 중 “채소·과실·화훼·특용작물”을 “농작(수산)물”로, “육묘 및 수산종묘사업”을 “육묘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8. 마을 앞바다 목장화 및 수산종묘 방류 등 수산자원 조성사업

제9조제2항제11호를 제3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부터 제3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1. 법률 등의 제·개정으로 농어업시설물의 적법화(양성화)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지원
- 12. 농어업 경영체 컨설팅 지원사업 등 역량강화 지원사업
- 13. 농어업인 단체 및 농촌생활자원 육성 지원사업
- 14. 가축개량 및 종축생산 장려 지원사업
- 15. 농수산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사업

- 16. 축산물 가격하락 및 사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사업
- 17. 브랜드 농수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생산 장려 및 소비촉진 홍보사업
- 18. 가축전염병의 사전예방을 위한 시책 지원사업
- 19. 안전 농수산물의 생산을 위한 컨설팅 및 유통·가공시설 지원사업
- 20. 농산물 가격하락에 따른 가격보전 지원사업
- 21. 가축분뇨처리사업 및 동물복지형 안전 축산물 생산 지원사업
- 22. 소비자단체 등에 농수산물 홍보 및 교육 등을 위한 사업
- 23. 농어업 육성을 위한 농수산 기자재 및 시설물 설치 지원사업
- 24. 지구 온난화 대비에 따른 새로운 작목 육성 지원사업
- 25. 농수산 물류비 및 수출실적 보상금 지원사업
- 26. 농수산물 병해충 예찰 및 방제지원에 관한 사업
- 27. 친환경 과학 영농(어업) 안전 농수산물 생산, 관리를 위한 검정 분석업무 지원사업
- 28. 고품질 쌀 브랜드 경영체 지원사업
- 29. 미곡 종합처리장 건조, 저장, 가공시설 지원사업
- 30. 공공비축미곡 안전보관 및 수매 기반 구축 지원사업
- 31. 농수산물 브랜드 육성 지원사업
- 32. 식물방제, 가축 방역에 필요한 자재 비용 등의 지원사업
- 33. 농어업 기반 및 활성화를 위한 이자(융자) 지원사업
- 34. 자율관리 어업 공동체 육성사업
- 35. 수산자원 보전 및 해양환경보호에 관한 사업
- 36. 농어업 기술습득, 농수산 가공품 개발 등을 위하여 선진지 벤치마킹

등의 소요 경비

제11조제3항제7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7. 농어촌 마을 관광 활성화 지원사업
- 8. 농어촌의 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 9. 농어촌의 다원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경관보전 사업
- 10. 농어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주민복지 확충사업

제12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군수는 농어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농어업인의 날 등 기념행사(대회) 대행과 유공자에 대한 포상을 할 수 있으며, 소요 경비는 군 직접 또는 기념행사(대회)를 대행하는 단체에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군수는 농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포상과 선진지 견학 등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전단 중 “하동군 어업·어촌정책심의회”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설치된 하동군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정책심의위원회와 하동군 어업·어촌정책심의회”를 “정책심의위원회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라 하동군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6조를 준용 한다”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를 준용 한다”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교역의 확대와 농수산물 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슬기롭게 대응하기 위하여 농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어가의 소득을 보전하며, 농어촌의 지역개발 및 복지증진을 구현함에 있어 관련 법령과 국제규범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u>군</u>이 자체 지원하는 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 ----- ----- 하 동군----- -----.</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농어업”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p>	<p>제2조(정의) ----- -----.</p> <p>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p>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어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와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생산자 단체, 농업인단체, 영어조합법인, 어촌계, 수산업회사법인, 어업인단체를 말한다.

3. “농어촌”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4. ~ 6. (생략)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농어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4조(농어업인의 책무) 군내 농어업인은 농어업·농어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이 좋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경영혁신 등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 범위) 이 조례에 따른 지원범위는 군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농어업인으로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을 위한 시책으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2. (생략)

<신설>

제8조(농어업인 소득보전 등) 군수는 세계무역기구의 협정 발효 또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의 안정된 소득을 보장하고 생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각 협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특별 지원할 수 있다.

1. 쌀 생산 농어업인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자재비 등 지원

2. (생략)

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하고, “수산업”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를 말하고, “어업인”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3. “농촌”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하고, “어촌”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4. ~ 6. (현행과 같음)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4조(농어업인의 책무)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내 -----

제7조(지원 범위) ----- 농어업인, 영농(어)조합(회사)법인, 생산자 단체, 농(어)업인 단체로서-----

1.·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군수가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농어업인 소득보전 등) -----

1. 농어업인(농업경영체, 어업경영체) 및 생산자 단체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어자재비 등 지원

2. (현행과 같음)

3. 쾌적한 농어촌 경관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축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친환경축산사업의 지원

4. ~ 8. (생 략)

제9조(농어업 경쟁력 강화) ① (생 략)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농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특별 지원할 수 있다.

1. (생 략)

2. 수출 경쟁력이 있는 채소·과실·화훼·특용작물 등의 우량종자, 육묘 및 수산종묘사업

3. ~ 7. (생 략)

8. 수산종묘 방류 등 수산자원 조성사업

9. · 10.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3. -----  
농어업기반----- 친환경  
농어업사업--

4. ~ 8. (현행과 같음)

제9조(농어업 경쟁력 강화)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현행과 같음)

2. ----- 농작(수산)물  
----- 육묘사업

3. ~ 7. (현행과 같음)

8. 마을 앞바다 목장화 및 수산종묘 방류  
등 수산자원 조성사업

9. · 10. (현행과 같음)

11. 법률 등의 제·개정으로 농어업시설물  
의 적법화(양성화)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  
부지원

12. 농어업 경영체 컨설팅 지원사업 등 역  
량강화 지원사업

13. 농어업인 단체 및 농촌생활자원 육성  
지원사업

14. 가축개량 및 종축생산 장려 지원사업

15. 농수산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사업

16. 축산물 가격하락 및 사료비 부담 완화  
를 위한 지원사업

17. 브랜드 농수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생산 장려 및 소비촉진 홍보사업

18. 가축전염병의 사전예방을 위한 시책 지  
원사업

19. 안전 농수산물의 생산을 위한 컨설팅  
및 유통·가공시설 지원사업

20. 농산물 가격하락에 따른 가격보전 지원  
사업

21. 가축분뇨처리사업 및 동물복지형 안전  
축산물 생산 지원사업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11. (생 략)

제11조(농어촌 지역개발 및 복지증진) ①·② (생 략)

③ 군수는 농어촌 지역개발과 농어업인 복지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중 점 투자하거나 특별 지원할 수 있다.

1. ~ 6. (생 략)

<신 설>

<신 설>

22. 소비자단체 등에 농수산물 홍보 및 교 육 등을 위한 사업

23. 농어업 육성을 위한 농수산 기자재 및 시설물 설치 지원사업

24. 지구 온난화 대비에 따른 새로운 작목 육 성 지원사업

25. 농수산 물류비 및 수출실적 보상금 지 원사업

26. 농수산물 병해충 예찰 및 방제지원에 관한 사업

27. 친환경 과학 영농(어업) 안전 농수산물 생산, 관리를 위한 검정 분석업무 지원사 업

28. 고품질 쌀 브랜드 경영체 지원사업

29. 미곡 종합처리장 건조, 저장, 가공시설 지원사업

30. 공공비축미곡 안전보관 및 수매 기반 구축 지원사업

31. 농수산물 브랜드 육성 지원사업

32. 식물방제, 가축 방역에 필요한 자재 비 용 등의 지원사업

33. 농어업 기반 및 활성화를 위한 이자(용 자) 지원사업

34. 자율관리 어업 공동체 육성사업

35. 수산자원 보전 및 해양환경보호에 관한 사업

36. 농어업 기술습득, 농수산 가공품 개발 등을 위하여 선진지 벤치마킹 등의 소요 경비

37. (현행 제11호와 같음)

제11조(농어촌 지역개발 및 복지증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1. ~ 6. (현행과 같음)

7. 농어촌 마을 관광 활성화 지원사업

8. 농어촌의 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한 지원

<신 설>

<신 설>

7. (생 략)

제12조(농어업인력 육성 및 창업촉진) ① ~ ③ (생 략)

<신 설>

<신 설>

제14조(지원사업 결정) 농어업인이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는 법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하동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하동군 어업·어촌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다만 재해로 인한 복구 등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원사업을 결정할 수 있다.

제17조(정책심의회 설치) ① 법 제15조에 따라 하동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위원회와 하동군 어업·어촌정책심의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생 략)

③ 정책심의회 기능, 구성 등은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6조를 준용한다.

사업

9. 농어촌의 다원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경관보전 사업

10. 농어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주민복지 확충사업

11. (현행 제7호와 같음)

제12조(농어업인력 육성 및 창업촉진)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군수는 농어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농어업인의 날 기념행사(대회) 대행과 유공자에 대한 포상을 할 수 있으며, 소요 경비는 군 직접 또는 기념행사(대회)를 대행하는 단체에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군수는 농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포상과 선진지 견학 등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지원사업 결정) -----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설치된 하동군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

제17조(정책심의회 설치) ① 법 제15조에 따라 하동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위원회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라 하동군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

② (현행과 같음)

③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를 준용한다.

하동군 공고 제2018-779호

## 하동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하동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1일

###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 이유
  - 가. 위탁관리인의 우수화장실 견학 조항을 신설하여 쾌적한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함
  - 나. 상위법령의 개정 취지에 맞게 개방화장실 지정 규제를 완화하여 주민의 위생상 편의 증진
3. 주요 내용
  - 가. 위탁관리인의 우수화장실 견학 관련조항 신설(안 제7조)
  - 나. 개방화장실의 지정에 관한 단서 신설(안 제12조)
4. 의견 제출 : 이 자치 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18년 7월 21일까지 하동군(참조 : 환경보호과, 전화 880-2586, FAX 880-2569, e-mail ji2289@korea.kr)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붙임 1. 하동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신구조문대비표, 관련법령 등

【별지】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견	비고

하동군 조례 제 호

**하동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군수는 쾌적한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해 공중화장실을 위탁관리하는 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우수화장실 견학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② (생략) <u>&lt;신 설&gt;</u></p> <p>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군수는 법 제9조에 따른 화장실 중 여럿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해서 개방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u>&lt;단서 신설&gt;</u></p> <p>② (생략)</p>	<p>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② (현행과 같음)</p> <p><u>③ 군수는 쾌적한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해 공중화장실을 위탁관리하는 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우수화장실 견학 등을 실시할 수 있다.</u></p> <p>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 ----- ----- ----- ----- -----</p> <p><u>다만, 해당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u></p> <p>② (현행과 같음)</p>

## 관련 법령

###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개방화장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와 협의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개방화장실의 지정 등) ①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이란 법인 또는 개인소유 시설물로서 제3조 제2항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모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하여 3년마다 1회 이상 공중화장실의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중화장실의 위생적 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하동군 공고 제 2018 - 804 호

하동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하동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8일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2. 개정 이유

- 「의료급여법」 일부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는 용어 개정
- 「지방재정법」에 의거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

3. 주요 내용

- 「의료급여법」 일부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안 제6조, 제7조)  
: 대신 지급금, 대불금 ⇒ 대지급금
-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기존 제8조를 제9조로, 안 제8조(존속기한) 신설)

4. 의견 제출

이 자치 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2018년 8월 10일 까지 하동군(주민행복과 ☎880-2663, FAX 880-2349, e-mail : ktoie@korea.kr)에 **【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 붙임 1. 하동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별표, 별지서식 포함)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별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건	비고

하동군 조례 제 호

하동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대신 지급금”을 각각 “대지급금”으로 한다.

제7조 제목 “(대신 지급금의 상환 등)”을 “(대지급금의 상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 1항 중 “대신 지급금”을 각각 “대지급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대신 지급금”을 각각 “대지급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대신 지급금”을 “대지급금”으로 한다.

제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신 지급금”을 “대지급금”으로 한다.

제8조를 제9조로 하고,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지출) ① 기금출납명령관은 급여대상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 부담액과 <u>대신 지급금</u>을 구분 결정한 후 의료급여 대상자 카드에 각각 구분 기재하고 <u>대신 지급금 상환</u>의무자에게는 제5조의 제2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공무원에게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 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제6조(지출) ① ----- ----- ----- ----- <u>대지급금</u> ----- ----- ----- <u>대지급금</u> ----- -----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7조(<u>대신 지급금의 상환 등</u>) ① 기금출납명령관은 <u>대신 지급금</u>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u>대신 지급금</u> 지출원인행위를 한 날부터 3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을 최초의 납입기일로 하여 3월마다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u>대신 지급금</u>은 무이자로 한다.</p>	<p>제7조(<u>대지급금의 상환 등</u>) ① ----- ----- <u>대지급금</u> ----- ----- <u>대지급금</u> ----- ----- ----- ----- ----- ----- <u>대지급금</u> -----</p>

1. ~ 3. (생 략)

② 대신 지급금의 상환의무자가 대신 지급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군수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개월 내에 6월 이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른 의료급여의 정지를 받은 후 6월이 지나도록 대신 지급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7조의2(결손처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하동군 의료급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받지 못할 대신 지급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1. ~ 5. (생 략)

<신 설>

제8조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② 대지급금----- 대지급금-----  
-----  
-----  
-----  
-----.

③ -----  
----- 대지급금-----  
-----  
-----.

제7조의2(결손처분) -----  
-----  
-----  
----- 대지급금-----  
-----.

1. ~ 5. (현행과 같음)

제8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 (현행 제8조와 같음)

하동군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하동군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8일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규칙

2. 폐지 이유

-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의료급여법」 제6조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7조부터 제11조 규정까지 상위법에서 명시하고 있어, 동일한 내용의 하동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하동군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규칙을 폐지함.

4. 의견 제출

이 자치 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2018년 8월 10일까지 하동군(주민행복과 ☎055-880-2663, FAX 055-880-2349, e-mail ktoie@korea.kr)에 【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붙임 하동군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규칙 폐지규칙안 1부. 끝.

【별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건	비고



하동군 규칙 제 호

하동군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규칙 폐지규칙안

하동군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규칙을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 공고 제 2018 - 813호

## 하동군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하동군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3일

###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2. 개정 이유

- 상위법령에서 정한 특별회계의 사용 용도를 조례에서 반영하지 않아 특별회계의 사용 용도가 제한되는 사항이 있어, 이를 명확히 반영하고자 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6조의 4」에 근거하여 재정비 필요

3. 주요 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 자활기금 특별회계의 사용 용도 규정(안 제4조)  
: 상위법령 근거조항 추가 및 기존 중복조항 삭제

4. 의견 제출

이 자치 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2018년 8월 13일까지 하동군(주민행복과 ☎880-2213, FAX 880-2349, e-mail : shiver5@korea.kr)에 **【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 붙임 1. 하동군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별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건	비고

하동군 조례 제 호

하동군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으로 한다.

제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4에서 정한 기금의 용도
2.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의 자활을 위한 사업운영에 필요한 전세 점포 자금 대여
3. 자활사업 참여자 및 종사자의 교육지원
4.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의 창업 및 운영을 위한 컨설팅 지원

제4조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호를 제6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하동군 자활기금 운영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 ----- -----.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이나 용도에 사용한다.  1.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차액보전  2.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제4조(세출) ----- -----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이하 “ <u>영</u> ”이라 한다) 제26조의4에서 정한 기금의 용도  2.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의 자활을 위한 사업운영에 필요한 전세 점포 자금 대여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 37조에 따라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4.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은 채무나 수급자가 대여받은 생업자금 채무의 신용보증에 드는 비용

5. (생략)

6.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 지원

7. 그 밖에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

8. (생략)

3. 자활사업 참여자 및 종사자의 교육지원

4.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의 창업 및 운영을 위한 컨설팅 지원

5.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6. (현행 제8호와 같음)

관련 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4(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자활기업이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補填)
2.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3. 법 제1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산형성지원
4.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
5. 법 제18조의2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6. 제37조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
7.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
  - 가. 자활기업이 금융회사등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는 채무
  - 나. 수급자가 대여받는 생업자금 채무
8.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에 필요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9. 자활사업 연구·개발·평가 등을 위한 비용
10. 수급자 및 차상위자(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 한정한다)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또는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

하동군 공고 제 2018 - 814 호

## 하동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하동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3일

###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2. 개정 이유
  -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시 같은 조례 시행규칙의 미개정으로 조례와 일치되지 않는 조항이 있어 일부 개정 작업이 필요함
3. 주요 내용
  - 제명을 「하동군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으로 변경
  - 조례 제4조제6호의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같은 조례 규칙의 해당 내용을 삭제 : 제10조(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 관련
  - 규칙 내 조례 제명을 「하동군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로 변경(별지 제1호서식 및 제3호로부터 제6호서식)

#### 4. 의견 제출

이 자치 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2018년 8월 13일까지 하동군(주민행복과 ☎880-2213, FAX 880-2349, e-mail : shiver5@korea.kr)에 **【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 붙임 1. 하동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별지】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견	비고



하동군 규칙 제 호

하동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하동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하동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하동군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하동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하동군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제2조 중 “「하동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하동군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제10조 중 “제4조제5호 및 제6호”를 “제4조제5호”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하동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u></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u>하동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u>」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기금의 지원원칙) 기금은 「<u>하동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u>」(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 각 호의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나 일부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의 성격·규모·자체부담능력 등을 감안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p> <p>제10조(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 군수는 조례 <u>제4조제5호</u> 및 <u>제6호</u>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복지증진사업에 전년도 기금운영수익금 내에서 현물이나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p>	<p><u>하동군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u></p> <p>제1조(목적) ----- 「<u>하동군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u>」----- -----.</p> <p>제2조(기금의 지원원칙) ----- 「<u>하동군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u>」----- ----- ----- -----.</p> <p>제10조(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 ----- <u>제4조제5호</u>----- ----- ----- -----.</p>

## 관련 법령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4(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자활기업이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補填)
2.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3. 법 제1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산형성지원
4.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
5. 법 제18조의2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6. 제37조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
7.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
  - 가. 자활기업이 금융회사등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는 채무
  - 나. 수급자가 대여받는 생업자금 채무
8.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에 필요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9. 자활사업 연구·개발·평가 등을 위한 비용
10. 수급자 및 차상위자(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 한정한다)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또는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

하동군 공고 제2018 - 호

#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처리규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6일

하 동 군 수

## 1. 자치법규명 :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 2. 개정이유

-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행정 지원과 실행 중심의 국 설치
- 미래 성장동력 발굴 및 농업기술센터 역량강화를 위한 조직 강화
- 1차산업 분야에 대한 지원조직 확대

## 3. 주요내용

- 행정기구 개편
  - 현행 : 2실 12과 2직속기관(1소 3과) 2사업소 1의회 13읍면 [21실과소/ 147담당]
  - 개편 : 2국 1담당관 15과 2직속기관(1소 4과) 1의회 13읍면 [22담당관과소/ 156담당]
- 국 설치에 따른 권한 집중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좌기관으로 담당관 별도 설치
  - (기획조정실 → 기획예산담당관)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으로 국(局) 설치기준이 마련되어, 2국을 설치함
  - 행정지원국 : 행정과, 경제전략과, 주민행복과, 재정관리과, 문화체육과, 민원과, 환경보호과
  - 관광산업국 : 관광진흥과, 도시건축과, 해양수산과, 안전총괄과, 산림녹지과, 건설교통과, 산단조성과, 수도사업과
- 과 및 담당 신설
  - 신설 과 : 경제전략과, 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 해양수산과, 농산물유통과, 수도사업과
  - 신설 담당 : 지역공동체, 공간정보, 탄소제로, 관광기획, 관광마케팅, 도시재생, 내수면개발, 법률지원, 관리운영, 치매안심,

농산물가공, 디자인, 드론활용, 농업유산

4. 의견 제출 : 이 자치 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년 8월 5일까지 하동군(참조 : 행정과, 전화 055-880-2153, FAX055-880-2159, e-mail:hae444@korea.kr)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성 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하동군 조례 제 호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라 군 본청의 국장, 담당관, 과장의 직급, 소속기관의 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① 국장 및 담당관은 부군수를 보조 및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과장은 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보조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장 본청

제3조(국장·담당관·과장 등의 직급) 본청의 국장, 담당관, 과장은 다음과 같이 보한다.

1. 행정지원국 : 행정지원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경제전략과장은 지방행

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주민행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재정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문화체육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민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환경보호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보한다.

2. 관광산업국 : 관광산업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관광진흥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도시건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해양수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사무관으로, 안전총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산림녹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건설교통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산단조성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수도사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보한다.

3. 기획예산담당관 : 기획예산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4조(담당관·과장 등의 사무분장) 실·과장의 사무분장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제3장 직속기관

제1절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제5조(소장의 직급) ① 군 보건소에 두는 소장은 기술서기관·지방보건사무관·지방간호사무관·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진료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보건지소에 두는 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자로 보하되, 자격있는 자로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보한다.

③ 보건진료소에 두는 보건진료소장은 일반직(보건진료직 또는 간호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제6조(소장의 사무분장) 소장의 사무분장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2절 농업기술센터

제7조(소장의 직급) 군 농업기술센터에 두는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제8조(하부조직) ① 군 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을 보좌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농축산과, 농산물유통과, 농촌진흥과 및 농업소득과를 둔다.

② 농축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수의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농산물유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농촌진흥과장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농업소득과장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제9조(과장의 사무분장) 과장의 사무분장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4장 읍·면

제10조(읍·면장의 직급)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읍·면에 두는 읍장 및 면장의 직급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0.1.22., 2013.1.2., 2017.9.11.>

제11조(부읍·면장 직급 등) 부읍·면장은 일반직 6급 공무원으로 하며 총무업무를 겸임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16.1.1., 2017.1.6., 2018.2.5.>

### 하동군 본청 담당관·과장 등의 사무분장(제4조 관련)

과명	분장사무	
기획예산 담당관	가	군정전반의 종합기획·조정, 새로운 시책, 각종 평가 및 통계에 관한 사항
	1	군 행정 전반에 관한 기획 및 조정·통제
	2	담당관·과소 업무의 기획 조정
	3	중장기 계획 및 조정
	4	군정업무 주요업무 확인평가
	5	군수공약 사항 및 지시사항 총괄관리
	6	군민의 날 행사 및 군민상 시상
	7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8	통계조사 및 통계연보 발간
	9	외국인 정책 및 통계, 등록
	10	새로운 시책 발굴 추진
	11	군민제안 및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12	남해안권발전 종합계획 총괄 기획·조정
	13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 동향관리 및 개별법 관련 업무 추진
	14	선벨트 남중권 프로젝트 기획 조정
	나	예산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1	예산 편성, 운영에 관한 사항
	2	재정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
	3	예산의 전용, 이용(이체), 변경 및 예비비 집행 결정
	4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심사, 설계용역과제 사전심의회 총괄추진
	5	전시 지방행정 동원계획 수립시행
	6	사회단체 보조금 관리
	7	국고예산확보 및 보조금 관리 총괄
	8	지방기금 운영 총괄
	9	지방채 발행 계획 및 상환업무 총괄
	다	홍보 및 공보행정에 관한 사항
	1	홍보 계획 수립
	2	군정홍보 및 보도
	3	언론 홍보자료의 수집 및 편찬
	4	주민과 대화의 날 운영
	5	전시 홍보 및 매체동원에 관한 사항



과명	분장사무	
	기획예산 담당관	라
1		군 행정의 감사계획 수립과 시행
2		상급기관 감사의 수감 및 처분 요구사항 처리
3		공무원 비위 예방대책과 비위조사·처리
4		주민 감사 청구제 운영
5		군 대형공사 주민참여 감독자 임명제도 운영
6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
7		계약심사
마		법무·소송·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1		조례, 규칙, 훈령 등의 제·개정, 폐지
2		소송(국가, 행정, 민사)·행정심판·소청에 관한 사항
3		행정절차제도 운영
4		각종 규제의 개혁 및 관리
5		인허가 전담부서 운영 지원
바		자매결연, 대외교류협력 및 봉사단체 관리에 관한 사항
1		자매결연, 국·내외교류업무 총괄
2		국제교류업무 계획 및 개발
3		국제파견 연수공무원 관리 및 지원
4		사회봉사단체 관리 총괄
5		사회봉사단체 보조금 지급 및 관리
6		자원봉사활동 개발 및 운영활성화에 관한 사항

□ 행정지원국

과명	분장사무	
행정과장	가	조직, 인사, 여론, 행정관리에 관한 사항
	1	공무원의 임용, 표창, 징계, 교육
	2	호봉승급 및 호봉 재 확정
	3	공무원시험, 인사위원회 운영
	4	여론, 의견관리
	5	집단민원 총괄관리 및 행정구역 개편조정
	6	전시 주민 및 차량통제에 관한 사항
	7	읍면 기능전환 계획수립 및 시행
	8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직제관리
	9	국가기반체계 보호
	10	전국 및 경남시장군수협의회 관련 업무
	11	일제강점하 및 과거사 진상규명
	나	공무원단체, 후생복지, 선거 및 사무능률에 관한 사항
	1	복무, 보안, 공인관리
	2	주민자치, 국민투표, 주민투표 등 선거관련 업무
	3	정부3.0업무
	4	적십자회비 모금
	5	직장동호회 운영
	6	사무위임 및 전결규정에 관한 사항
	7	공무원단체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8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9	직장금고 운영
	다	아동 및 청소년에 관한 사항
	1	청소년 육성계획 및 청소년 업무에 관한 사항
	2	지방청소년 위원회 구성 및 운영
	3	민간청소년 수련시설 허가, 등록 및 지도
	4	청소년 자립대책 및 모범청소년 발굴 포상
	5	공공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운영
	6	청소년 보호법 관련 사무 추진
	7	요보호아동 후원자 결연사업 지도관리
	8	결식아동 보호지원
	9	가정위탁 보호사업 지원 및 관리
	10	보육시설 지원 및 지도관리

과명	분장사무	
행정과장	<b>라</b>	인구증대시책 및 출산장려에 관한 사항
	1	인구증가 종합추진계획 수립
	2	인구증가 시책추진
	3	출산장려시책 지원
	4	출산관련의료비 지원
	5	저출산대책
	<b>마</b>	평생학습 및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1	범 군민 교육대책 운영
	2	초·중·고등 교육기관의 지원 활성화
	3	인재육성 장학재단
	4	특수대학(분교) 설립 육성
	5	교육환경 및 교육개발 기반개선
	6	평생학습관 설립 운영
	7	학교 기숙사·학원 설립 지원
	<b>바</b>	행정전산화 및 정보통신 관리에 관한 사항
	1	지역정보화 촉진 기본계획 수립 및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 운영
	2	군민 정보화 마인드 향상 및 정보 활성화 대책 추진
	3	시군구 행정종합시스템 구축 운영
	4	행정업무 전산시스템 주요서버 도입 및 운영
	5	회의실 방송장비 총괄 관리
	6	새울행정시스템 구축 운영
	7	IP전화시스템 관리 및 운영

과명	분장사무	
경제전략 과장	가	<b>미래 전략사업 발굴 및 대형 민자 유치에 관한 사항</b>
	1	지역개발 공모사업 총괄추진
	2	국가균형발전사업 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3	발전촉진형·거점육성형 지역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4	한방향노화 바이오산업 중장기 육성계획 총괄
	5	지역균형발전사업 평가
	6	지역발전 투자협약 사업 총괄
	7	남해안시대 중장기 프로젝트 발굴
	나	<b>일자리창출 및 지식재산·지역경제발전, 전통시장육성에 관한 사항</b>
	1	지역경제에 관한 종합대책
	2	지식재산권에 관한 사항
	3	물가관련 종합계획 수립·조정
	4	지식재산권 업무
	5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6	취업알선 및 실업대책 종합계획수립 추진
	7	시장개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9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
	10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
	11	계량기 관리에 관한 사항
	다	<b>중소기업육성, 산업단지 조성 및 기업유치,경제자유구역 외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b>
	1	외국인 및 국내기업 투자유치 업무에 관한 사항
	2	기업활동 규제 완화 및 기업지원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4	농공단지,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공장설립 승인, 등록, 변경, 창업승인 및 사후관리
	6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7	외자 및 국내 기업유치 활동
	8	투자유치 관련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9	투자유치 관련기관·단체 운영 지원
	10	투자유치 타킷기업 관리
	11	개발 투자자 발굴 및 유치

과명	분장사무	
경제전략 과장	라	마을공동체 육성 및 마을기업·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사항
	1	공동체 사업 총괄·기획조정
	2	사회적기업 육성종합계획 수립 및 지원
	3	마을기업 육성에 관한 사항
	4	행복생활권사업에 관한 사항
	5	취약지역생활여건 개조사업 총괄
	6	마을공동체 정원사업(지역공동체사업 총괄)
	7	향토자원 조사 및 특색 있는 마을 만들기
	8	정보화마을 마을정보센터 운영
	마	에너지정책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	에너지 수급 종합계획 수립
	2	신재생에너지 사업개발 및 세부계획 수립
	3	신재생에너지 보급, 기술연구개발 및 사업화 계획 수립
	4	석유 및 대체연료사업법 관련 업무
	5	전원개발지원에 관한 사항

과명	분장사무	
주민 행복 과장	가	기초생활 보장지원 및 주민복지 종합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1	지역사회복지 종합계획 수립·평가
	2	기초생활보장지원업무 계획 수립 추진
	3	생업·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특별회계 관리
	4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관리 및 지원
	5	지역사업의 개발·관리 시행
	6	의사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
	7	재해구호(이재민 실태조사, 구호금품 지급등)
	8	종합사회복지관 총괄 및 시설관리, 복지회관(목욕탕) 관리
	나	장애인복지, 자활 업무에 관한 사항
	1	장애인 복지사업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추진
	2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및 지도점검
	3	재가장애인 생활안정지원
	4	장애인 일자리사업 추진
	5	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6	장애인바우처 지원 사업
	7	자활프로그램 및 자활후견기관 관리
	8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사업
	9	사랑나눔미 빨래방 운영
	다	노인복지 대책수립 및 장묘문화에 관한 사항
	1	노인복지정책 계획 수립 및 추진
	2	노인소득보장 및 취업기회 확충
	3	묘지설치 허가 및 분묘의 개장신고
	4	사랑의 주택 관리 및 실버식당 운영
	5	마을회관, 다목적회관, 경로당
	6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
	7	기초노령연금 지원 및 관리 운영
	8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
	라	여성복지 행정에 관한 사항
	1	여성정책관련 계획 수립 및 추진
	2	여성단체활동 활성화 및 지원
	3	여성주간행사 및 여성대회 관련사항
	4	여성폭력예방 및 방지사업 추진
	5	가정, 성폭력상담소 운영지원
	6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미혼모 지원 및 관리
	7	가족지원 및 건강가정지원 업무
	8	다문화가정 복지지원사업
	9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과명	분장사무	
	마	복지급여대상자 통합조사관리 및 의료급여 자격관리에 관한 사항
	1	복지대상자 신규조사, 선정, 자격관리, 근로능력판정에 관한 사항 추진
	2	복지대상자 각 사업팀 보장 결정 요청
	3	신규신청자 이의신청 처리
	4	의료급여 대상자 선정 관리 및 특별회계 관리, 의료급여사례관리
	5	차상위 계층 및 사회취약 계층 지원 업무
주민행복 과장	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및 희망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
	1	복지대상자 통합사례관리
	2	지역사회자원 발굴 및 관리
	3	공공·민간기관 서비스연계 체계구축
	4	방문형 서비스사업 협력체계 구축 운영
	5	129희망콜(보건복지)센터 업무
	6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관리
	7	불우이웃돕기(공동모금회 연계), 후원·결연 업무
8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과명	분장사무	
재정관리 과장	가	지방세 부과에 관한 사항
	1	세정의 전문성, 효율성 대책 추진
	2	지방세 부과(자동차세, 주민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과세결정
	3	은닉세원 조사 및 발굴
	4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운영
	5	지방세 구제업무
	6	지방세 전산시스템 운영 관리
	7	지방세 세무조사 및 기타 지방세 부과
	나	공사 및 물품계약, 경리관계에 관한 사항
	1	세출예산 경리 및 결산
	2	세입세출 외 현금 및 유가증권 출납보관
	3	공사 용역 계약 및 기타 계약관리
	4	공무원 급여 및 원천징수
	다	세입 및 체납관리에 관한 사항
	1	세외수입 총괄관리
	2	자금운용 및 자금배정
	3	국도비 보조금 관리
	4	금고 및 수납대행점 관리
	5	수입증지 관리
	6	세입 과오납금 환부처리
	7	기부금품 모집 및 심의처리
	8	세입징수보고 및 세입결산
	9	지방세 체납액 징수
	10	지방세 체납처분(압류, 공매의뢰 등)
	11	행정제재(관허사업 제한, 고발, 신용정보 등록, 출국금지, 기타 행정제재)
	12	결손처분
	13	법원 경매 교부청구 및 배당금 수령



과명	분장사무	
재정관리 과장	라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 관리, 재산세 부과에 관한 사항
	1	개별필지 특성조사, 지가 산정 및 검증 업무
	2	표준지 공시지가에 관한 업무
	3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4	개별주택 가격조사 계획수립
	5	표준주택 가격에 관한 업무
	6	재산세(주택분, 토지분, 건축물, 선박·항공기) 부과
	7	개발부담금 조사·산정 및 부과
	마	국·공유재산 및 재물관리에 관한 사항
	1	물품수급관리 계획수립, 재물조사 실시
	2	청사·관사 정비계획 수립 및 관리 지도
	3	국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조정 및 업무지도 감독
	4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 잡종재산 관리
	5	도 · 군유 잡종재산 관리
6	관용차량 관리	
7	물품출납, 보관 관리	

과명	분장사무	
문화체육 과장	가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	지방문화예술 진흥
	2	문화예술분야 지도 육성 및 관리
	3	문화원 운영 지도 감독
	4	전시문화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공공도서관 지원 및 인쇄소·출판사 관리
	6	공연장 등록 관리
	7	음악 및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8	문화시설 사업추진
	나	문화재에 관한 사항
	1	문화재 안전에 관한 사항
	2	무형문화재 발굴 및 지도
	3	국·도 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4	문화재를 활용한 관광상품화 사업
	5	천연기념물(동물) 구조 및 치료에 관한 사항
	6	가야사 복원 총괄
	다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
	1	스포츠마케팅 사업
	2	각종 전국대회 및 국제대회 준비
	3	국제적인 대회유치 기반조성
	4	체육진흥업무 활성화 추진
	5	하동군체육회 업무 지원
	6	생활체육 업무추진 및 동호인 단체 육성 관리
	7	체육시설 등록 신고 및 지도 감독
	8	체육공원조성 및 공공체육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9	금남면소재지 축구장 조성사업 추진

과명	분장사무	
문화체육 과장	라	문화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	문학관 운영 및 관리
	2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3	지리산역사관 운영 및 관리
	4	국민체육센터 시설운영 계획 수립
	5	국민체육센터 프로그램 운영 개발
	6	체육시설물 유지관리 및 보수
	7	시설물 이용 홍보 및 수강인원 관리

과명	분장사무	
민원과장	가	민원행정 및 주민등록에 관한 사항
	1	민원안내 및 상담
	2	여권업무 및 민원행정시책 추진
	3	민원 서비스 혁신(민원24)운영
	4	민원(신고, 인·허가 등)접수 통제
	5	하동군 민원조정위원회 관리
	6	고객만족도설문조사
	7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 인감업무
	8	행정정보 공개운영 및 군정기록물 관리
	9	행정정보공동이용
	10	무인민원 발급기 관리 및 운영
	나	지적관리 기획·조정 및 처리에 관한 사항
	1	지적 관리 기획 및 조정
	2	지적 측량 검사
	3	KLIS 구축사업 기획·조정 업무
	4	도곽접합 등 도면 정비
	5	정밀한 연속도면 제작 추진
	6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권한부여 등 관리
	7	부동산 행정정보일원화 사업
	8	토지등록사항정정 관련 업무
	9	토지이동조사 및 지적 공부정리
	10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법 관련 업무
	다	지적재조사 기획·조정 및 처리에 관한 사항
	1	지적재조사 사업 실시계획 수립 및 사업지구 지정
	2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일필지 조사 및 지적재조사 측량
	3	지적재조사 조정금의 지급·징수·공탁
	4	하동군 지적재조사위원회, 하동군 경계결정위원회 관리
	5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별법 운영
	6	지적공부세계측지계변환업무

과명	분장사무	
민원과장	라	공간정보,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
	1	공간정보에 관한 사무

2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무
3	지명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4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5	국가기초구역에 관한 사무
6	국가지점번호에 관한 사무
7	부동산 실거래 신고 및 외국인 토지 취득 신고
8	부동산 실명법 운영
9	부동산 중개업 관리
<b>마</b>	<b>민원 기동대 운영에 관한 사항</b>
1	생활민원 기동대 운영에 관한 사항
2	생활민원 접수 및 처리
3	가로등(보안등) 설치(단, 도로개설시 제외)
4	가로등(보안등) 개보수 및 유지관리
5	가로등(보안등) 고장신고센터 운영 및 관리
6	가로등(보안등) 안전점검 및 부적합 사항 처리
7	가로등(보안등) 수리용 차량 운영

과명	분장사무	
환경보호 과장	<b>가</b>	<b>환경보전업무 종합계획수립, 기후변화에 관한 사항</b>
	1	환경보전 중장기계획 수립 및 시행
	2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
	3	환경영향 평가 및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 관련업무
	4	수변구역 관리 및 행위허가, 협의 업무
	5	일반 및 직접지원 주민지원사업 추진
	6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 시행
	7	개발관련 오염총량 협의 및 부하량 관리
	8	토양오염 유발시설 인허가 및 관리
	9	기후변화 대응 관련업무
	10	탄소포인트제 시행 및 평가
	11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구성운영 및 지원
	<b>나</b>	<b>대기, 폐수, 소음·진동,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 및 환경오염 단속에 관한 사항</b>
	1	환경신문고 운영관리
	2	대기, 폐수, 소음·진동 배출시설 인허가 및 지도단속 관리
	3	환경오염피해 분쟁조정 지원
	4	가축분뇨 배출시설 인허가 및 지도단속 관리
	5	생활·소음진동, 생활악취 규제
	6	수질오염사고 대응 및 예방관리
	7	비산먼지 발생사업, 특정공사, 기타 수질오염원 설치신고
	8	밀렵단속 및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관리
	9	자동차배출가스 지도단속 관리
	<b>다</b>	<b>폐기물처리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b>
	1	폐기물처리 및 자원재활용 종합계획 수립 추진
	2	생활폐기물 불법처리행위 지도단속
	3	일회용품 규제대상 업소 지도단속
	4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및 사후관리
	5	자연발생 유원지 지정 및 운영관리
	6	공중화장실 총괄 관리
	<b>라</b>	<b>탄소 없는 마을 육성, 자연생태 보전에 관한 사항</b>
	1	탄소 없는 마을 육성
	2	환경 상품 개발(공기캔 등)
	3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업무
4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에 관한 업무	
5	녹색시범마을 육성 지원	
6	지리산생태과학관 관리 및 운영, 지리산국제환경생태예술제	

과명	분장사무	
환경보호 과장	마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1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전반
	2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시설 운영
	3	소각시설 가동 및 유지관리
	4	침출수 처리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5	매립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6	재활용 선별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 관광산업국

과명	분장사무	
관광진흥 과장	가	관광종합개발계획, 신규관광자원 개발에 관한 사항
	1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
	2	관광관련 민자유치 계획 수립 및 추진
	3	신규관광자원 개발
	4	유원시설업 및 야영업 등록관리
	5	캠핑장 등록 및 유지관리
	6	하동 알프스 프로젝트
	7	관광단지 트레킹·힐링공원 조성사업
	8	관광숙박업 등록·관리
	9	지리산 광역관광개발사업 추진
	10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 지원업무
	나	관광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	관광개발사업 추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권역별 관광기반 조성
	3	관광지 지정 및 개발
	4	익사이팅 레포츠 개발사업
	5	폐철도 관광자원개발사업
	6	청학동 관광지 개발사업
	7	남해안권 관광개발에 관한사항
	8	관광안내관 설치 및 유지관리사업
9	케이블카 조성사업	
10	그 밖에 관광자원 개발에 관한 사항	
다	관광시설 운영 및 관리, 관광시설 마케팅에 관한 사항	
1	관광시설 운영 및 관리	
2	관광시설 마케팅	
3	화개장터 운영 및 관리	
4	삼성궁, 천제당 운영 및 관리	
5	최참관댁 운영 및 관리	
6	섬진강 100리 테마로드 유지관리	
7	섬진강변 트레킹코스 유지관리	



과명	분장사무	
관광진흥 과장	라	슬로시티 및 관광마케팅에 관한 사항
	1	슬로시티 업무 총괄 관리 및 추진
	2	관광 관련 종합계획 수립 추진
	3	관광 홍보(동영상) 업무 추진
	4	관광 통계 업무 추진
	5	관광객 안내(팸투어) 및 인센티브 업무 추진
	6	관광 여행업 업무 추진
	7	문화유산 해설사 및 관광안내 자원봉사자 관리
	8	하동군 홍보대사 관리 업무 추진
	9	공동브랜드 관리 업무 추진
	10	관광상품 개발
	11	관광불편 민원 처리 업무 추진
	12	국내·외 관광객 유치 기획 총괄
	13	국내·외 관광설명회, 업무협약 추진
	마	축제지원에 관한 사항
	1	각종 축제관련 종합계획 추진 및 총괄지원
	2	화개장터 벚꽃축제 추진
	3	하동야생차문화 축제 추진
	4	알프스하동 섬진강 재첩축제 추진
	5	어슬렁 캠핑 업무 추진
	6	회남재 숲길 걷기 업무 추진
	7	국제트레일 러닝 업무 추진
	8	축제 프로그램 신규 발굴

과명	분장사무	
도시건축 과장	가	도시 종합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	군 관리 계획수립 및 관리
	2	도시계획 입안 시행
	3	시가지 및 도시구획 정리
	4	군 기본계획 수립 및 관리
	5	도시종합개발계획에 관한 사무
	6	택지 개발계획에 관한 사무
	7	경전선 철도 이설
	8	광역권개발계획에 관한 사무
	9	개발촉진지구 지정
	나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
	1	군 계획시설 개설계획 수립 및 편입부지 보상
	2	군 계획시설 개설공사 시행 및 감독
	3	도시공원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
	4	소도읍 육성 업무 및 섬진강체육공원 조성
	5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
	다	도시재생, 지역·경관 디자인에 관한 사항
	1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2	경관개선사업 추진
	3	지역·경관 및 공공디자인 종합계획 수립 및 시책 추진
	4	광고물 등 허가·신고 및 지도 감독
	5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 추진
	라	건축인허가(민원)에 관한 사항
	1	건축신고 및 허가업무
	2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업무
	3	건축물 표시변경 등기 촉탁
	4	건축물 착공신고 및 건축물 사용승인
	5	건축물 대장정비 사업추진
	6	분양대상 건축물 분양승인
	마	건축 행정에 관한 사항
	1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2	빈집 정비사업, 마을 가꾸기 사업
	3	위법건축물 종합계획 수립 및 관리
	4	공동주택 사업승인 및 관리
	5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 추진
6	재해주택 관리	
7	주거복지(급여)에 관한 사항	

과명	분장사무	
도시건축 과장	바	복합민원에 관한 사항
	1	개발행위허가 및 사후관리
	2	농지전용허가·협의·변경 및 전용지의 사업완료 후 5년까지 사후관리
	3	산지전용허가·협의·신고 및 전용지의 사업완료 후 5년까지 사후관리
	4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의 설치신고, 준공검사 및 준공 후 수질검사

과명	분장사무	
해양수산 과장	<b>가</b>	<b>해양개발, 수산진흥, 해양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b>
	1	해양관광개발 사업 및 투자유치 계획 수립 및 추진
	2	국가어항 및 다기능 어항 개발에 관한 사항
	3	국가마리나 개발계획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공유수면(해면) 관리에 관한 업무
	5	수산행정 업무의 기획조정 및 총괄
	6	어촌종합개발사업 선정 및 개발에 관한 사무
	7	연안정비 사업 계획 수립 및 연안오염 방지시설 사업
	8	어항시설사업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무
	9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어촌환경 개선
	10	남해안시대 관련 해양개발사업 추진
	11	해양레저산업 개발계획 수립 및 시행
	<b>나</b>	<b>수산사업 및 수산물 관리에 관한 사항</b>
	1	어장이용 개발계획 수립
	2	해면어업 면허 및 관리
	3	수산증식사업 및 사후관리
	4	어업 피해예방 및 보상
	5	어선등록 및 관리
	6	안전조업지도 및 해난사고 예방
	7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8	어촌체험마을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b>다</b>	<b>내수면 어업, 내수면 관리에 관한 사항</b>
	1	내수면 어업 진흥 및 발전 종합대책 수립
	2	채첩 관련 산업 육성
	2	내수면 면허, 허가, 신고어업 처분 및 지도감독
	3	내수면어업 재해대책에 관한 사항
	4	어업지도 및 불법어업 예방 단속
	5	어선 안전조업지도 및 교육
	6	어업지도선 관리운영
	7	내수면 수산자원조성사업 및 사후관리
	8	국가 중요어업 유산지정 및 사업
	9	내수면 특산수산물 축제지원 관련 업무

과명	분장사무	
해양수산 과장	라	섬진강 관련 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	섬진강 관련 업무 관리
	2	섬진강 인접 지방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
	3	국가하천구역 편입 토지 보상
	4	하천점용허가 및 점용료 관리
	5	국가하천 수변공원(4대강 사업구간) 관리
	6	공유(도유)재산 관리(하천구역 내)

과명	분장사무	
안전총괄 과장	가	안전 및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
	1	안전총괄·안전문화, 사회안전 업무
	2	특정관리대상시설 및 재난취약시설 관리
	3	특별사업경찰 업무 지원
	4	각종 재난상황 관리(보고 및 초동대응)
	5	안전·재난대비 시설 및 장비 유지 관리·운영
	6	내수면 수상레저 사업 등록 및 안전관리
	7	승강기 관리 업무
	나	민방위비상대책에 관한 사항
	1	민방위 계획 수립 및 시행
	2	비상대비 대책수립 업무
	3	전시 병력동원업무 지원
	4	예비군 육성 지원
	5	사회복무요원 관리
	다	복구지원 및 방재에 관한 사항
	1	지역방재 계획 수립
	2	자연재난 피해상황 총괄 및 종합대책
	3	자연재난 복구계획 수립추진
	4	재해위험지 조사 및 방재시설물 점검 및 관리
	5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6	재해 사전대비 업무
	7	풍수해 보험 업무
	라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	하천 정비·유지관리
	2	기성제 정비 및 하도개선사업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
	3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계획 수립 및 시행
	4	골재 채취업 등록 및 관리
	5	소하천 정비기본계획 수립·변경
	6	공유수면(국토부)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사항

과명	분장사무	
산림녹지 과장	가	산림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
	1	산림 조성 종합기획
	2	조림사업 및 사후관리
	3	임업단체 육성 및 지도관리
	4	산림분야 종묘업 등록업무
	5	산림분야 공모사업
	6	농림사업 시행 및 사후관리
	7	임산물 생산·가공 및 유통사업 지도감독
	8	공유림 관리에 관한 업무
	9	백두대간 지원업무
	나	산림보호, 공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	산불방지 종합대책
	2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및 예찰
	3	숲 가꾸기 사업
	4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
	5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계획수립 및 시행
	6	송림공원 관리
	7	입목벌채 허가, 신고
	8	임산물 굴·채취 허가 및 신고
	9	등산로 조성 및 관리
	10	숲길 조성 및 관리
	11	공원조성 및 관리
	12	자연공원(국립공원) 관련업무 전반
	13	군립공원 관리
	14	하동공원 플라워파크 조성
	15	섬진강재첩테마공원 조성
	다	산림경영에 관한 사항
	1	산지관리 기본계획 수립
	2	산림입지 조사
	3	사방사업 계획수립 및 관리
	4	산림재해대책 및 복구
	5	임도시설 및 관리
	6	토석채취허가 및 관리
	7	보안림 지정 및 관리
	8	산림경영계획에 관한 사항
	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사항
	1	자연휴양림 조성 및 관리
	2	수목원, 생태숲 조성 및 관리
	3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및 관리
	4	산촌생태마을 조성 및 관리
	마	가로수 식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	가로수 조성 및 관리
2	도로변 꽃길 꽃동산 조성 및 관리	
3	학교숲 조성 업무	

과명	분장사무	
건설교통 과장	가	건설종합계획, 주민숙원사업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	도로교통량 조사
	2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3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4	오지종합 개발사업 계획수립 및 시행
	5	도서종합 개발사업 계획수립 및 시행
	6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 용도 폐지
	7	건설기계 등록 및 조종사 면허관리
	8	지하수 개발이용 인허가
	9	국도, 지방도사업, 소규모사업 보상관련업무 일체
	나	농업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1	농업기반 조성 종합 기획·조정
	2	경지정리 사업
	3	농업용수 개발
	4	농업기반시설 및 수리시설 유지관리(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5	수리시설 안전점검 및 개·보수 사업
	6	농지개량사업 시행 인가
	7	정주권 개발사업
	8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9	밭기반 조성사업
	10	지표수보강개발사업
	11	공유(도유)재산 관리(농업생산기반시설 내)
	다	토목공사 및 각종 도로 관리에 관한 사항
	1	군도 및 농어촌도로 관리 및 정비
	2	도로공사로 인한 수익자 부담금 부과 및 징수
	3	접도구역 관리
	4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관리 단속
	5	도로 공작물 설치 허가(도로점용허가, 도로 점·사용료 부과 및 징수)
	6	군도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7	농어촌도로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8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계획수립 및 시행
	9	도로 설해대책
	10	관내 도로 교량관리
11	군도, 농어촌도로 보상관련업무 일체	

과명	분장사무	
건설교통 과장	라	농산어촌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 공모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신규공모
	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 및 사후관리



3	신규마을조성사업
4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중간지원조직 및 운영관리
5	금남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 추진
<b>마</b>	<b>교통행정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b>
1	교통행정 종합기획·조정
2	자동차 운송사업 인·허가, 등록 및 지도감독
3	자동차관리사업 인·허가 지도감독
4	자동차 등록에 관한 사항
5	교통시설에 관한 사항
6	노상 및 노외 주차장에 관한 사항
7	자동차 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

과명	분장사무	
산단조성 과장	가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유치 및 연구단지 조성·관리에 관한 사항
	1	경제자유구역 내 외자 및 국내기업유치 활동
	2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유치 타킷기업 관리
	3	경제자유구역 내 개발 투자자 발굴 및 유치
	4	애버딘대학교 한국캠퍼스 학생모집 및 운영 등 지원
	5	심해자원 생산설비 운영성능 실증베드 구축
	6	기숙사 및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지원
	7	해양플랜트 종합시험연구원 관리 및 운영지원
	8	해양플랜트 연구단지 관리 및 활성화 대책 수립·시행
	나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관한 사항
	1	갈사만조선산업단지 조성 및 사후관리 추진
	2	대송산업단지조성 및 사후관리
	3	경제자유구역 관련 특수목적법인 이사회 운영 및 관리
	4	경제자유구역 관련 기반시설(내부간선도로, 공업용수, 폐수) 사업 추진
	다	경제자유구역 내 신도시 조성 및 산업단지 보상에 관한 사항
	1	신도시 개발지구 지정
	2	갈사만 배후도시 개발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4	도시개발에 관한 사항
	5	택지개발에 관한 사항
	6	공영개발에 관한 사항
	7	공업지구 내 공장 설립 등에 관한 사항
	8	두우배후단지 조성 및 사후관리
	9	금성조선농공단지 및 사후관리
	10	경제자유구역개발 보상 업무 추진
	11	공공용지 편입부지 소유권 이전 등기
	12	토지수용 재결신청 및 보상민원 해결
	13	감정평가 및 분할측량 업무 추진
	라	경제자유구역 소송지원에 관한 사항
	1	산단 소송 지원
2	산단 고소·고발 업무 추진	

과명	분장사무	
수도사업 과장	가	상하수도 운영 총괄, 시설관리 및 인력운영에 관한 사항
	1	상하수도 운영 총괄
	2	물관리 종합 대책 수립 및 시행
	3	사용료 부과 및 징수
	4	저수조 청소업 관리
	나	상수도에 관한 사항
	1	상수도 사업계획 및 시행
	2	상수도 취수, 정수, 송배수 및 그 시설과 부속시설 유지·관리
	3	급수사항 지도·감독
	4	누수탐사 수선
	5	소규모수도시설 및 수질관리
	6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관리
	7	상수도 대행업체 운영관리
	다	하수도에 관한 사항
	1	하수도 사업계획 및 시설 개보수
	2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3	하수종말처리장 및 분뇨처리장 설치 및 운영관리
	4	배수설비 설치 신고 및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관리
	5	오수, 분뇨 관련업무
	6	개인 하수처리 시설 지도점검 및 사후관리
	7	분뇨 등 관련 영업자 인허가 및 관리

[별표 2] <개정 2014.9.2, 2016.1.1., 2017.1.6., 2018.2.5.>

하동군 직속기관 과·소장의 사무분장(제6조 및 제9조 관련)

과명	분장사무
보건소장	<b>가 보건행정에 관한 사항</b>
	1 공중보건 의사 배치·복무 관리
	2 보건기관 시설물 관리
	3 보건지소·진료소 운영 및 지도
	4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5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6 보건지소 의약품 및 각종 기자재 구매업무
	7 보건사업 업무기획 및 조정
	8 의료반 운영 및 각종의료지원 업무
	9 건강검진기관 지정 및 건강진단 등 신고
	<b>나 예방의약에 관한 사항</b>
	1 소독의무대상시설관리
	2 의료기관 등 지도 관리
	3 약물관리, 의료기기 판매업소 지도·점검
	4 마약류 지도·관리
	5 한센병 등록환자 관리
	6 예방접종 사업
	7 신종감염병 발생시 대책상황실 운영
	8 감염병 관리 업무
	9 표본감시의료기관 운영 및 각종 감염병 관리 웹 보고
	10 응급의료에 관한 업무
	11 국가결핵관리사업
	12 장기이식 등록 관리
	13 기생충퇴치사업
	14 성매개 감염병 및 에이즈 사업
	15 방역소독사업
	<b>다 건강지원에 관한 사항</b>
	1 희귀·난치성질환자 관리 및 지원
	2 국가암 조기검진
	3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4 지역사회 건강조사
	5 노인인고관절 수술비 등 지원
6 저소득층 특수질환 조기검진사업	
7 정신보건센터 운영 및 관리	
8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사업	

과명	분장사무	
보건소장	<b>라</b>	<b>건강증진에 관한 사항</b>
	1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2	방문건강관리사업(방문진료 및 전담인력관리)
	3	말기암 환자 호스피스 연계사업
	4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5	만성질환관리사업(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6	금연사업(교육, 금연클리닉 운영)
	7	모자보건사업
	8	재가장애인 등록 및 재활치료
	9	경로당 방문진료
	10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
	11	한의약건강증진 HUB보건소사업
	12	어르신틀니사업
	13	건강증진사업
	14	분만산부인과(공공산후조리원) 관리 운영
	<b>마</b>	<b>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b>
	1	치매관리사업
	2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3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4	배회감지기 지원사업
	5	치매조기 검진사업
	<b>바</b>	<b>진료에 관한 사항</b>
	1	건강검진 업무
	2	민원 제증명 발급, 수입금 관리 등 민원실 운영
	3	성병, 에이즈 등 각종 검사관리
	4	건강검진, 민원 병리검사 관리
	5	장애인 의약품 조제료 지원 등
	6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7	특수의료장비 관리
	8	건강보험 진료비 청구 업무
	<b>사</b>	<b>공중이용시설 안전위생관리에 관한 사항</b>
	1	식품영업(신고·허가)에 관한 사항
	2	공중위생업소 개설업무
	3	위생지도 행정의 종합기획·조정
	4	무허가업소 지도단속
	5	국민건강 위해식품 단속
	6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제 관리
	7	식품·공중위생 교육·홍보

과명	분장사무	
농축산 과장	가	농업정책 및 농지관리에 관한 사항
	1	센터 소관업무의 종합기획 조정
	2	농어촌 발전계획 수립 및 시행
	3	경관보전 직불제 및 경관작물 축제
	4	농촌특산단지 및 농업법인 육성지도
	5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사항
	6	지방혁신계획 수립 및 추진
	7	농촌활력증진사업 추진 및 지역전략산업 육성
	8	농어촌 진흥기금 관리 운영
	나	농업지원에 관한 사항
	1	양곡 수급관리
	2	식량작물(쌀, 밭농업) 직불금 지원
	3	농어촌 진흥기금 관리 운영
	4	FTA 대책 및 지원사업
	5	친환경농업 직불제
	6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7	농업인용자이전보조금지원사업
	다	축산행정 및 시설물, 기술지도에 관한 사항
	1	한우산업 육성
	2	낙농산업 육성
	3	양계산업 육성
	4	양돈산업 육성
	5	양봉, 토봉산업 육성
	6	기타 가축 육성
	7	축산물 브랜드 육성
	라	가축방역 및 축산환경에 관한 사항
	1	가축방역 및 약품지원 사업
	2	가축 질병예찰 및 병성감정
	3	공수의 지도 감독
	4	공동방제단 운영
	5	반려 및 유기동물 관리
	6	가축전염병 발생축 살처분 및 보상
	7	축산환경개선

실과명	분장사무	
농축산 과장	마	농업기계화 촉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	농기계 순회 수리반 운영
	2	농업기계 사후봉사 업체관리
	3	농업기계화 촉진 및 실수요자 교육
	4	농업 기계화사업
	5	농기계 보관 창고 관리
	6	농업기계 대여은행 설치·운영

과명	분장사무	
농산물 유통 과장	가	농·특산물의 수출지원에 관한 사항
	1	농·특산물 수출관련 전반
	2	수출확대 종합계획 수립
	3	해외시장 개척 활동 및 홍보
	4	수출전문업체 및 국내외 바이어 육성관리
	5	수출농단 및 관련시설 지원관리
	6	수출 증대를 위한 각종 지원
	7	수출홍보 마케팅 지원
	나	농·특산물의 유통·마케팅에 관한 사항
	1	농산물 국내유통 관련 전반
	2	농산물 유통시설 확충사업
	3	농산물의 원산지 관리 및 지도
	4	농·특산물의 쇼핑몰 및 각종 판매장 운영관리
	5	특산물의 마케팅 지원
	6	온라인 판매처 확보 등 판로 개척
	다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 및 가공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	농산물가공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2	농산물가공창업지원 및 육성
	3	농업인 소규모 가공산업 지원 및 육성
	4	농산물 가공관련 연구회 육성 지원
	5	농산물 가공 상품 개발 및 보급
	6	농산물 소득 활동 지도
	라	농촌융복합산업에 관한 사항
	1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지원
2	향토산업 종합발전 계획수립 및 시행	
3	새로운 지역특화산업 개발 및 지원	
4	농산물융복합 기술개발사업	
5	벤처농업 육성	

과명	분장사무	
농산물 유통 과장	마	농특산물 포장 디자인에 관한 사항
	1	포장디자인 개발 활용
	2	농산물 포장재 통합 관리 및 지원
	3	지식재산 창출, 보호, 활용
	4	농산물 브랜드 통합관리 및 지원
	5	수출포장 디자인 개발 및 지원



과명	분장사무	
농촌진흥 과장	가	농업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1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 수립
	2	농업인 단체 육성 및 관리
	3	농업인 품목 연구회 조직 육성에 관한 사업
	4	농촌총각 행복가정 만들기 사업
	5	농촌지도공무원 역량개발 교육
	6	최고농업경영자과정 교육사업
	7	농업인 전문역량개발 교육
	8	농업경영 개선지도
	9	농업인 정보화 촉진사업
	나	농촌관광 및 체험에 관한 사항
	1	농촌체험관광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2	도농교류 활성화 사업
	3	농촌체험휴양마을 조성 및 관리 지도
	4	농산물 및 소규모 마을축제
	5	농가민박, 관광농업 육성 및 관리
	6	농촌관광 체험행사 지원 및 종합계획 수립
	다	농촌자원 개발 및 식품개발에 관한 사항
	1	농촌자원사업의 계획 및 평가
	2	농작업환경개선 지도
	3	생활문화전승 및 기술지원
	4	생활환경개선 시범사업 육성
	5	생활개선회 육성 및 관리
	6	농촌여성 활력 증진교육
	7	향토음식 발굴 및 보급
	8	농촌교육농장육성 및 관리
	라	귀농귀촌 및 신규농업인 육성에 관한 사항
	1	귀농귀촌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
	3	귀농귀촌인 관리·교육 및 지도
	4	도시민유치 및 귀농창업 지원사업
	5	청년농업인 창업지원 및 지도
	6	후계농업경영인 및 산업기능요원 선정·관리
	7	한국 농수산대학 졸업생 사후관리
	마	드론 관리 및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1	드론관리 및 활용 종합계획 수립
	2	드론활용 영농 기술 접목 사업 발굴 및 육성
	3	드론활용 병해충 예찰 및 방제 기술 지원
	4	드론활용 안전관리지도 및 홍보
	5	드론활용 전문인력양성 기술교육
	6	드론활용 일자리 창업지원

과명	분장사무	
농업소득 과장	가	농업의 신소득작물 스마트농업 총괄에 관한 사항
	1	친환경농업 육성 시책관리
	2	친환경농업단지 및 생태농업단지 조성
	3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
	4	친환경농산물 인증관리 및 친환경인증 활성화
	5	과학영농시설 운영
	6	지역농업개발센터 종합운영
	7	기능성 신소득작목 육성
	8	인공지능 도입 스마트농업 총괄
	9	미곡종합처리장 및 양곡관리
	10	식량작물(쌀, 밭농업) 직불금 지원
	나	식량작물 육성에 관한 사항
	1	식량생산 종합계획 수립
	2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및 방제지원
	3	고품질 쌀 생산 및 기술지도
	4	보급종 등 우량종자 보급 및 종자업 등록
	5	농약 안전 사용 및 현장기술 지도
	6	토양·식물체·관개수 등 환경농업 실태조사 및 분석
	7	농업재해 조사 및 복구 지원사업
	다	원예·과수산업 육성 및 기술보급에 관한 사항
	1	원예산업 종합계획 및 생산
	2	원예작물 수출전략 작목 개발 및 농가보급
	3	채소·화훼·과수 지역 특화품목 육성·지도
	4	시설채소·노지채소 신기술 보급지도
	5	채소 및 화훼분야 소득작목 개발
	6	시설채소 육성 및 지원사업
	7	원예작물 농약 안전사용 및 병해충 방제
	8	과수 종합계획 수립 및 생산
	9	FTA대응 과수 경쟁력 제고사업
	10	과수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
	라	녹차산업 육성 및 유통지원, 특용작물 산업육성 및 기술보급에 관한 사항
	1	하동 녹차산업 발전 종합계획 수립
	2	공동 포장재 지원사업 및 품질개선 등 경상사업
	3	녹차산업의 부가가치 증대계획 수립 시행
	4	녹차연구소 관련 업무·사업 지원 및 점검
	5	버섯재배 및 시범사업 추진지도
	6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
	7	잠업 기술 지도
	마	농업유산 관리 및 소득화·관광자원화에 관한 사항
	1	국가 및 세계중요농업유산 보전관리
	2	하동녹차 홍보 및 박람회 지원
	3	하동야생차박물관 및 차문화센터 관리운영
	4	정금차밭지구단위계획
	5	농업유산 연계 관광상품·프로그램 개발

[별표 5] <개정 2014.6.27., 2017.9.11.>

읍·면장의 직급(제12조 관련)

읍·면사무소명	직 위	직 급	비 고
하동읍 행정복지센터	하동읍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화개면사무소	화개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악양면사무소	악양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적량면사무소	적량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횡천면사무소	횡천면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고전면사무소	고전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금남면사무소	금남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금성면사무소	금성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진교면 행정복지센터	진교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양보면사무소	양보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북천면사무소	북천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청암면사무소	청암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옥종면 행정복지센터	옥종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총 정원 26명 증원으로 정원의 총수 변경(안 제2조)
  - 담당신설에 따른 인력 증원 : 지역공동체, 공간정보, 탄소제로, 관광기획, 관광마케팅, 도시재생, 내수면개발, 법률지원, 관리운영,

치매안심, 농산물가공, 디자인지원, 드론활용, 농업유산담당

2. 비용추계의 결과

가. 추계의 전체(5년간) -----금 3,601,000천원

○ 총원(26명) 인건비(자체) : 금 3,601,000천원

나. 추계의 결과

○ 총원(26명)

(단위: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세출	인건비	325,000	795,600	811,200	826,800	842,400	3,601,000
세입	자체예산	325,000	795,000	811,200	826,800	842,400	3,601,000

※9급 03호봉 연평균 인건비기준 : 30,000천원

※연도별 평균 봉급 인상분 2.0%추가 적용

3. 부대의견

○ 지방분권시대 강화 및 민선7기 핵심 사업 추진을 위한 담당 신설에 따른 인력 총원

4. 작성자 : 행정과장 김형동

##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원조달방안

### 1. 부문별 재원분담계획

(단위: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합계	
재원조달	325,000	795,000	811,200	826,800	842,400	3,601,000	
자체 수입	소계	325,000	795,000	811,200	826,800	842,400	3,601,000
	지방세	325,000	795,000	811,200	826,800	842,400	3,601,00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							

###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지방세로 충원

### 3. 부대의견

- 지방분권시대 강화 및 민선7기 핵심 사업 추진을 위한 담당 신설에 따른 인력 충원

### 4. 협의사항 : 기획조정실 예산담당

### 5. 작 성 자 : 행정과장 김형동

#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처리규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6일

하 동 군 수

## 1. 자치법규명 :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 2.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국 설치 및 과 증설 등에 따라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 담당신설에 따른 인력 증원 : 지역공동체, 공간정보, 탄소제로, 관광기획, 관광마케팅, 도시재생, 내수면개발, 법률지원, 관리운영, 치매안심, 농산물가공, 디자인지원, 드론활용, 농업유산담당

## 3. 주요내용

- 행정기구 개편
  - 현행 : 2실 12과 2직속기관(1소 3과) 2사업소 1의회 13읍면 [21실과소/ 147담당]
  - 개편 : 2국 1담당관 15과 2직속기관(1소 4과) 1의회 13읍면 [22담당관과소/ 156담당]
- 공무원 정원조정 (증 26명)
  - 현행 : 총657명(본청 292/ 의회13/ 직속125/ 사업소 32/ 읍면195)
  - 개편 : 총683명(본청 330/ 의회13/ 직속143/ 읍면197)
    - 4급 : 증 2명
    - 4~5급 : △ 2명
    - 5급 : 증 3명
    - 6급 : 증 1명
    - 7급 : 증 1명
    - 9급 : 증 21명

## 4. 의견 제출 : 이 자치 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년 8월 5일까지 하동군(참조 : 행정과, 전화 055-880-2153, FAX055-880-2159, e-mail:hae444@korea.kr)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하동군 규칙 제 호

##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 직렬별 정원 <개정 2017.1.6., 2017.7.6., 2017.9.11., 2017.12.8., 2018.2.5.>

구분	직급별	기관별	합계	본청	직속기관		의 회 사 무 과	읍	면
					보건소	농 업 기술센터			
총 계			<b>683</b>	<b>330</b>	<b>71</b>	<b>72</b>	<b>13</b>	<b>22</b>	<b>175</b>
정무	정무직 계		1	1					
일 반 직	정무직		1	1					
	일반직 계		<b>652</b>	<b>326</b>	<b>71</b>	47	<b>11</b>	<b>22</b>	<b>175</b>
	4급 소계		<b>3</b>	<b>3</b>					
	서기관·기술서기관		<b>3</b>	<b>3</b>					
	4~5급소계		<b>1</b>		<b>1</b>				
	기술서기관·보건사무관· 간호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보 건의료사무관		1		1				
	5급 소계		37	16	1	5	2	1	12
	행정		<b>4</b>	<b>3</b>			1		
	의무		1		1				
	시설		1	1					
	행정·사회복지		1	1					
	행정·시설		1	1					
	행정·농업		<b>2</b>						2
	행정·사회복지·농업		1						1
	행정·시설		<b>4</b>	<b>4</b>					
	행정·해양수산		1	1					
	행정·농업·녹지		2	1					1
	행정·농업·시설		2	1					1
	행정·농업·수의·지도관		1			1			
	행정·공업·농업·시설		5	<b>2</b>			1		2
	행정·사회복지·농업·녹지		1						1
	행정·농업·시설·해양수산		1						1
	행정·해양수산·시설		1						1
	행정·환경		1	1					
	행정·사회복지·농업·시설		2					1	1
	행정·사회복지·농업		1						1
	행정·농업·지도관		<b>2</b>			<b>2</b>			
	농업·지도관		2			2			

구분	직급별	기관별	합계	본청	직속기관		의 회 사무과	읍	면
					보건소	농 업 기술센터			
일 반 직	6급 소계		159	80	13	12	2	5	47
	행정		10	9	1				
	세무		1	1					
	속기		1				1		
	녹지		1	1					
	해양수산		1	1					
	보건진료		5		5				
	환경		2	2					
	시설		6	6					
	운전		4	1		1			2
	행정·세무		16	9				1	6
	행정·사회복지		9	6				1	2
	행정·공업		1			1			
	행정·농업		20	3		6		1	10
	행정·녹지		3						3
	행정·환경		1	1					
	행정·시설		16	15					1
	전산·방송통신		1	1					
	농업·녹지		3	2		1			
	농업·수의		1			1			
	행정·사회복지·농업		4						4
	행정·사회복지·시설		1						1
	행정·세무·농업		8	4					4
	행정·세무·시설		3	3					
	행정·세무·전산·농업		3	1				1	1
	행정·전산·농업		1					1	
	행정·전산·방송통신·시설		3			1			2
	공업·환경·보건		1	1					
	행정·공업·시설		5	4					1
	행정·농업·녹지		3	1		1			1
	행정·농업·수의		1						1
	행정·농업·시설		4	1					3
	행정·해양수산·시설		2	2					
	행정·보건·간호		4		3				1
	행정·시설·환경		2	1					1
	행정·해양수산·보건		3					1	2
	보건·의료기술·간호		3		3				
	행정·공업·환경·시설		3	3					
	행정·농업·녹지·환경		2	1					1
	행정·보건·간호·의료기술		1		1				

구분	직급별 기관별	합계	본청	직속기관		의 회 사무과	읍	면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일 반 직	7급 소계	185	89	19	12	4	9	52
	행정	20	14		1	2	1	2
	세무	2	2					
	전산	1	1					
	사회복지	9	2				1	6
	숙기	1				1		
	공업	2	2					
	농업	1			1			
	녹지	2	2					
	해양수산	3	3					
	시설	16	11				1	4
	의료기술	4		4				
	보건	2		2				
	보건진료	6		6				
	환경	2	2					
	수의	2			2			
	운전	11	2	2			2	5
	행정·세무	5	3					2
	행정·사회복지	6	5					1
	행정·공업	3	2		1			
	행정·농업	16	4				2	10
	행정·시설	16	12					4
	행정·환경	2	2					
	행정·방송통신	1						1
	공업·환경	1	1					
	농업·농촌지도사	3			3			
	농업·수의	1			1			
	보건·약무	1		1				
	보건·환경	1		1				
	행정·세무·농업	4	1				1	2
	행정·세무·시설	4	2					2
	행정·전산·농업·방송통신	4	1			1		2
	행정·전산·시설	2	2					
	행정·농업·녹지	4	3					1
	행정·농업·농촌지도사	2			2			
	행정·농업·보건	1						1
	행정·농업·시설	7	4					3
	행정·농업·해양수산	1						1
	행정·농업·환경	2						2
	행정·환경·시설	2	1					1
	행정·공업·시설	2	2					
	행정·보건·환경	3	1				1	1
보건·간호·의료기술·식품위생	3		3					
행정·공업·보건·환경	3	2					1	
통신운영	1					1		

구분	기관별 직급별	합계	본청	직속기관		의 회 사무과	읍	면
				보건소	농 업 기술센터			
일 반 직	8급 소계	147	64	33	5	2	3	40
	행정	14	7			2		5
	세무	1	1					
	사회복지	6	2				1	3
	행정·농업·방호	1			1			
	공업	1			1			
	해양수산	2	2					
	보건	12	2	10				
	간호	1		1				
	의료기술	9		9				
	보건진료	5		5				
	식품위생	1		1				
	환경	1	1					
	시설	10	6					4
	행정세무농업시설관리	1	1					
	운전	7	1		1			5
	행정·세무	3	3					
	행정·사회복지·시설	8	3				1	4
	행정·전산	2	2					
	행정·전산·농업	11	2		2			7
	행정·해양수산·시설·방 재안전	5	3					2
	행정·시설	9	9					
	전산·방송통신	1	1					
	행정·공업·환경	4	4					
	농업·녹지	4	4					
	행정·보건·간호	4	1	3				
	약무·보건	1		1				
	행정·세무·농업	8	2					6
	행정·농업·시설	4	2					2
	행정·보건·환경	5	2				1	2
	행정·공업·시설	3	3					
	보건·간호·의료	3		3				

구분	직급별 기관별	합계	본청	직속기관		의 회 사무과	읍	면
				보건소	농 업 기술센터			
일 반 직	9급 소계	120	75	4	12	1	4	24
	행정	21	14		2	1	2	2
	사회복지	18	7				1	10
	환경	2	2					
	공업	5	5					
	해양수산	1	1					
	보건	2	2					
	운전	2						2
	행정·세무	5	5					
	행정·사회복지	9	5				1	3
	행정·농업	8	1		5			2
	행정·시설·방호	18	18					
	농업·녹지·시설	2	2					
	농업	2			2			
	보건·간호	3		3				
	행정·세무·농업	1						1
	행정·전산·통신	3	2		1			
	행정·세무·시설	4	4					
	행정·사회복지·농업	1						1
	행정·농업·녹지	7	3		2			2
	행정·환경·시설 ·방재안전	5	4					1
보건·의료기술·간호	1		1					

구분	직급별 기관별	합계	본청	직속기관		의 회 사무과	읍	면
				보건소	농 기술센터			
별 정 직	별정직 계	3	1			2		
	5급 상당 소계	1				1		
	행정·별정	1				1		
	6급 상당 소계	2	1			1		
	비서	1	1					
	의회전문위원	1				1		
연 구 직	연구직 계	2	2					
	학예연구사	1	1					
	기록연구사	1	1					
지 도 직	지도직 계	25			25			
	농촌지도사	25			25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8. 6. 19] [대통령령 제28977호, 2018. 6. 19,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자치분권과) 02-2100-380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법」 제59조·제90조와 제11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대강과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구와 정원의 관리목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이하 "기구"라 한다)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을 관리할 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소관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여건·업무의 성질과 양 등에 따라 정원을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2. 지방행정기관의 조직은 서로 기능상의 중복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3. 지방행정기관의 기능과 업무량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에 따라 지방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도 조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명의 연간 사무량이 250일 이상인 사무의 경우에는 정원으로 책정되지 아니한 인력을 배치하여 이를 처리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청소·경비 등 단순노무와 관련된 사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기준인건비제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20.>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요,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매년 기준인건비를 산정하고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3. 5., 2014. 11. 19., 2017. 7. 26., 2018. 2. 20.>

③ 제2항의 기준인건비의 구성요소, 산정방법 등 기준인건비의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3. 5., 2014. 11. 19., 2017. 7. 26., 2018. 2. 20.>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인건비 운영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기준인건비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3. 5., 2014. 11. 19., 2017. 7. 26.>

[제목개정 2014. 3. 5.]

제5장 지방공무원의 정원

제22조(정원책정의 일반기준) ① 정원은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직급을 정하여 책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 4. 10., 2013. 12. 4.>

1.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수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는 업무의 성질·난이도·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직급별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3. 1개의 직위에는 1개의 직급을 부여한다. 다만, 업무의 성질상 일반관리업무가 전체업무의 100분의 50을 넘는 직위는 동일계급 내에서 행정직과 다른 일반직의 복수의 직렬로 할 수 있으며, 업무의 성격이 특수하거나 1개의 직위에 2개 이상의 이질적인 업무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4개의 직렬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복수의 직렬로 할 수 있다.
4. 1개의 직위에 대하여는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직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일반직공무원을 갈음하여 별정직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한 직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1개의 직위에 일반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일반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동안 그 직위에 상응하는 직급의 정원을 결원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6. 경제자유구역청이 법 제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함으로 설치된 경우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한정하여 정원을 책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4. 10.>

1. 시·도의 경우 : 본청, 의회사무처, 합의제행정기관,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경제자유구역청
2. 시·군·구의 경우 : 본청, 의회사무국·사무과, 합의제행정기관,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자치구가 아닌 구, 읍·면·동과 그 출장소

제24조(정원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08. 7. 3.>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의 적정 여부와 정원의 증원과 감축현황을 조사·확인하여야 하고, 시·도지사는 그 조사·확인결과를 지방자치단체별, 기관별, 직급별, 직렬별로 종합

작성한 후 다음 달 말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새로운 증원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의 범위에서 자체조정을 통하여 이에 대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 대상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 1.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된 분야의 인력
- 2. 유사·중복되거나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구에 소속된 인력
- 3. 업무의 성질상 법인, 그 밖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분야의 인력

④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해당 시·도와 관할 시·군·구간 또는 관할 시·군·구 상호간의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조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은 가능한 한 그 정원이 조정되는 지방자치단체로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9.>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원의 관리기관별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29조(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08. 7. 3.>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 2. 본청·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5. 합의회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 7. 3., 2013. 12. 4.>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2. 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 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6조(기구와 정원조례의 제안과 의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해당 지방의회에 제안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구와 정원의 조정으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경비를 나타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안한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할 때 지방행정조직의 합리적 운용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기구를 축소하거나 기구를 하나로 묶어서 합치거나 폐지하여 합치는 것, 정원을 감축하는 것을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제1항에 따라 제안된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행정조직의 안정적 운용과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될 수 있는 대로 빠른 시일내에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7조(기구와 정원규칙의 제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칙을 제정·개정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는 이를 공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규칙의 입법예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나 정원의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규칙의 제정·개정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거나 기구·정원의 감축 또는 하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지만 상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입법예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 7. 3.>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와 정원의 조정으로 추가로 경비가 드는 조례안을 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하는 경우 그 추가로 드는 경비를 나타내야 한다.



[별표 3] <개정 2018. 6. 19.>

**시·군·구의 기구설치 및 직급기준**

1. 실·국의 설치기준(제13조제1항 관련)

구 분		실·국의 수	
시	인구 10만 미만	1개 이상 3개 이하	
	인구 10만 이상 15만 미만	1개 이상 3개 이하	
	인구 10만 이상 15만 미만 (법 제7조제2항제1호의 도농복합형태의 시)	2개 이상 4개 이하	
	인구 15만 이상 20만 미만	2개 이상 4개 이하	
	인구 20만 이상 30만 미만	3개 이상 5개 이하	
	인구 30만 이상 50만 미만	4개 이상 6개 이하	
	인구 50만 이상(구를 설치하지 아니한 시)	5개 이상 7개 이하	
	인구 50만 이상 70만 미만(구를 설치한 시)	3개 이상 5개 이하	
	인구 70만 이상 90만 미만(구를 설치한 시)	4개 이상 6개 이하	
	인구 90만 이상 100만 미만(구를 설치한 시)	5개 이상 7개 이하	
	인구 100만 이상 120만 미만(구를 설치한 시)	6개 이상 8개 이하	
	인구 120만 이상(구를 설치한 시)	7개 이상 9개 이하	
군	인구 10만 미만	1개 이상 3개 이하	
	인구 10만 이상 15만 미만	1개 이상 3개 이하	
	인구 15만 이상 20만 미만	2개 이상 4개 이하	
	인구 20만 이상	3개 이상 5개 이하	
구	특별시의 자치구	인구 50만 미만	4개 이상 6개 이하
		인구 50만 이상	4개 이상 6개 이하
	광역시의 자치구	인구 10만 미만	1개 이상 3개 이하
		인구 10만 이상 15만 미만	2개 이상 4개 이하
		인구 15만 이상 50만 미만	2개 이상 4개 이하
		인구 50만 이상	3개 이상 5개 이하

【 별 지 】 입 법 예 고

##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견	비고

하동군 공고 제2018-833호

## 하동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하동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7일

###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
2. 개정 이유
  -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규제 완화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이 2017.12.29.자로 일부 개정되어 개정된 사항을 조례 반영
3. 주요 내용
  - 제1조 중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5의2 “제9호”를 “제9호·제10호”로 개정(안 제1조)
  - 제2조를 제3조로 하고, 제2조 신설(안 제2조)
    - 음식판매자동차 규모·유형별 세부기준 정의 신설
  - 종전의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9호”를 “제9호·제10호”로, “휴게음식점영업등”을“음식판매자동차 영업”으로 개정하여 안 제2조 정의에 부합하게 조문 개정(안 제3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 전용도로 추가 확대하여 규제 완화(안 제3조제2호)
  - 음식판매자동차 영업할 수 있는 장소 등 신설(안 제3조제5호)
    -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신청하여 지정하는 장소 : 군수가 정하는 장소의 운영 주체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 제3조(종전의 제2조)제6호(종전의 제5호) 중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등”을“음식판매자동차 영업”으로 개정(안 제3조제6호)

○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령 준용 신설(안 제4조)

4. 의견 제출

○ 이 자치 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18년 8월 16일까지 하동군(보건소 ☎880-2355, FAX 880-6620)에 **【별지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붙임 하동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별지서식 포함)

【별지】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견	비고

하동군 조례 제 호

하동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9호”를 “제9호·제10호”로 한다.

제2조를 제3조로 하고,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음식판매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제1호·제2호 및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1호·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소형·경형특수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종전의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9호”를 “제9호·제10호”로,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가목 중 “휴게음식점영업등”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휴게음식점영업등”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로서 군수가 휴게음식점영업등”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 전용도로로서 군수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신청하여 지정하는 장소: 군수가 정하는 장소의 운영주체와 체결한 사용 계약에 관한 서류

제3조(종전의 제2조)제6호(종전의 제5호) 중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5의2 제9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lt;신 설&gt;</p>	<p>제1조(목적) ----- ----- 제9호 · 제10호----- ----- -----.</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음식판매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제1호·제2호 및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1호·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소형·경형특수자동차를 말한다.</p>
<p>제2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5의2 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u>휴게음식점영업등</u>"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와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p> <p>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p> <p>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신고를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p>	<p>제3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 ----- 제9호 · 제10호----- ----- "<u>음식판매자동차 영업</u>"----- ----- -----.</p> <p>1 . ----- -----</p> <p>가. ----- -----</p>

설을 매수·임차하거나 그 경  
영을 수탁한 자(이하 이 호에  
서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  
업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  
설업자 또는 시설 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신고증 등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  
설운영자와 체결한 해당 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도로법」 제23조에 따라  
군수가 도로관리청인 도로를 말  
한다)로서 군수가 휴게음식점영  
업등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  
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  
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인정하는 도로:  
「도로법 시행규칙」 제26조제3  
항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증 등  
도로를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  
는 서류

3.·4. (생략)

<신 설>

-----  
-----  
-----  
----- 음식판매자동  
차 영업-----  
-----  
-----  
-----  
-----

나. -----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  
-----  
-----

2 .  
-----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  
조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 전용  
도로로서 군수가 음식판매자동차  
영-----  
-----  
-----

3.·4. (현행과 같음)

5.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는 영  
업을 하려는 자가 신청하여 지정  
하는 장소: 군수가 정하는 장소  
의 운영주체와 체결한 사용 계약



5. 그 밖에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그 시설 또는 장소를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신 설>

에 관한 서류

6. -----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  
 -----  
 -----  
 -----  
 -----  
 -----  
 -----  
 -----  
 -----

제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다.

하동군 공고 제 호

하동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하동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31일

하 동 군 수

-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 2. 제안 이유 : 법령의 근거 없는 위원회 통합 운영 규정을 삭제하여 위원회의 전문성 및 독립성 보장하기 위함
- 3. 주요 내용 : 법령의 근거 없는 위원회 통합 운영 내용 삭제 (안 제3조제3호)
- 4. 의견 제출 : 이 자치 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18년 8월 21일까지 하동군(참조 : 기획조정실, 전화880-2012~5, FAX 880-2019, iciw2001@korea.kr)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붙임 1. 하동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별표, 별지서식 포함)
- 2. 신구조문대비표, 관련법령 등

**【별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견	비고

하동군 공고 제 호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일

하 동 군 수

-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2. 제안 이유 : 법령의 근거 없는 보조금 교부 제한 사유 삭제
- 3. 주요 내용 : 법령의 근거 없는 보조금 교부 제한 사유 삭제(안 제21조제4항 및 제 29조)
- 4. 의견 제출 : 이 자치 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18년 8월 22일까지 하동군(참조 : 기획조정실, 전화 880-2025, FAX 880-2019, H9409151@korea.kr)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붙임 1.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2. 신구조문대비표 등

**【별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견	비고

하동군 공고 제 호

## 하동군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하동군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제7 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일

###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 제안 이유 : 유명무실화된 조례의 폐지
3. 주요 내용 : 하동군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폐지
4. 의견 제출 : 이 자치 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18년 8월 22일까지 하동군(참조 : 기획조정실, 전화 880-2025, FAX 880-2019, H9409151@korea.kr)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붙임 하동군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별지】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건	비고

하동군 조례 제 호

## 하동군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하동군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 공고 제 호

## 하동군 구재봉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하동군 구재봉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년 8 월 2 일

###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구재봉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2. 제안 이유 : -구재봉 자연휴양림 내 목재문화체험장 개장 및 목공체험프로그램운영에 따른 사용료 및 체험료에 관한 기준 마련  
- 비현실적인 모노레일 이용료 조정  
- 저렴한 숙박시설사용료 조정
3. 주요 내용 : 하동군 구재봉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4. 의견 제출 : 이 자치 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18 년 8월 22 일까지 하동군(참조 : 산림녹지과, 전화 880-2489, FAX 880-2469, [enigma9688@korea.kr](mailto:enigma9688@korea.kr))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붙임 1. 하동군 00000 조례(규칙) 일부개정조례(규칙)안(별표, 별지서식 포함)
- 2. 신구조문대비표, 관련법령 등

【별지】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견	비고

하동군 공고 제 호

## 하동군 삼화 에코하우스 관리 · 운영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하동군 삼화 에코하우스 관리 ·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제7 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년 8 월 2 일

###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삼화 에코하우스 관리 · 운영 조례
2. 제안 이유 : 인권위원회 권고로 인한 정신장애인 관련 조항 삭제
3. 주요 내용 : 하동군 삼화 에코 하우스 관리 · 운영 조례 일부개정
4. 의견 제출 : 이 자치 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18 년 8월 22 일까지 하동군(참조 : 산림녹지과, 전화 880-2489, FAX 880-2469, [enigma9688@korea.kr](mailto:enigma9688@korea.kr))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붙임 1. 하동군 00000 조례(규칙) 일부개정조례(규칙)안(별표, 별지서식 포함)  
2. 신구조문대비표, 관련법령 등

【별지】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견	비고

하동군 공고 제 2018-853호

## 하동군 산촌생태마을 시설 민간위탁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하동군 산촌생태마을 시설 민간위탁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년 8 월 2 일

###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산촌생태마을 시설 민간위탁 운영 조례
2. 제안 이유 : 산촌 생태마을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 활성화 도모
3. 주요 내용 : 산촌생태마을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4. 의견 제출 : 이 자치 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18 년 8월 22 일까지 하동군(참조 : 산림녹지과, 전화 880-2489, FAX 880-2469, [enigma9688@korea.kr](mailto:enigma9688@korea.kr))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붙임 1. 하동군 00000 조례(규칙) 일부개정조례(규칙)안(별표, 별지서식 포함)  
 2. 신구조문대비표, 관련법령 등

【별지】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견	비고

하동군 공고 제2018 - 738호

# 공 고

수산업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면허한 어장에 대하여 수산업법시행령 제 21조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일

## 하 동 군 수

### □ 어업면허 처분사항

면허번호	어업의 종류	양식방법	품종	어장 위치	면적 (ha)	면허일자	면허기간	어업권자	비고
계					34.5				
하동양식 제44호	패류양식어업	살포식	바지락	진교면 술상리지 선	10	2018.07.02	2018.07.09 2028.07.08	술상어촌계	하동양식 제6호 재개발
하동양식 제45호	패류양식어업	살포식	바지락	진교면 술상리지 선	5	2018.07.02	2018.07.09 2028.07.08	술상어촌계	하동양식 제7호 재개발
하동양식 제46호	패류양식어업	살포식	바지락	금남면 대치리지 선	9.5	2018.07.02	2018.07.09 2028.07.08	대치어촌계	하동양식 제8호 재개발
하동양식 제47호	패류양식어업	살포식	바지락	금남면 노량리지 선	10	2018.07.02	2018.07.09 2028.07.08	구노량어촌계	하동양식 제9호 재개발

### □ 어업의 제한 또는 조건

- 수산관계법령을 준수하지 않을 시에는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에 의거 어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으며 시설물은 본인 부담으로 철거 하여야함.



- 국립공원 협의면적을 초과하여 무단으로 점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함.
- 어업기간 중 해양쓰레기(스티로폼, 폐어구 등) 및 폐기물 발생 등에 의한 해양 오염이나 해상공원 경관훼손을 방지하여야 하며, 정기적인 정화활동(어장 및 인근바다)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함.
- 연안어선의 항로 및 인근 어장과와의 분쟁이 없도록 하며, 지선 주변에 어구류 등을 무단 적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협의기간 만료 15일전에 기간연장 협의를 득하여야 하고, 연장신청이 없는 경우 본 협의는 효력을 상실하게 됨.
- 본 사업으로 인하여 공익상 지장이 있거나 협의내용 및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협의를 취소하고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으며, 공원관리상 필요한 보완요구 사항은 즉시 이행하도록 하여야 함.

하동군 전통 야시장 내 이동판매대 식품위생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 14의 제2호 사목과 제8호가목5)에 따라 위임된 시설기준을 정하여 전통시장의 위생수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2. “전통 야시장”이란 하동군 전통시장 구역 내 하동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지정한 지역으로 상설 야시장을 운영하는 곳을 말한다.
3. “이동판매대”란 전통 야시장에서 식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군수가 승인한 것을 말한다.
4.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에 따른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말한다.
5.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 나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전통 야시장에서 이동판매대 형태로 본 규칙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및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자에게 적용한다.

제4조(시설기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세부 시설기준은 별표 1, 식품접객업의 세부 시설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신고 등) ① 제3조에 따라 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식품 영업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받은 자가 폐업을 하려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영업을 폐업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이 규칙에 따른 시설기준 특례를 받아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조건을 부여할 수 있고, 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설기준 특례 적용을 배제한다.

제6조(영업조건 부여) ① 이 규칙을 적용 받아 영업할 경우에는 지정된 영업기간과 별표 1 이동판매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특례 시설기준, 별표 2 이동판매대 식품접객업의 특례 시설기준, 별표 3 위생관리 매뉴얼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영업기간은 군수와 시장번영회장과 영업자가 협약한 계약기간으로 하되 계약기간 만료 시 폐업 신고하거나 갱신하여야 한다.

제7조(영업신고 취소) 제6조의 영업 조건 또는 영업기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적용특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 신고를 취소한다.

1. 군수, 시장번영회장, 이동판매대 운영자간 체결한 협약서의 질서유지 의무를 3회 이상 위반 및 계약기간 종료 시
2. 체결한 협약서의 이동판매대 운영자 외 타인에게 영업을 하게 한 때
3. 별표 3의 위생관리 매뉴얼 3회 이상 위반 시
4. 집단 식중독 환자 2인 이상 발생 시
5. 그 밖에 관계기관(부서)으로 부터 이 영업과 관련된 법령 위반으로 통보 시

제8조(적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에 따른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전통 야시장 내 이동판매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특례 시설기준  
(제4조 관련)

**1. 건물의 위치 등**

- 가. 즉석판매제조·가공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은 독립된 건물로 분리 또는 구획 없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 되어야 한다.
- 나. 전통시장 내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건물의 구조와 자재는 식품의 특성에 따라 적정온도 유지로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여야 하며, 자연환기 등 환기가 잘 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다. 전통시장의 시설 안에서 이동판매 형태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이동판매 구조와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오염시키지 아니한 장소에 위치하여야 한다.

**2. 작업장 : 식품의 제조·가공시설이 설치된 제조·가공실을 두어야 한다.**

- 가. 식품의 제조·가공시설에 기구·기계류 등을 설치하여 전통시장 시설 안에서 이동판매형태의 시설 등을 갖추어 영업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각 시설과 구분(선·줄 등에 의하여 구별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하고 제조·가공 시 발생하는 악취, 매연, 증기 등을 자연환기 등 환기시키기에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나. 작업장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전통시장 내에서는 바닥 설치 시 청소하기 용이한 내수처리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세척수 등을 보관하는 용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 다. 작업장 배수구에는 덮개 등을 설치하여 쥐, 바퀴 등 해충이 들어오지 못하여야 한다.

**3. 식품취급시설 등**

- 가. 식품을 제조·가공하는데 필요한 기계·기구류 등 식품취급시설은 식품의 특성에 따라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가공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나. 식품취급시설 중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 재질로 세척이 쉽고 살균·소독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 다.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 및 보관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급수시설**

- 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나. 전통시장 시설 안에서 이동판매 형태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행위를 할 경우 가.의 규정을 준용한다.
- 다. 나.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제조·가공에 필요한 수돗물 등 사용량이 많이 필요로 하는 식품은 오수 등을 처리할 수 있는 용기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5. 판매시설

- 가. 전통시장 구역 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판매시설은 작업장으로부터 100미터 내의 이동형판매대를 판매시설로 사용할 수 있다.
- 나. 식품을 위생적으로 유지·보관할 수 있는 진열·판매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식품 등은 보관 기준에 따라 진열·판매 되어야 하고, 진열·판매대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을 하여 진열·판매할 경우 제외한다.
- 다. 가.목의 판매시설(이동판매대)의 경우 군수, 전통시장번영회장, 이동판매대 운영자 간 체결한 협약서 계약 기간 내 한시적 존치한다.

6. 화장실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인근에 종업원 또는 손님이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2]

전통 야시장 내 이동판매대 식품접객업의 특례 시설기준  
(제4조 관련)

1. 영업장

- 가. 식품접객업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은 독립된 건물로 분리 또는 구획 없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 나. 건물의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식품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 다. 연기·유해가스 등이 발생하지 않는 등 환기가 잘 되어야 한다.

2. 조리장

- 가. 조리기구 및 판매대 등은 식품위생상 안전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 나. 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냉장·냉동시설을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 다. 음식물류 폐기물은 오물·악취 등이 누출되지 않도록 뚜껑이 있는 용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1일의 영업시간에 발생할 수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충분한 크기의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 라. 조리장 바닥에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 마. 조리장에는 주방용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소독기를 설치하거나 열탕세척 소독시설(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 등이 살균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이하 같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주방용 식기류를 기구등의 살균·소독

제로만 소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조리장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 3. 급수시설

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식품접객업 영업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조리·판매에 필요한 수돗물 등 사용량이 많이 필요로 하는 식품은 오수 등을 처리할 수 있는 용기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4. 판매시설

가. 전통시장 구역 내 식품접객업 판매시설은 조리장으로부터 100미터 내의 이동형 판매대를 판매시설로 사용할 수 있다.

나. 이동형 판매대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자재로 설치를 하여야 한다.

다. 가.목의 판매시설(이동판매대)의 경우 군수, 전통시장번영회장, 이동판매대 운영자 간 체결한 협약서 계약 기간 내 한시적 존치한다.

### 5. 화장실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인근에 종업원 또는 손님이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위생관리 매뉴얼  
(제6조 관련)

1. 원재료

- 부패, 변질되거나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재료는 사용금지
- 냉장식품을 보관하는 경우 아이스박스, 아이스팩 냉매를 사용
  - ※ 얼음 사용금지 : 얼음은 녹아서 식재료를 오염시킬 수 있음

2. 조리식품

- 식품은 뚜껑 있는 위생용기에 보관하여 외부공기에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
- 즉시 소비가 가능한 양만큼만 조리하며, 덜어먹을 수 있는 개인 용기 비치
- 가열 보관 식품은 항상 60℃이상 유지하여 재활용 유지는 사용금지
- 해산물 등 살아있는 식품은 내장 제거 후 수돗물로 충분히 세척 후 사용

3. 음용수

- 물은 반드시 수돗물(또는 먹는 물)을 사용하되 1회 사용한 물은 재사용 금지
- 음용수를 담아 놓는 용기는 자주 세척·소독(1일 1회 이상)

4. 기구용기

- 칼·도마·행주·컵 등은 사용 후 반드시 세척·소독
- 전처리용(해산물 등), 조리식품용 조리기구(칼, 도마)는 구분하여 사용

5. 개인위생관리

- 위생모, 위생복을 착용하며 오염될 경우 수시로 갈아입을 수 있도록 한다.
- 감기, 손 상처 등 질병이 있는 경우 조리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 식품을 취급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은 영업 시작 전 또는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미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6. 주변환경

- 뚜껑 있는 음식물 쓰레기통을 반드시 사용하며 수시로 처리한다.
- 식품을 취식하는 판매대 주변은 항상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한다.

【별지 제1호 서식】

# 식품 영업 신고서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	H.P :
영업소	명칭(상호)		영업의 종류	<input type="checkbox"/> 즉석판매제조·가공업 <input type="checkbox"/> 일반음식점영업 <input type="checkbox"/> 휴게음식점영업 <input type="checkbox"/> 체과점영업
	소재지	(☎ )		
	영업기간		영업장면적	

「하동군 전통 야시장 내 이동판매대 식품위생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 규정」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하 동 군 수 귀하

구비서류	1) 제6조제2항에 따른 협약서 1부. 2) 위생교육 이수증 1부. 3) 건강진단 결과서 1부. 4)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지하수를 사용할 경우) 5) 제조·가공하려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즉석판매제조·가공업 경우) 6)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 검사증명서 1부.	수수료 28,000원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유의사항	1) 영업기간은 협약서의 사용 계약기간까지입니다. 2)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위생관리 매뉴얼 및 식품위생법령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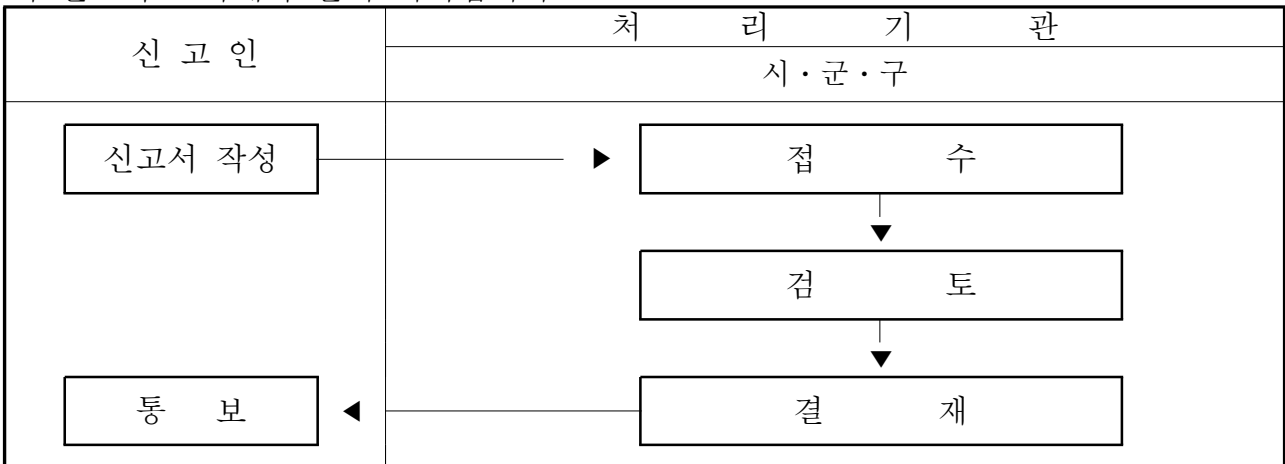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 서식】

<b>영업의 폐업 신고서</b>				처리기간 즉 시
신 고 인	① 성 명		② 생년월일	
	③ 주 소			
영 업 소	④ 종 류		⑤ 업 소 명	
	⑥ 소 재 지			
⑦ 폐 업 일		년 월 일		
⑧ 사 유				
⑨ 분 실 사 유				
<p>「하동군 전통 야시장 내 이동판매대 식품위생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 규정」 제5조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고인 (서명 또는 인)</p>				
<b>하 동 군 수 귀 하</b>				
※ 구비서류: 영업신고증				수수료
※ 안 내: 영업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⑨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없 음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210mm×297mm [일반용지60g/m<sup>2</sup>(재활용품)]

#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 사항 직권말소 처분에정 공시송달공고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 사항에 대하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직권말소 예정사항을 등기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0일

하 동 군 수



- 제 목 :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 공시송달 공고
- 근 거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영업의 신고 등)제4항
- 직권말소처분예정일자 : 2018. 7. 27.(금)
- 직권말소처분 예정업소 내역

업 종	신고번호	업소명	대표자	업소소재지	행정조치 원인	처분내용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20090621005	혜진라이프	성**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민다리길 65	사업자등록 폐업 (2010. 6. 30.)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20110621056	오리엔탈	차**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민다리길 70	사업자등록 폐업 (2013. 6. 30.)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20100621049	금양당 건강식품	박**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진양로 6	사업자등록 폐업 (2013. 12. 31.)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20110606223	사천누리 녹즙	신**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민다리길 37	사업자등록 폐업 (2016. 1. 15.)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20140621056	금호상사	이**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진교중앙길 9	사업자등록 폐업 (2016. 1. 29.)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20110621085	금산	김**	경상남도 하동군	사업자등록 폐업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인삼사		하동읍 시장1길 7	(2015 1. 26.)	
	20080592473	미래	이**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시장1길 4	사업자등록 폐업 (2016. 12. 31.)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공고기간 : 2018. 7. 11. ~ 2018. 7. 26.(15일간)

고지사항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에 따라 **2018년 7월 26일까지 의견이 없을 경 우 상** 기 영업신고(등록) 사항에 대해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직권말소 된 내용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18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정당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 처분청 또는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피고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본 행정조치(처분)에 대한 문의

- 하동군(보건소) 안전위생담당 (☎ 055-880-2354)

하동군 공고 제2018- 호

하동군 노인·장애인 종합복지관 수탁운영법인 모집 공고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하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하동군 노인·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하동군 노인·장애인 종합복지관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할 수탁운영법인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일

하 동 군 수

1. 위탁대상 시설

- 가. 시 설 명 : 하동군 노인·장애인 종합복지관
- 나. 위 치 : 하동읍 하동읍 중앙로 89
- 다. 시설규모 : 건축면적 1,792㎡(연면적 5,618㎡)
- 라. 주요시설

구분	층별	면적	주 요 시 설
합계		5,618.21㎡	
본관	1층	885.86㎡	안내/접수, 카페테리아, 보호/공동작업장, 상담실, 가족탕(3), 수중치료실, 목욕탕
	2층	1,539.82㎡	부모대기실, 물리치료실(2), 재활운동실, 주간보호실, 프로그램실, 사회교육실, 방과후교실, 언어치료실(2), 오감체험실, 건강교실, 소교육실, 식당, 주방

구분	층별	면적	주 요 시 설
본관	3층	1,395.47㎡	자원봉사자실, 상담실, 관장실, 통합사무실, 문서고, 대회의실, 소회의실, 주간보호센터, 원격의료지원실, 세탁실, 온돌휴게실, 취미교실, 정보화교실
	4층	1,262.79㎡	대강당, 다목적휴게실, 당구장, 체력단련실, 시각장애인전용탁구장, 노래연습실

2. 위탁기간 : 5년

3. 위탁의 범위

- 가. 하동군 노인·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 및 관리
  - 하동군 노인·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규정한 사무
- 나. 기타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위탁자가 정하는 사업
- 다. 하동군 노인·장애인 종합복지관의 공유재산과 물품관리

4. 신청자격 ※ 아래조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가. 공고일 현재 사회복지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노인·장애인 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사업수행능력, 재정능력, 공신력 및 전문성을

갖춘 법인

- 나. 공고일 현재 법인정관에 노인 및 장애인 복지사업에 관련된 목적사업 또는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이 가능한 법인
- 다. 수탁법인 모집공고 시 제시한 위탁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법인
- 라. 수탁기간 중 매년 자체부담액(법인전입금)을 최소 3천만원 이상 부담 가능한 법인
- 마. 사회복지시설 운영 실적이 최근 3년 이상 있어야 함.

5. 신청 제외대상

- 가. 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에 비리 또는 부실 운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에서 위탁 해지된 법인
  - 나. 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에 법인 및 법인 수탁시설이 사회복지사업법 또는 관련법령 위반으로 금고 또는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법인
  - 다. 법인대표 및 시설장(예정자)이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및 제35조에 의거 결격사유가 있는 법인
  - 라.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해 폐쇄 명령을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
  - 마. 지방세기본법 제65조(관허사업제한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없이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법인
  - 바. 타 법인 명의로 수탁을 받고자 하는 법인
  - 아. 기타 복지관의 안정적 운영에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법인
- ※ 수탁자 선정 후 발견 시, 수탁자 선정을 무효로 함

6. 수탁운영조건

- 가.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 위탁사무와 관련된 법령과 조례, 위·수탁계약서 및 기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제반사항 준수
  - 나. 위탁심사 사업 설명시 약정한 자부담금은 위수탁 협약서에 명시하고 수탁자는 매년 약정금을 출연하여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로 사용
  - 다. 하동군 노인·장애인 종합복지관은 통합 운영하며 팀(과)은 자율적으로 구성하되 종사자는 관장 포함 25명으로 운영. 세부사항은 하동군과 협의
  - 라. 수탁자는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을 준수하며, 관련 조항이 없을 경우 관련 법령을 준용하여 처리
  - 마. 보조금 이외의 추가 비용은 수탁자 부담으로 함
- ※ 단, 실비이용료는 수탁자 수입으로 하되, 복지관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실비이용료를 받는 사업의 자체비용 충당 및 당해 시설 이용자 복지증진에 사용하여야 함
- 바. 노인·장애인복지관을 목적사업 이외의 타 용도로 사용 금지
  - 사.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추후 「하동군 노인·장애인 종합복지관 위·수탁협약서」에 의함

8. 공고기간 및 신청서 접수

- 가. 공고기간 : 2018. 07. 11. ~ 07. 20.(10일간, 공휴일 포함)
  - 나. 접수기간 : 2018. 07. 18. ~ 07. 20.(3일간)
- ※ 접수는 근무시간(09:00~18:00)내에만 접수함. 토요일, 공휴일은 제외
- 다. 접수장소 : 하동군 주민행복과(☎055-880-2212, 2215)
  - 라. 접수방법 : 직접방문 접수(우편, 이메일, 택배 등 불가)

9. 심사일정 및 방법

- 가. 심사일시 : 2018. 07. 24.(화) 14:00
- 나. 심사장소 : 하동군청 소회의실(2층)

※ 사정에 따라 일정 변경될 수 있음

다. 심사내용 : 서류 및 사업내용 심사

라. 심사항목 : 수탁법인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계획의 전문성 및 타당성, 시설장 예정자 사업수행능력, 운영에 대한 의지 및 준비

마. 사업설명 : 발표시간 20분(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

바. 발 표 자 : 법인 임직원 또는 시설장 내정자가 하여야함

※ 불참 시 수탁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사. 발표순서 : 신청서 접수 순서

10. 선정 및 결과 발표

가. 선정방법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

나. 선정기준 : 심사 결과 고득점자 순 결정

1) 심사위원의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 60점 이상을 얻은 법인 중 최고 득점을 받은 법인이 협상대상 1순위이며, 결정통지를 무효화한 경우에는 차순위자와 협상 진행

2) 최고·최저 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만 제외함

다. 결과발표 : 하동군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지

※ 단독 응모한 경우에는 무효처리

※ 신청서류 중 사실과 다른 경우는 해당항목 “0”점 처리

11. 위·수탁협약 체결

가. 시 기 : 수탁법인 선정결과 공표일로부터 7일 이내

나. 장 소 : 하동군청 주민행복과(장애인복지담당)

다. 공 증 : 법무법인에 의뢰, 위·수탁협약서 공증절차 이행

12. 제출서류

가. 수탁운영신청서 - [붙임 1]

나. 각서 - [붙임 2]

다. 법인 재정부담 약정서 - [붙임 3]

라. 위탁심의자료 - [붙임 4]

마. 사업운영계획서 - [붙임 5]

바. 증빙서류 - [붙임 6]

1) 제출서류는 가~바 항 순서에 따라 A4 좌철 편철하여 13부(원본 1, 사본 12) 책자로 제출(신청서 접수시 제출), 제본시 반드시 세부 목차 및 각 하단에 페이지 표기

2) 사업설명 발표 요약자료(10분 내외)는 A4 좌철 제본하여 13부 제출하고 별도로 전산 파일 제출(USB 또는 이메일)하여야 함

- 발표일 3일전까지 제출

3) 모든 신청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이어야 함(단, 예금통장 잔고증명은 공고일 전일 기준)

## 13. 기타사항

가. 심의결과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나.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열·공람 및 추가 보완 서류를 제출할 수 없음.

다.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협약 체결 후에도 선정을 무효로 함.

라. 신청인은 관련법규 및 수탁자 신청자격조건 등을 숙지하고 현장을 답사한 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인의 책임으로 함.

마. 모집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하동군 홈페이지에 공고 및 접수자에게 개별통보 함.(기타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군의 결정에 따름)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 주민행복과 장애인복지담당(☎ 055-880-2211)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의문사항의 해석은 하동군의 해석에 따라야 함.





○○○○법인 ○○○○ 일반현황

□ 기본현황

법 인 명			주사무소 소재지	
			분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법인유형				
설립허가일			설립등기일	
전화번호 (팩스번호)			허가관청	
설립근거 및 목적	○근거 ○목적사업 ※ 개조식으로 작성			
주요연혁	○ ○ ※주요사항만 기재하고 필요시 별지 작성			
주요사업	○ ○ ※주요사항만 기재하고 필요시 별지 작성			
법인시설	○ 직영시설 :        개소 - 시설명 : ○ 수탁시설 :        개소 - 시설명 :			

※ 모든 첨부서류는 각 항에 페이지 기재할 것

【붙임 2】

각 서

- 법 인 명 :
- 소 재 지 :
- 대 표 자 :
- 생 년 월 일 :

상기 법인은 하동군 노인·장애인 종합복지관 수탁법인 공모 신청에 있어서 구비서류 및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만약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확인될 경우 신청의 무효 및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질 것입니다.

또한 하동군 수탁자선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수탁운영자로 선정될 경우 하동군과의 협약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2018. . .

법 인 명 : (직인)  
 대 표 자 : (인)

하 동 군 수 귀 하

【붙임 3】

## 법인재정부담 약정서

은(는) 하동군 노인·장애인 종합복지관 위탁운영법인으로 선정될 경우 하동군 보조금 외에 사업비 및 운영비 등 당초 약정한 법인전입금 약정액을 부담할 것을 승낙하며, 만일 복지관 운영 시 재정 형편 등으로 운영상 어려움이 있을 경우 재정 부담액외에도 복지관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 중 일정액을 법인부담금으로 지원할 것을 승낙하며, 필요한 제반 경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부담 및 지원 할 것을 확약합니다.

○ 법인 자부담 지원방법

(단위 : 천원)

구 분	부 담 액	지원시기	비 고
계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법 인 명 :  
 소 재 지 :  
 대 표 자 : (인)

하 동 군 수 귀하

- ※ 첨부: 1. 법인 부담 출연계획에 대한 이사회 의결서 사본 1부 ( 증빙서류:                   page)  
 2. 법인대표 인감 증명서 1부 (증빙서류:                   page)

# I 수탁자의 적격성

## 1. 법인의 유형 및 설립목적

가. 법인 유형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나. 법인 정관의 목적사업 및 내용

다. 이사회 의결 내용(사회복지사업을 하기로 의결한 내용)

일자	장소	참석인원	의결내용

증빙서류	page	법인 정관 사본, 법인 설립허가증 사본, 이사회 의결서 사본
------	------	-----------------------------------

## 2. 법인의 재산현황 (공고일 전일기준 법인명의분)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A+B)	순 자 산		
		계	부동산(A)	동산(B)
합계				
목적사업용 기본재산				
수 익 용 기본재산				
(기타재산) 보통재산				

- ※ 기본재산 범위 : ① 부동산
- ② 동산(예금)은 정관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 ③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편입된 재산
- ※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가액을 정관에 기재한 것만 인정
- ※ 불확실한 미래소득(후원금, 기부금 등)은 기본재산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3. 법인이사회 구성

가. 법인임원 현황 : 대표이사    명, 이사    명, 감사    명

연번	직 책	성 명	주 소	주민등록번호	최종학교	직 업	주요경력	자격증소유 (종류등급 등)

<b>증빙서류</b>	<b>page</b>	① 임원 이력서 및 특수 관계 부존재 각서 ② 자격 및 학위 전문 증빙(해당이상의 학력증명서 또는 학위수료증, 경력 증명서, 자격증사본 등)
-------------	-------------	-----------------------------------------------------------------------------------

나. 최근 3년간 이사회 개최 현황

구 분	개최일자	참석인원	회의안건	회의결과	사 업 반영여부	이 사 참석율
※ 정기 또는 수시(임시)로 구 분		이사 명 감사 명				%

<b>증빙서류</b>	<b>page</b>	최근 3년간 이사회 회의록 사본(회의록 기명날인 확인 요망) 법인의 사업계획서, 사업결과보고서, 이사회 회의 결과를 사업 반영정도 확인
-------------	-------------	--------------------------------------------------------------------------------

4. 법인의 사회복지 공모사업 참여 및 실적

구 분	명 칭	신청기관	사업내용	사업기간	수탁실적 (천원)

<b>증빙서류</b>	<b>page</b>	공모사업 수탁실적 증빙자료
-------------	-------------	----------------

5. 법인의 후원금 모금 실적(최근 3년간)

년 도	모 금 액	사 용 처			
		계	종 사 자 복 리 후 생	시 설 이 용 자 복 지 후 생	기 타
계					

증빙서류	page	후원금 모금실적 증빙자료
------	------	---------------

## II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 1-1 법인의 사회복지사업 전문성

※ 법인의 사회복지사업 전문성 분야 자율적으로 기술

### 1-2 법인의 운영의지

※ 시설운영에 대한 이념, 비전, 목표, 열의도 및 하동군 복지정책에 대한 이해가 드러나도록 기술  
 ※ 법인대표 또는 관장 내정자의 수탁시설 운영의지 관련 소견서 첨부

### 2. 시설장의 전문성

가. 시설장이 내정되어 있는 경우

1) 관장(내정자)의 인적사항

성 명 자 (한 자)	생년월일	주 소 적 (본 적)	주요경력	소지자격증	최종학력 (학과명)	공개채용 여부

증빙서류	page	이력서, 최종학력증명서
------	------	--------------

2) 관장(내정자)의 자격증 취득 현황 ※ 사회복지관련 자격증 기재

취득일자	자격증 종류	등급	시행기관

증빙서류	page	소지 자격증 사본
------	------	-----------

나. 시설장이 내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시설장 자격요건(사회복지사 자격 등급) 및 공개모집 여부를 포함한 구체적 채용계획 작성

3. 사업계획의 전문성 및 타당성

증빙서류	page	붙임5) 사업계획서(운영계획서)
------	------	-------------------

4. 최근 3년간 수탁중인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

증빙서류	page	보건복지부 평가결과 첨부
------	------	---------------

5. 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시 설 명	시 설 장	소 재 지	이용인원 (정원/현원)	종사자수	비 고 (이용대상)

6. 시설 운영의 전문성 강화 방안

※ 작성(안) 참조하여 자율적으로 작성

가. 조직 및 운영인력 구성

- 조직 및 인력구성의 방향

- 조직도 및 업무분장

나. 종사자 채용 및 전문인력 확보

- 직원확보계획

다. 시설 운영의 전문성 향상 방안

- 종사자 교육 및 훈련 계획

라. 내·외부 슈퍼비전 체계 구축 및 운용

- 내부 슈퍼비전 체계

- 외부 슈퍼비전 체계

마. 종사자 복리향상 방안

바. 업무 환경 개선 방안

- 개선목표

- 실행방안 및 수행체계

7. 복지부 보급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사용 및 사용예정 여부



법인명	시설명	시스템 사 용	시스템 사용예정

### Ⅲ 재정능력

1. 최근 법인 재무제표

증빙서류	page	법인의 재무제표서(결산서, 예산서 등) 제출 - 부채, 차입현황, 법인전입금 내역 포함
------	------	-----------------------------------------------------

2. 재정운영 및 투자계획의 타당성

가. 법인의 재정 안전성

1) 재산목록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A+B-C)	자 산			부 채(C)
		계	부동산(A)	동산(B)	
합계					
목적사업용 기본재산					
수 익 용 기본재산					
기타재산 (보통재산)					

※ 기본재산 범위 : ① 부동산 ② 동산(예금)은 정관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③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편입된 재산

※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가액을 정관에 기재한 것만 인정

※ 불확실한 미래소득(후원금, 기부금 등)은 기본재산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2) 재산 성질별 현황

가) 목적사업용 기본재산 :                    천원

○ 토 지

연번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등기부상)	공시지가/㎡	총가액 (천 원)	비고 (용도)
계							

증빙서류	page	비고란에는 현 이용상태를 구체적으로 작성, 부동산등기부등본과 공시지가 확인원 첨부
------	------	-----------------------------------------------

○ 건 물

연번	소재지	지목	면적(m <sup>2</sup> )	소유자 (등기부상)	지방세 과 표	총가액 (천 원)	비고 (용도)
계							

<b>증빙서류</b>	<b>page</b>	비고란에는 현 이용상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부동산등기부등본과 과표가 표기된 과세증명서 첨부
-------------	-------------	-----------------------------------------------------

○ 동 산(현금, 유가증권, 채권 등)

종 목	예치(금융)기관	금액(천원)

<b>증빙서류</b>	<b>page</b>	예금잔액증명서, 유가증권사본, 6개월간 입출금 내역서 공증증서로 첨부
-------------	-------------	----------------------------------------

나) 수익용 기본재산 :            천원

○ 토 지

연번	소재지	지목	면적(m <sup>2</sup> )	소유자 (등기부상)	연간수입 (천원)	총가액 (천 원)	비고 (용도)
계							

<b>증빙서류</b>	<b>page</b>	비고란에 현 이용상태를 구체적으로 작성, 부동산등기부등본과 공시지가 확인원, 임대계약서 사본 등
-------------	-------------	-------------------------------------------------------

○ 건 물

연번	소재지	지목	면적(m <sup>2</sup> )	소유자 (등기부상)	연간수입 (천원)	총가액 (천 원)	비고 (용도)
계							

<b>증빙서류</b>	<b>page</b>	비고란에 현 이용상태를 구체적으로 작성, 부동산등기부등본과 과표가 표기된 과세증명서 첨부
-------------	-------------	---------------------------------------------------

○ 동 산(현금, 유가증권, 채권 등)

종 목	예치(금융)기관	금액(천원)

증빙서류	page	예금잔액증명서, 유가증권사본, 6개월간 입출금 내역서 공증증서로 첨부
------	------	----------------------------------------

○ 기타 연간 수익사업 수입원(이자수입, 채권수입 등)

종 류	주요내용	금액(천원)

다) 보통재산 : 천원

종 목	주 요 내 용	금액(천원)

라) 부채현황 : 천원

종 목	내 용	금 액(천원)
계		

증빙서류	page	금융기관 부채증명서 등
------	------	--------------

2) 향후 5년간 수탁법인의 재정투자(부담)계획

※ 아래 서식 참조하여 작성

(단위 : 천원, %)

연도별	법인전입금 약 정 액	법인전입금 투자(부담) 계획								재정운영 총액 대비 법인부담율
		계		사무비(인건비등 )		재산조성비		사업비		
		예산	비율	예산	비율	예산	비율	예산	비율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3) 향후 수탁법인의 재정투자(부담)계획에 대한 재정확충 방안

구 분	금 액(천원)	비 고
계		
예) 예탁금 은행이자		

4) 법인의 재정운영 및 투자계획

※ 자율적으로 작성

3. 재정확충방안의 현실성과 타당성

가. 향후 3년간 수탁법인의 재정운영 계획(2017~2019)

※ 아래 서식 참조하여 작성

(단위 : 천원, %)

연도별	재 정 운 영 액							
	계		사무비(인건비등 )		재산조성비		사업비	
	예 산	비율	예 산	비율	예 산	비율	예 산	비율
계								
2017								
2018								
2019								

나. 법인의 재정확충 방안

※ 자율적으로 작성

4. 시설운영의 투명성 제고 방안

가. 법인의 예산관리

연도	재무회계규칙 준수사항 이행현황						
	출납기한	회계의 구분		예산 총계주의	예산 편성 및 결정		현금출납부, 총계정원장, 보조원장, 재산대장, 비품관리대장 작성비치여부 (전산회계프로그램에 의한 전자장부 인정)
	세입세출 출납사무 다음연도 2월말 완결	법인회계, 법인 수익사업회계, 시설회계 분리	법인 보유재산의 명의 (차량, 통장 등)	세입·세출 예산 계상여부	이사회 의결	관할관청 보고 (개시 5일 前)	
2015							
2016							
2017							

나. 법인의 예산규모

1) 세입

(단위 : 천원)

연도별	계	기본재산수입	수익사업수입	보조금수입	후원금수입	차입금	전입금	기타 (과년도수입, 이월금, 접수입)
계								
2015								
2016								
2017								

※ 연도 말 결산기준으로 작성 단, 2016년은 공고일 전일 기준

※ 구분 :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0조제3항 관련 [별표 1] 법인회계 세입예산과목에 준하여 작성

2) 세출

(단위 : 천원)

연도별	계	사무비	재산조성비	사업비	전출금	부채상환금	기타 (과년도지출, 잡지출, 예비비)
계							
2014							
2015							
2016							

※ 연도 말 결산기준으로 작성 단, 2016년은 공고일 전일 기준

※ 구분 :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0조제3항 관련 [별표 2] 법인회계 세출예산과목에 준하여 작성

<b>증빙서류</b>	<b>page</b>	법인회계 예·결산서(2015년~17년)
-------------	-------------	-----------------------

다. 법인의 회계집행 적절성(2015 ~ 2017년 공고일 전일 기준)

1) 법인 대상 회계감사 운영 실태

일 자	구 분	방 법	감 사 자(직함)	지적내용	처분결과	이행사항

※ 구 분 : 정기감사, 수시감사 등으로 구분

※ 방 법 : 자체감사, 공인회계사에 의한 법인 외부 회계감사 등을 기재

<b>증빙서류</b>	<b>page</b>	법인의 회계감사 보고서 사본
-------------	-------------	-----------------

2) 최근 3년간 법인에 대한 감사(지도·감독)

년 도	일 시	감사기관	지적사항	처분결과	이행사항
2015					
2016					
2017					

## IV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관계조성 능력

1. 지역사회 내 공신력 제고방안

※ 자율적으로 작성

2. 유관기관과의 협력관계 구축 방안

※ 자율적으로 작성

3. 지역사회 자원동원 방안

※ 자율적으로 작성

4. 지역사회 내 법인의 주된 사무소

가. 법인 주된 사무소 현황

소재지	규모(m <sup>2</sup> )	운영형태	상근직원명단 (담당업무)	허가사항	비고
	m <sup>2</sup> (지하 /지상 )				해당없음 (별도설치)

증빙서류	page	법인 주된 사무소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임대차계약서)
------	------	-------------------------------------

나. 법인의 조직 및 인원

1) 법인 조직도



2) 직원 현황

직위	성명	생년월일	주소지	근무기간	담당업무	주요경력	소지자격증	특수관계 여부

<b>증빙서류</b>	<b>page</b>	상근인력의 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4대보험 가입증명서, 법인직원대장, 직원급여대장 또는 법인 상근인력 존재를 증빙할 서류
-------------	-------------	---------------------------------------------------------------------

【붙임 5】

## 하동군 노인·장애인 종합복지관 사업운영계획서

※ 목차 및 페이지 작성

○○○법인

하동군 노인·장애인 종합복지관 향후 운영계획

1. 종합복지관 향후 운영 계획서

- 가. 향후 시설 운영의 비전
- 나. 향후 지역사회내 공신력 및 투명성 제고방안
- 다. 향후 유관기관과의 협력관계 구축방안
- 라. 지역의 당면문제 및 주 이용자의 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
- 마. 향후 3개년 중점 추진사항
- 바. 종사자들의 전문성 향상 방안
- 사. 시설 및 장비 관리 계획
- 아. 자원봉사자 현재 확보현황 및 향후 확보계획
  - ※ 자원봉사자 관리카드 사본 첨부

2. 향후 세부 사업계획서

- 작성요령 (2018 장애인복지사업 안내 참고)
  - 사업내용별로 구체적으로 구분 작성
  - 프로그램 운영은 개별 프로그램별로 구체적으로 작성
    - 기존 프로그램의 활성화 및 개선방안
    - 신규 프로그램의 도입 및 운영방안
    - 각종 예산의 절감 및 수익증대방안
    - 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방안
    - 이용자의 편의증진 방안
    - 장애인 소득증대 및 취업알선 방안
    - 소요예산과 예산조달 방법 등
  - ※ 종합복지관 운영규정 및 운영위원회 구성 현황 첨부

3. 운영에 따른 예산 계획서  
○ 2018년 세입세출예산서

(단위 : 천원)

구 분	세 입	세 출					산 출 내 역
		계	인건비	사업비	관 리 운영비	기타	
계							
운영비보조							
이용료수입							
자 채 부 담 금	법 인 전입금						
	후원금						
	기타수입						

※ 운영비 보조 : 위탁기관으로부터 운영에 필요한 보조내역 (국비, 지방비)  
자체부담금 : 법인전입금, 후원금 등 자체적으로 예산확보내역

○ 2019년 세입세출예산서

(단위 : 천원)

구 분	세 입	세 출					산 출 내 역
		계	인건비	사업비	관 리 운영비	기타	
계							
운영비보조							
이용료수입							
자 채 부 담 금	법 인 전입금						
	후원금						
	기타수입						

※ 운영비 보조 : 위탁기관으로부터 운영에 필요한 보조내역 (국비, 지방비)  
자체부담금 : 법인전입금, 후원금 등 자체적으로 예산확보내역

○ 2020년 세입세출예산서

(단위 : 천원)

구 분	세 입	세 출					산 출 내 역
		계	인건비	사업비	관 리 운영비	기타	
계							
운영비보조							
이용료수입							
자 채 부 담 금	법 인 전입금						
	후원금						
	기타수입						

※ 운영비 보조 : 위탁기관으로부터 운영에 필요한 보조내역 (국비, 지방비)  
 자체부담금 : 법인전입금, 후원금 등 자체적으로 예산확보내역

○ 2021년 세입세출예산서

(단위 : 천원)

구 분	세 입	세 출					산 출 내 역
		계	인건비	사업비	관 리 운영비	기타	
계							
운영비보조							
이용료수입							
자 채 부 담 금	법 인 전입금						
	후원금						
	기타수입						

※ 운영비 보조 : 위탁기관으로부터 운영에 필요한 보조내역 (국비, 지방비)  
 자체부담금 : 법인전입금, 후원금 등 자체적으로 예산확보내역

○ 2022년 세입세출예산서

(단위 : 천원)

구 분	세 입	세 출					산 출 내 역
		계	인건비	사업비	관 리 운영비	기타	
계							
운영비보조							
이용료수입							
자 체 부 담 금	법 인 전입금						
	후원금						
	기타수입						

- ※ 운영비 보조 : 위탁기관으로부터 운영에 필요한 보조내역 (국비, 지방비)
- 자체부담금 : 법인전입금, 후원금 등 자체적으로 예산확보내역
- ※ 2023년 6월분까지 작성

4. 하동군 노인·장애인 종합복지관 조직 및 인력확보 계획

○ 조직운영에 필요한 소요인력 확보계획 : (직원 확보계획/자격증 내역)

계	시 설 장	사무국장	1~3급	4~5급	기능·고용직
/	/	/	/	/	/

5. 하동군 노인·장애인 종합복지관 연간 운영비 자체부담 계획

가. 연간운영비 예상액 :                   천원

나. 운영비 자체 부담계획

(단위 : 천원)

계	보 조 금	자 체 부 담 내 역				비 고
		소 계	법인전입금	후 원 금	기 타	

- ※ 보조금 : 국비 및 지방비 포함.

6. 시설장 예정자 인적사항

성 명 자 (한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주요경력	소지자격	최종학력 (학과명)
		(등록기준지)			

※ 첨부서류 : 이력서, 최종학력증명서, 소지자격증사본, 경력증명서, 대표자 및 시설장 경력관련 증빙서류 일체

가. 근무경력

구 분	근무시설명	근무기간	근무경력	연 락 처	증빙자료 페이지수
	계		년 월		
장애인복지시설	소 계				
사회복지시설	소 계				
노인복지시설	소 계				
아동복지시설	소 계				
종합사회복지관 어린이집	소 계				
기타복지시설	소 계				

나. 자격취득현황

취득일자	자격증 종류	시행기관	비고

【붙임 6】

# 하동군 노인·장애인 종합복지관 수탁신청서

## 증빙서류

- 1. 법인의 유형 및 설립목적 증빙 -----  
○○
- 2. 법인임원현황 증빙 -----  
○○
- 3. 최근 3년간 이사회 개최 현황 -----  
○○
- 4. 법인의 사회복지 공모사업 참여 및 실적 ----- ○○
- 5. 법인의 후원금 모금실적(최근 3년간) ----- ○○
- 6. 관장의 인적사항 ----- ○○

---

- 7. 관장의 자격증 취득현황 -----  
○○
- 8. 사업계획의 전문성 및 타당성 ----- ○
- 9. 최근 3년간 수탁중인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 ----- ○○
- 10. 최근 법인 재무제표 ----- ○○
- 11. 목적사업용 기본재산 ----- ○○
- 12. 수익용 기본재산 ----- ○○
- 13. 부채현황 ----- ○○
- 14. 법인의 예산규모 ----- ○○
- 15. 법인대상 회계감사 운영실태 ----- ○○
- 16. 법인 주된 사무소 현황 ----- ○○
- 17. 법인 직원 현황 ----- ○○

법인 대표자 사용 인감계



인 감

위 인감은 본 법인이 하동군 노인·장애인 종합복지관 수탁운영을 위한 신청서 제출 시 부터 계약 체결 시까지 하동군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에 사용하겠으며, 위 인감사용으로 인 한 법률상 모든 책임은 본 사업 신청자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 첨부자료 : 법인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

2018년    월    일

법 인 명 :  
 소 재 지 :  
 대 표 자 :                    (인)

하동군수 귀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하동군(주민복지실)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시고, 모든 내용을 이해하신 후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I.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귀하께서 제공한 모든 정보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하며, 아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 ①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수집·이용 목적

가. 수집항목

- 개인의 성명, 주소,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

나. 수집 및 이용 목적

- 하동군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수탁신청자의 관련자에 대한 결격사유 조회

##### ②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 ③ 동의거부 권리

- 귀하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 하동군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을 위한 수탁자 선정 업무추진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함

동의안함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 II.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① 고유식별정보 수집 항목 및 수집·이용 목적

가) 수집항목

- 개인별 주민등록번호

나) 수집 및 이용목적

- 하동군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수탁신청자의 관련자에 대한 결격사유 조회

##### ②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 ③ 동의거부 권리

- 귀하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 하동군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을 위한 수탁자 선정 업무추진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고유식별정보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함

동의안함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Ⅲ.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서

①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항목 및 이용 목적

가) 제공항목

- 성명, 주소,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

나) 이용목적

- 하동군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수탁신청자의 관련자에 대한 결격사유 조회

②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기간

- 제공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③ 동의거부 관리

- 귀하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 하동군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 업무추진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함

동의안함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 동의서 작성대상 : 시설장애정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3서식] <신설 2012.7.27>

### 성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성 명	한글	자국어
		한자	영문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인 경우: 국적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자택:	휴대전화:

본인은 하동군장애인복지관 취업자(취업예정자)로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2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날인)

하동경찰관서장 귀하

#### 유의사항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한글과 자국어·영문의 성명, 국적과 함께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m<sup>2</sup>]

※ 동의서 작성대상 : 시설장예정자

하동군 공고 제2018 - 호

하동군 금고지정 공고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하동군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하동군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금고지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07월 18일

하 동 군 수

- 1. 약정기간 : 2019. 1. 1 ~ 2021. 12. 31(3년간)
- 2. 하동군 금고지정 내용

금고명	금융기관명	취 급 회 계
제1금고	NH농협은행 하동군지부	일반회계
		특별회계
제2금고	경남은행 하동지점	기금

하동군 공고 제 2018-815 호

**하동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하동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년 7 월 24 일

**하 동 군 수**

1. 자치법규명 : 하동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 이유 :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조항을 삭제하여 주민의 편의 증진
3. 주요 내용 : 차량 총중량이 2.5톤 이상인 자동차 삭제(안 제3조)
4. 의견 제출 :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18년 8월 13일까지 하동군(참조 : 환경보호과, 전화880-2568, FAX 880-2569, e-mail  
myday8@korea.kr)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붙임 1. 하동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신구조문대비표, 관련법령 등

하동군 공고 제2018- 호

## 2018년 청년 창업농 활성화 지원사업 대상자 선발 공고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분야 진출을 촉진하고,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 완화 등 농업 인력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2018년 청년 창업농 활성화 지원사업 대상자 선발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2018. 8. 6.(월)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7. 24.

하 동 군 수

1. 사 업 명 : 2018년 청년 창업농 활성화 지원사업
2. 신청기간 : 2018. 7. 24. ~ 2018. 8. 6.
3. 사 업 량 : 20명
4. 사업대상
  - 연령 : 만 18세 이상 ~ 만 39세 이하(1978.1.1. ~ 2000.12.31. 출생자)
  - 영농경력 : 독립경영
    - ※ 독립경영은 신청자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임차 등 포함)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른 농업경영정보(경영주)를 등록한 후,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 인정
  - 병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 ※ 병무청으로부터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자로 결정 통보를 받은 자는 신청 가능
  - 거주지 : 하동군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 ※ 상세기준 하동군 홈페이지 공고고시란 첨부파일 참조
5. 지원내용
  - 청년 창업농 맞춤형 창업 기본·심화교육 실시
  - 창업 지원금 지원 : 1인 15백만원
  - 농어촌진흥기금 우선 지원
6. 접수방법 :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부서에서 신청



## 2018년 청년 창업농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계획

### [행정안전부 공모 선정사업]

#### ◆ 2018년 청년 창업농 활성화 지원사업

-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청년 창업농 20명
- 지원내용
  - 청년 창업농 맞춤형 창업 기본·심화교육 실시
  - 창업 지원금 지원 : 1인 15백만원
  - 농어촌진흥기금 우선 지원
  - 청년 창업농의 애로사항 등 해결을 위한 청년 창업농과의 소통 공간 마련(SNS 활용)
- 사 업 비 : 330,000천원(국 157,500 도 51,750 군 120,750)
- ※ 2018년(1차), 2019년(2차) 2개년도 사업으로 총사업비 약 660,000천원



**하 동 군**  
**[농촌진흥과]**



# 2018년 청년 창업농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계획

## □ 목 적

- 청년 창업농의 맞춤형 강화 교육을 통한 창업 아이템 발굴 및 창업기반 조성
- 청년 창업농에게 단계별 맞춤형 창업교육을 통한 농업 기반형 청년 일자리 창출

## □ 사업내용

### ○ 지원대상

- 연령 : 사업 시행년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 ‘18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 1978. 1. 1 ~ 2000. 12. 31 출생자
- 영농경력 : 독립경영
  - \* 독립경영은 신청자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임차 등 포함)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른 농업경영정보(경영주)를 등록한 후,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 인정
- 병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 \* 병무청으로부터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자로 결정 통보를 받은 자는 신청 가능
- 거주지 : 하동군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 < 사업신청 제외대상 >

1.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 \* 다만,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에서 농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농산물을 판매, 가공하기 위해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는 신청 가능
2.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
3.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과 휴학생
  - \* 단, 사업연도 졸업예정자, 영농활동에 지장이 없는 수준인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주간 과정에 있는 자는 신청 가능
  - \* 야간 과정 및 방송통신대학 등 온라인 강의를 주된 과정인 학교의 재학생과 휴학생은 신청 가능

### ○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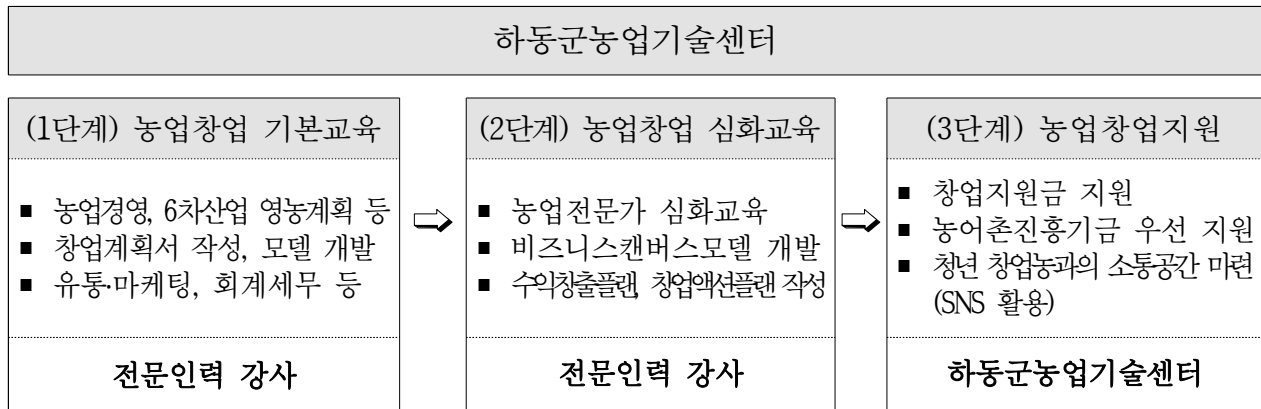
- 청년 창업농 맞춤형 창업 기본·심화교육 실시
- **창업 지원금 지원 : 1인 15백만원**
- 농어촌진흥기금 우선 지원
- 청년 창업농의 애로사항 등 해결을 위한 청년 창업농과의 소통 공간 마련(SNS 활용)

○ 사 업 량 : 20명

○ 사 업 비 : 330,000천원(국 157,500 도 51,750 군 120,750)

### □ 추진체계

○ 추진 절차



○ 추진 일정

#### 【1단계 : 창업기본교육】

- 사업기간 : 2018. 8월
- 사업예산 : 1,500만원(1명당 750천원)
- 교육시간 : 5회 32시간
- 교육내용 : 창업을 위한 기본교육 실시
  - 유통·마케팅, 홍보, 영농계획 수립, 정보 획득, 6차산업, 사업기반 조성, 경영관리·회계·세무·기초 법률, 고객 이해, 경영리더십 등

#### 【2단계 : 창업심화교육】

- 사업기간 : 2018. 9월
- 사업예산 : 1,500만원(1명당 750천원)
- 교육시간 : 5회 36시간

- 교육생 선발 : 1단계 농업창업 기본교육 수료자 중 선발
- 교육내용
  - 창업을 위한 기본 정보 습득, 우수사례 분석, 수익창출플랜 · 창업액션플랜 작성 등
  - 현장실습 및 현장탐방 : 강소농, 6차산업 우수 영농법인 등

**【3단계 : 창업 지원 및 청년 창업농과의 소통공간 마련】**

- 지원대상 : 2단계 농업창업 심화교육 수료생 중 심사 후 선정
- 선정방법 : 1~2단계 교육참여도, 농업 창업계획서 등을 종합평가
- 지원내용
  - 창업 지원금 지원 : 1인 15백만원
  - 농어촌진흥기금 우선 지원
  - 청년 창업농의 애로사항 등 해결을 위한 청년 창업농과의 소통 공간 마련(SNS 활용)

**※ 창업 지원금 사용용도**

- 경종농업 분야(수도작, 원예(채소, 화훼 등), 과수, 특작, 복합영농 등)의 영농시설 설치(구입) 및 개보수
  - 농기계 구입비, 하우스 설치, 과원 조성, 버섯재배사 · 저장시설 · 관수시설 설치, 농식품 가공시설 설치 및 가공기계 구입(사업대상자가 직접 생산한 농식품의 보관, 가공 · 제조에 필요한 경우에 한함), 기타 농업기반시설의 설치
- 축산분야(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기타 축산 등)의 시설 설치(구입) 및 개보수
  - 축사 신축 및 시설개선, 축산기반시설 설치
- 생산 · 가공 · 체험 등 농가 경영환경 개선

**□ 행정사항**

- 사업 신청서 접수 및 대상자 확정 : 2018. 8. 10.한
- 창업기본교육 실시 : 2018. 8월
- 창업심화교육 실시 : 2018. 9월
- 창업지원금 지원 : 2018. 10월

[평가표]

**청년 창업농 활성화 지원 사업 대상자 평가표**

□ 신청인 : 읍·면, 성명 :

구분	평가항목	평가 및 배점기준	점수
계 [100점]			
서류평가 [20점]	○사업신청서(영농계획서) 적절성 및 정확성 [20점]	○ 매우우수 [20점]      ○우수 [15점] ○ 보통 [10점]          ○미흡 [5점]	
영농경력 [30점]	○ 독립경영[30점]	○1년 미만 [30점] ○1년 이상 ~ 2년 미만 [20점] ○2년 이상 ~ 3년 미만 [10점] ○3년 이상 ~            [5점]	
영농규모 [5점]	○보유 및 임대농지, 농업시설물 현황 (농지원부 및 농업경영체 등록상의 현황) [5점]	○농지 1.0ha이상, 시설하우스 0.3ha이상, 대가축 5두이상[5점] ○농지 0.5이상1.0ha미만, 시설하우스 0.2ha이상0.3ha미만, 대가축 3두이상[4점] ○농지 0.3이상0.5ha미만, 시설하우스 0.1ha이상0.2ha미만, 대가축 2두이상[3점] ○농지 0.3ha미만, 시설하우스 0.1ha미만, 대가축 1두이상[1점]	
영농교육 이수시간 [5점]	○귀농교육 이수시간[5점] (졸업증명서, 수료증 첨부시 반영)	○농업계 학교(대학원 포함) 졸업한 경우 [5점] ○100시간 또는 3주이상 [5점] ○71~99시간 [4점]      ○51~70시간 [3점] ○21~50시간 [2점]      ○20시간 이하 [1점]	
영농정착 여부 [40점]	○사업 완료 후 영농 의욕 여부 [15점]	○우수 [15점] ○보통 [10점] ○미흡 [5점]	
	○영농 지속가능성 [25점]	○우수 [25점] ○보통 [15점] ○미흡 [5점]	

청년 창업농 활성화 지원 사업 신청서

신 청 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input type="checkbox"/> 여 <input type="checkbox"/> 부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이메일			휴대폰번호		
	주소					
	경영주 등록일	년	월	일	영농교육실적	시간
	병역	<input type="checkbox"/> 병역필 <input type="checkbox"/> 미필 <input type="checkbox"/> 면제 <input type="checkbox"/>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대상 확정자)				
	협업경영	<input type="checkbox"/> 부부 공동경영 ( <input type="checkbox"/> 여, <input type="checkbox"/> 부) <input type="checkbox"/> 법인 공동창업 ( <input type="checkbox"/> 여, <input type="checkbox"/> 부)				
	영농기반 마련	<input type="checkbox"/> 부모의 기반이 있지만 이와는 별도의 기반 마련 <input type="checkbox"/> 부모의 기반 증여·상속 ( <input type="checkbox"/> 전체, <input type="checkbox"/> 일부) <input type="checkbox"/> 부모의 기반이 없어서 새롭게 기반 마련				
	현재 경영규모	<input type="checkbox"/> 논    m <sup>2</sup> , <input type="checkbox"/> 밭    m <sup>2</sup> , <input type="checkbox"/> 과수원    m <sup>2</sup> , <input type="checkbox"/> 기타(            )				
	목표하는 영농 유형	식량작물, 채소(시설, 노지), 과수, 화훼, 특용작물, 축산, 복합(축산, 경종) 중 선택하여 기재				
기타 특이사항	청년농업인 지원 방안, 농업 발전 방안, 사업관련 의견 등 기재					

상기와 같이 청년 창업농 활성화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하동군수 귀하

- ※ 첨부서류 : 1. 영농(창농) 계획서  
 2. 병역관련 증명서(병적증명서, 복무확인서, 산업기능요원 편입 확인서 등)  
 3. 농업경영체 등록부  
 4.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주소이력 기재)  
 5. 건강보험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6. 농업계 학교(대학원 포함) 졸업한 경우 졸업증명서, 그 외 최근 3년 영농교육 이수증 사본  
 7.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8. 그 외에 자격조건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해당 란에 기입할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 첨부 가능

**영농(창농) 계획서**

**<영농 동기>**

영농 동기, 목표의식, 지역 공동체와 함께 성장하기 위한 활동 및 계획 등을 자유롭게 작성

**<현재 상황>**

- 기술습득 및 경영능력 제고를 위한 활동, 영농기반 마련을 위한 활동 등 현재의 상황에 대하여 기술
- 영농기반, 농산물 생산량, 판매처, 현재 매출 등 수지현황과 기술습득 및 경영능력 제고를 위한 활동 등 현재의 상황에 대하여 기술

**<경영계획>**

연차별(5개년 계획)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자금 조달계획, 생산기술, 영농기반 구축 방안, 경영 다각화 방향, 생산기술·경영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이수 목표, 판로 및 마케팅 전략 등 영농 창업 및 성장 목표를 자유롭게 기술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목적】**

- 하동군은 청년 창업농 활성화 지원 사업 대상자 모집 및 선발·관리를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청년 창업농 활성화 지원 사업 신청서(사업 대상자 모집 및 선발, 관리 등 활용)

**【개인정보 수집 항목】**

- 하동군은 청년 창업농 활성화 지원 사업 대상자 모집 및 선발·관리를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수집항목 :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보유기간】**

-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청년 창업농 활성화 지원 사업 종료와 동시에 지체 없이 파기하고,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권리】**

하동군은 청년 창업농 활성화 지원 사업 대상자 모집 및 선발·관리를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청년 창업농 활성화 지원 사업 대상으로 선발되는 것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해당란에 √표시)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18년 월 일

성명 : (서명)

**II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청년 창업농 활성화 지원 사업 신청서가 제출될 경우 관련 서류를 하동군농업기술센터 및 위탁교육업체에 정보를 제공합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하동군농업기술센터, 위탁교육업체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청년 창업농 활성화 지원 사업 대상자 모집 및 선발, 관리 등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사업 종료시까지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청년 창업농 활성화 지원 사업 대상으로 선발되는 것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홈페이지 게시)에 동의하십니까?(해당란에 √표시)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18년 월 일

성명 : (서명)

하동군 공고 제 2018 - 827 호

# 서당지구 지적재조사사업 변경 실시계획 공람공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변경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7조 제4항 및 제7항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7일

## 하 동 군 수

- 1. 사 업 명 : 하동군 적량면 서당지구 지적재조사사업
- 2. 사업위치 : 하동군 적량면 우계리 610번지 일원
- 3. 공고기간 : 2018. 7. 27. ~ 2018. 8. 27.(32일간)
- 4. 사업시행자 : 하동군수
- 5. 사업기간 : 2017. 1. ~ 2018. 12.
- 6. 관계서류 및 열람장소

가. 관계서류 : 2017년 지적재조사사업 서당지구 실시계획 변경

나. 열람장소 : 하동군청 민원과

### 7. 의견 제출방법

본 공람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방문, 팩스, 우편 등으로 하동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 민원과(☎055-880-20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방 문 : 하동군청 민원과

나. 전 화 : 055-880-2084

다. 팩 스 : 055-880-2078

라. 우 편 :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하동군 공고 제2018 - 832호

## 하동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하동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7일

###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 제안 이유

-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용자한도액을 확대운영하여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중소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성 본 조례와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조례

- 제16조제2항(용자한도액)
  - 한도액을 “5억원”에서 “7억원”으로 확대

□ 시행규칙

- 제10조제2항(용자금의 업체당 용자한도액)
  - 용자금의 업체당 용자한도액 중 [별표]의 일반운전자금, 시설현대화자금 확대

자금용도별·업체규모별 용자한도액 확대(안)

[단위 : 백만원]

업체구분별 용도별	상시종업원수 5인미만 또는 자본금 1억원미만	상시종업원수 5인이상 또는 자본금 1억원이상	상시종업원수 10인이상 또는 자본금 2억원이상	상시종업원수20인이상 또는 자본금 3억원이상
일반운전자금	50(100)	100(200)	200(300)	300(500)
기술개발자금	50	100	200	300
시설현대화자금	100(100)	200(300)	300(500)	500(700)

※( )개정 후 금액

4. 의견 제출

- 이 자치 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18년 8월 16일까지 하동군(참조 : 미래전략과, 전화 880-2203, FAX 880-2869, jbson@korea.kr)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붙임 : 1. 하동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하동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부.

**【별지】**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견	비고

하동군 조례 제 호

# 하동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하동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하동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5억원”을 “7억원”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	---	---	---	---

하동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6조(융자금액 및 조건) ① (생략)

② 융자금의 업체당 융자한도액은 5억원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③ (생략)

하동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6조(융자금액 및 조건) ① (현행과 같음)

② ----- 7억  
원-----.

③ (현행과 같음)

하동군 규칙 제 호

하동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

## 부개정규칙안

하동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자금용도별·업체규모별 용자한도액(제10조제2항 관련)

[단위 : 백만원]

업체구분별 용도별	상시종업원수 5인미만 또는 자본금 1억원미만	상시종업원수 5인이상 또는 자본금 1억원이상	상시종업원수 10인이상 또는 자본금 2억원이상	상시종업원수20인이상 또는 자본금 3억원이상
일반운전자금	<u>100</u>	<u>200</u>	<u>300</u>	<u>500</u>
기술개발자금	50	100	200	300
시설현대화자금	100	<u>300</u>	<u>500</u>	<u>700</u>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별표]		

자금용도별·업체규모별 융자한도액(제10조제2항  
관련)

[단위 : 백만원]

업체구분별 용도별	상시종업원수 5인미만 또는 자본금 1억원미만	상시종업원수 5인이상 또는 자본금 1억원이상	상시종업원수 10인이상 또는 자본금 2억원이상	상시종업원수 20인이상 또는 자본금 3억원이상
	일반운전 자금	50	100	200
기술개발 자금	50	100	200	300
시설현대화 자금	100	200	300	500

자금용도별·업체규모별 융자한도액(제10조제2항  
관련)

[단위 : 백만원]

업체구분별 용도별	상시종업원수 5인미만 또는 자본금 1억원미만	상시종업원수 5인이상 또는 자본금 1억원이상	상시종업원수 10인이상 또는 자본금 2억원이상	상시종업원수 20인이상 또는 자본금 3억원이상
	일반운전 자금	<u>100</u>	<u>200</u>	<u>300</u>
기술개발 자금	50	100	200	300
시설현대화 자금	100	<u>300</u>	<u>500</u>	<u>700</u>



하동군 조례 제 호

하동군 군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하동군 군세 징수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징수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하동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징수 사무 등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군세의 수납) 영 제29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하의 소액 지방세”란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가산금을 제외한다)이 50만원 이하인 군세를 말한다.

제4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제5조(전문매각기관 선정공고) ①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 중에서 법 제71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매각기관(이하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 기관을 모집·선정하여 군 공보 및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공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 동안 법제71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품등(이하 “예술품 등”이라 한다)을 경매를 통하여 매각한 횟수가 연평균 10회 이상일 것
2.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한 매각이 가능할 것

②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하는 사업자는 공고된 접수기한까지 ‘예

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신청서'와 '매각대행 업무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1항 각호의 요건과 기타 매각의 전문성과 매각업무 수행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7일간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요구 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한다.

④ 군수는 서류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하거나, 사업장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사업자는 선정결과 공고일부터 2년간 예술품등의 매각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6조(전문매각기관 심사절차 및 심사방법) ① 군수는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기관을 심사할 때에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심사하는 1차 서류심사와 1차 심사를 통과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전문매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전문성 및 매각업무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2차 심사로 구분하여 심사한다.

② 1차 심사는 업무소관 부서장이 제5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검증하여 충족하는 사업자를 선정한다.

③ 2차 심사는 1차 심사를 통과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위원회에서 경매실적, 시설, 자본금 규모 등을 반영하여 매각의 전문성(50%), 매각업무 수행능력(50%)을 평가하여 복수의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한다.

④ 전문매각기관 선정 사업자 수는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

제7조(위원회 구성 및 회의) ① 군수는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선정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7명으로 구성하며,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과장급 공무원 6명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전문매각기관 선정이 필요한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전문매각기관 선정 평가점수 고득점 순으로 결정하되, 전문매각기관 선정 사업자 수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결정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제8조(전문매각기관 감정평가) 전문매각기관은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재산과 관련된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감정인 또는 감정평가법인에 평가를 의뢰하여 그 가액을 참고할 수 있다.

제9조(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해제요청) ① 전문매각기관이 매각 의뢰 받은 예술품등을 3회 이상 경매를 실시하였으나 매각이 되지 않은 경우 또는 1년이 경과하여도 매각이 되지 않은 재산에 대하여 군수에게 매각 대행 의뢰를 해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제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10조(매각재산의 인도) ① 군수 또는 전문매각기관이 보관중인 재산은 매수인이 대금(수수료 등 포함)을 납부한 때에 이를 매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매수인에게 예술품등을 인도할 때에는 매수인으로부터 인수증 등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매각결정 통지서」에 인수사실을 기입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함으로써 인수증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전문매각기관이 매수인에게 예술품등을 인도한 때에는 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매각재산의 소유권 이전 시기는 매수인이 전문매각기관에 매수대금을 납부한 때로 한다.

제11조(매각대금의 수령) ① 군수는 매각대금이 결정되거나, 매각대행이 취소된 경우 전문매각기관으로부터 매각수수료 등의 명세와 증빙을 받아 수수료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금을 수령한 경우 매각대금에서 전문매각기관에 지급해야 할 매각수수료 등을 차감한 금액을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계좌로 수령하여야 한다.

제12조(매각대금 등의 배분) ① 군수는 제12조에 따라 수령한 매각대금 등을 배분할 금전으로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97조 부터 제103조 규정에 의하여 배분금액 및 배분순위 등을 확정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고 납세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가 없는 경우 배분계산서에 따라 배분하고 즉시 체납액에 충당하여야 한다.

제13조(매각대행수수료 등의 청구) ① 전문매각기관은 군수로부터 매각대행의뢰를 받은 재산의 매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52조의3에 의한 수수료를 군수에게 청구할 수 있다.

- 1. 전문매각기관이 압류재산을 매각한 경우
  - 2.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행 의뢰를 받은 후에 납세자 또는 제3자가 체납액을 납부하여 매각대행이 취소된 경우
  - 3.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행 의뢰를 받은 후에 군수의 직권 또는 전문매각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매각대행 의뢰가 해제된 경우
  - 4.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아 압류재산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우
- ②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금을 매수자로부터 직접 수령하는 경우에는 확인된 수수료 등을 차감하고 군수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전문매각기관 선정 취소) ① 군수는 선정된 전문매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매각기관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 1. 부도, 파산, 휴·폐업 등으로 전문매각기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전문매각기관 선정 당시의 시설, 자본금 등이 변동되어 전문매각기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체납, 「조세범처벌법」 위반, 중대한 범죄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②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취소는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 선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군 공보 및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5조(전문매각기관 협의사항) ① 전문매각기관은 예술품등 매각 대행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군수와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 1. 매각추산가액에 비하여 체납처분비의 과도한 지출이 예상되는 경우
  - 2. 예술품 등의 매각실익이 없는 경우
  - 3. 기타 매각대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전문매각기관이 제1항의 협의를 요청한 때에는 군수는 20일 이내에 협의하여야 한다.
- ③ 군수는 제2항에 의한 협의결과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매각대행 의뢰를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전문매각기관, 납세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비밀유지등)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행 과정에서 직무상 납세자의 과

세정보를 알게 된 사람은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배상책임)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행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 규칙 제 호

하동군 군세 징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하동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하동군 군세 징수조례」”를 “「하동군 군세 징수 조례」”로 한다.

제3조 중 “「하동군 군세 징수조례」”를 “「하동군 군세 징수 조례」”로 한다.

제4조 전단 중 “군수”를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한다.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신청서) 조례 제5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신청서’의 서식은 별지 제11호서식으로 한다.

제20조(전문매각기관 선정 평가표) 조례 제7조제4항의 전문매각기관 선정 평가는 별지 제12호서식으로 한다.

제21조(압류재산의 인수·인계서) 영 제74조의2제5항 및 제6항의 인계·인수서는 별지 제13호서식으로 한다.

제22조(매각재산의 인수증) 조례 제10조제2항의 인수증은 별지 제14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11호 서식]

###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	------

(1)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2) 신청 자격

가. 공고일이 속하는 직전 2년 동안 「지방세징수법」 제71조의2 제1항에 따른 예술품 등을 경매를 통하여 매각한 횟수가 연평균 10회 이상일 것	연평균 회
나.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을 이용한 매각이 가능 여부	

#### 제출서류

1. 신청자격 입증서류
2. 매각대행 이행계획서(인적·물적 전문성과 매각업무 수행능력)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74조의2제1항 제1호 및 「하동군 군세 징수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되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하동군수      귀하

■ [별지 제12호 서식]

### 전문매각기관 선정 평가표

사업자명	
------	--

구분	평가지표	평가배점					평점
		매우 탁월	탁월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전문성 (50)	<b>1. 인적 전문성</b> - 감정평가인, 현장경매 전문가 보유 현황 등	25~21	20~16	15~11	10~6	5~0	
	<b>2. 물적 전문성</b> - 작품 전시장, 보관장소, 경매장 등 구비 여부 및 규모	25~21	20~16	15~11	10~6	5~0	
매각업무수행능력 (50)	<b>3. 경매 횟수 등 실적</b> - 현장경매, 온라인 경매 구분 - 국가기관(또는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 등 포함)으로부터 위탁받아 매각대행한 횟수	25~21	20~16	15~11	10~6	5~0	
	<b>4. 기타 수행능력</b> - 자본금 등 규모 - 1회 경매가능 규모 등	25~21	20~16	15~11	10~6	5~0	
<b>합 계</b>							

심사위원 :

(서명 또는 인)



■ [별지 제13호서식]

###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압류재산의 인계(인수)서

아래 압류재산의 매각대행과 관련하여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74조의2제5항(제6항)에 따라 압류재산을 인계(인수)합니다.

체납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압류재산의 표시					
압류일		년	월	일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					
세목	과세연도	납부기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계	지방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합계					

끝.

하 동 군 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 [별지 제14호 서식]

### 매각재산의 인수증

(1) 매수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2) 매도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3) 매각재산 :

---

(4) 대금 납부일 :

---

「하동군 군세 징수 조례」 제11조에 의거 위 매각재산을 정히 인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매수인

(서명 또는 인)

하동군수      귀하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동군 군세 징수조례」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군세의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하동군 군세 징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비치) 군수는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처리·저장하고 지방세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작성·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신 설>

제1조(목적) ----- 「하동군 군세 징수 조례」-----  
-----.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  
-----  
----- 「하동군 군세 징수 조례」-----  
-----  
-----.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비치)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  
-----.

제19조(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신청서) 조례 제5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신청서’의 서식은 별지 제11호서식으로 한다.

<신 설>

제20조(전문매각기관 선정 평가표)  
조례 제7조제4항의 전문매각기관  
선정 평가는 별지 제12호서식으로  
한다.

<신 설>

제21조(압류재산의 인수·인계서)  
영 제74조의2제5항 및 제6항의 인  
계·인수서는 별지 제13호서식으  
로 한다.

<신 설>

제22조(매각재산의 인수증) 조례 제  
10조제2항의 인수증은 별지 제14  
호서식으로 한다.

하동군 공고 제2018 - 834호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정 공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따라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제출된 지번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조정 공고합니다.

- 1. 가 격 기 준 일 : 2018. 1. 1.
- 2. 정정지가 결정·공시일 : 2018. 7. 31.
- 3. 정정지가 결정·공시 필지수 : 9필지

(단위 : 원/㎡)

연번	토 지 소 재 지	지 목	당초결정지가	정정지가	비 고
1	화개면 삼신리 170-3	전	35,800	<b>33,800</b>	
2	악양면 정동리 68	임	4,470	<b>4,330</b>	
3	악양면 정동리 68-4	대	40,100	<b>38,800</b>	
4	악양면 정동리 68-5	창	40,100	<b>27,000</b>	
5	금성면 고포리 437-65	답	33,000	<b>28,700</b>	
6	진교면 관곡리 608-4	답	12,700	<b>10,500</b>	
7	진교면 관곡리 608-5	답	12,700	<b>10,500</b>	
8	진교면 고이리 1001	답	15,900	<b>14,900</b>	
9	옥중면 회신리 산7	임	397	<b>413</b>	

4. 행정사항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사항

하동군 홈페이지에서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사항은 민원과 부동산평가담당부서(☎055-880-21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년 7 월 31 일

하 동 군 수